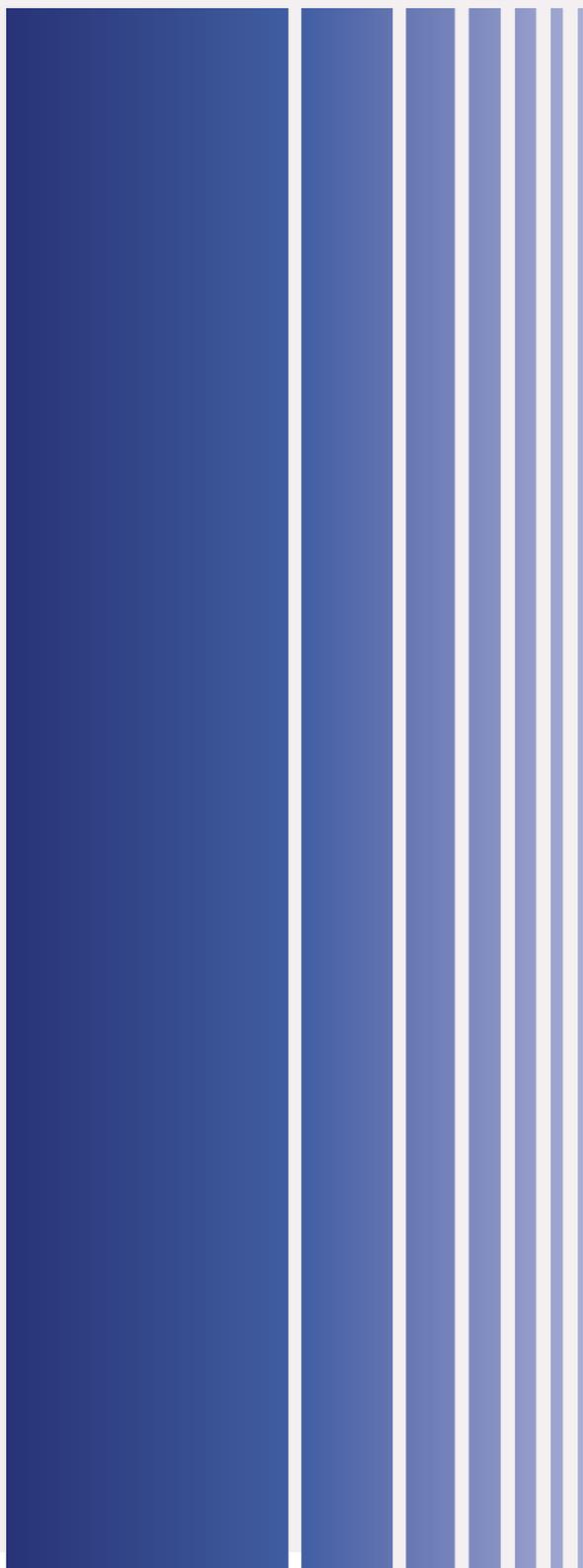


금융경제총서
2004.9 제9호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박 석 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박 석 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서 문

우리 금융경제연구원의 아홉 번째 『금융경제총서』로서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를 발간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해 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구성하는 두개의 중요한 축은 ‘사회주의 소유제’와 ‘계획적 경제운영’ 방식이다. 이는 경제내 모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공유로 하고 있으며 생산, 분배, 소비, 축적 등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당국의 세밀한 계획과 통제에 의해 진행되는 체제이다.

북한경제의 성쇠과정을 돌이켜 보면 1960년대까지 나름대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생산력 발전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1980년대 말까지 성장세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권의 붕괴 영향으로 북한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한 이후 줄곧 쇠퇴의 길을 걸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불어닥친 경제난은 북한경제 전반에 지대한 충격을 주었다. 실물경제 면에서는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어려워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고 식량난 등으로 인해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어 주민들이 암시장을 통해 상당부분의 생활용품을 자력으로 조달해야 했다. 또한 재정금융 면에서는 국가재정의 감소로 인해 공장, 기업소에 대한 자금지원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사경제 활동이 확산되면서 은행예금 기피, 현금 및 외화 선호 성향 등이 대두되어 전통적인 통화금융체제도 거의 마비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총체적인 분화현상은 북한의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의 균열을 초래하였다. 즉, 기업과 주민 등 경제주체에 대한 중앙당국의 지도와 통제 능력이 약화되면서 북한은 더 이상 짜임새 있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계획경제체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은 그동안 ‘고장난 계획경제체제’를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버리고 새로운 경제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2002.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를 통해 ‘고장난 계획경제체제’를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견지해 온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7.1조치를 계기로 북한이 새로운 경제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사실상 화석화되어 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북한에서조차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그 모습이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이유는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낳는 母胎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전통적 경제구조에 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의 해체과정과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향후 전개 방향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북한경제의 이해와 남북경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관련 연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동북아경제팀 박석삼 차장의 귀중한 노력의 결실이다. 연구자는 원내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이내황 당시 부원장(현 경기본부 기획조사실장), 오정근 통화연구팀장, 전승철 국제경제팀장, 임철재 과장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과 원고초고에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최재현 대전충남본부장과 오순상 전문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동북아경제팀의 안예홍 팀장과 동료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9월

금융경제연구원장 함 정 호

차 례

I. 머리말	1
II.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축	3
1. 사회주의 소유제의 구축	3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구축	5
III. 북한경제의 구조	11
1. '노동' 중심의 재생산체계	11
2. 생산·분배·소비·축적체계	16
3. 경제부문간 균형발전 개념	47
4. 가격관리체계	66
5. 재정체계	74
6. 금융체계	80
IV.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해체	97
1.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내재적 모순	97
2.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해체 과정	111
V.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모색	129
1. '7.1조치'의 성격	129
2. 경제운영방식의 변화	133

VI. 향후 과제	157
1. 북한의 경제개혁 확대	158
2. 남북경협 확대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166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북한의 ‘노동’ 개념 구분	14
〈표 2〉 ‘부문사이 연계균형표’의 구조.....	26
〈표 3〉 노동부류 구분	34
〈표 4〉 북한의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방식	41
〈표 5〉 분배형태의 성격 비교	42
〈표 6〉 북한의 경제부문간 균형발전 개념	65
〈표 7〉 북한의 가격종류와 구성요소	71
〈표 8〉 북한 가격제정기관의 기능	72
〈표 9〉 북한의 재정수입·지출항목 구성	77
〈표10〉 인민경제비 구성 내역	78
〈표11〉 북한의 재정지출 추이	79
〈표12〉 북한의 국정가격 조정 내역	134
〈표13〉 ‘7.1조치’ 이후의 품목별 상대가격 변화.....	140
〈표14〉 최근 북한의 재정 수입 및 지출 내역	156

그림 차례

〈그림1〉 북한의 노동중심 재생산체계.....	16
〈그림2〉 국정가격과 시장균형가격의 차이	107
〈그림3〉 북한의 전통적 현금유통 경로.....	127

I. 머리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경제난과 함께 각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계획경제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1999년 이후 북한경제는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03년 경제성장률이 1.8%에 머무는 등 경제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생산력 발전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지만 1980년대말까지 북한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이로 인해 소련 등 우방국들로부터 중요 원자재의 도입이 중단되면서 전통적 방식으로 계획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경제의 실패는 1995년부터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생산부문(기업)에서는 국가예산의 대폭 감소→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에 대한 국가자금 지원규모 축소→공장가동률 저하→인민경제계획 목표 달성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계획경제의 작동이 마비되었고, 소비부문(가계)에서는 국가배급체계 붕괴→가계의 식량 및 생활용품 자력조달 필요성 대두→가계의 ‘농민시장’ 의존 증대→사경제 부문 확산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경제체제가 기형화되었다.

북한은 그간의 ‘계획경제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2002.7월 시장 경제 요소를 수용하는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단행하였다. 소비재 및 생산재 가격, 집세, 서비스 요금, 공공요금 등 모든 국정가격과 근로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공장·기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많이 분배하는 새로운 성과급제도(‘번 수입’)에 따른 분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7.1조치’는 그 파격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2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전통적 경제구조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의 해체과정과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향후 전개 방향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축

북한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해 왔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소유제와 계획경제체제의 구축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주의 소유제의 구축

북한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특징은 생산수단(기계, 설비, 원자재,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고 사적소유(=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자연부존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 중요 공장 및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은 국가만 소유할 수 있고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및 기업소 등은 사회·협동단체¹⁾도 소유할 수 있으나 개인은 이러한 것들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생산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에 대해서는 사적소유를 인정한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주의 소유제는 1950년대말에 완성되었다.

북한은 해방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사회주의 소유제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58~59년까지 농업, 공업, 상업 등 전 산업부문에 걸쳐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완결함으로써 사회주의 소유제를 확립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1946.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농민들에게는 농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 때만 해도 북한은 개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1954년부터 개인 농가의 ‘농업협동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시작하여

1) 대표적인 사회단체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며 대표적인 협동단체는 협동농장 등이다.

4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1958년까지 북한지역의 모든 농가를 ‘협동조합’에 편입시키게 된다. 이후 1962년 모든 농업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개편하고 당초 개인에게 분배했던 농지를 협동농장(단체) 소유로 이관함으로써 농업부문에서 사회주의 소유제가 구축되었다.

상공업부문에서의 사회주의 소유제 구축 경위를 보면 1946.8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공장·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로 당시 전체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국유화되고 나머지 10% 정도의 공장·기업소, 상가가 개인소유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잔존하던 개인상공업 부문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여 1958.8월까지 모든 개인 소유의 공장, 기업소, 상가가 완전히 국유화됨으로써 상공업 부문에서도 사회주의 소유제가 확립되었다. 상공업부문에서는 개인소유의 산업시설에 대해 단체소유조차 인정하지 않고 모두 국유화하였다는 점에서 농업부문에서 개인소유의 농지를 단체(협동농장) 소유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북한은 1950년대말에 사회주의 소유제를 완비하게 된다.²⁾

2) 소유형태별 생산액 구성(%)

구 분		연 도					
		1946	1949	1953	1956	1957	1958
국민소득	국·공유	14.8	44.5	45.6	85.8	93.5	99.9
	개인소유	85.2	55.5	54.4	14.2	6.5	0.1
공 업	국·공유	72.4	90.7	96.1	98.0	98.7	99.9
	개인소유	27.6	9.3	3.9	2.0	1.3	0.1
농 업	국·공유	0.0	3.2	8.0	73.9	88.2	100.0
	개인소유	100.0	96.8	92.0	26.1	11.8	0.0
상 업	국·공유	3.5	56.5	67.5	87.3	87.9	99.9
	개인소유	96.5	43.5	32.5	12.7	12.1	0.1

자료 : 「조선중앙년감」(1959), p.323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구축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토대 위에서 계획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계획경제체제이다. 계획경제체제는 전 산업부문, 공장 및 기업소, 각 지역의 경제활동을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놓은 상태에서 경제 전반의 생산, 교환, 소비, 축적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행위를 계획당국의 의도대로 진행시키는 경제운영체계이다.

가. 공업 및 농업관리체제의 수립

북한은 해방 직후 소련 군정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하였으나 전후 복구사업에 치중했던 1950년대까지만 해도 계획경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와 방법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으로 공업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 농업부문에서는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지도체계를 마련하면서부터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1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대안(大安)에 있는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한 것을 계기로 채택된 공업부문의 경제관리 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각 공장의 경영과 관련된 책임을 ‘공장당위원회’에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과업수행 과정을 통제하는 체계이다. 공장당위원회는 공장의 최고 경영자인 지배인을 비롯하여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생산핵심당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를 담당하는 당 및 행정간부까지 참여하는 공장의 최고 지도기구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경영이 지배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대체하여 공장당위원회를 통해 집체적 지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지배인의 역할은 자

재공급 및 후방공급사업 등 행정 및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정도로 축소되고 대신 기사장으로 하여금 계획경제의 핵심인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제하고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축을 통해 계획경제 운영의 필수조건인 국가의 말단 생산단위의 경영활동에 대한 세밀한 지도통제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농업부문에서도 1962년부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도입되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경영에 대한 지도기능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으로 종전에는 군인민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이를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시켜 협동농장에 대한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중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상부기관으로 ‘도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이의 상부기관으로 ‘농업성’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농업지도를 담당하는 기구의 창설을 통해 중앙당국이 말단 협동농장의 경영활동에 개입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 1962년에 이러한 공업 및 농업부문의 경제관리체계를 구축한 배경에는 제1차 7개년계획(1961~70)³⁾에 착수하면서 계획경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은 계획적 경제관리방식에 관한 확고한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 확립

북한이 계획적 경제관리방식의 체계와 방법에 관한 논리적 체계를 갖

3) 제1차 7개년계획은 당초 1967년까지로 되어있었으나 나중에 3년 더 연장하였다.

추어 경제운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을 채택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65.9월 국가계획위원회 당총회에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채택하였다. 당시 북한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일원화’는 ‘인민경제계획을 경제의 각 부문과 단위들이 자의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국가의 의도와 요구대로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국가계획위원회’에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 등의 전권을 부여하고 성, 중앙기관, 지방 행정·경제기관, 공장·기업소 등 모든 단위에 ‘계획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들 계획부서를 통해 각 생산단위에 자신의 의도와 요구를 전달하고 과업수행 과정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계획경제 내에서 지방분위주의, 기관분위주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제거할 수 있게 되고 인민경제계획을 국가의 의도와 요구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국가계획위원회 및 각 단위의 계획부서)이 전반적 경제발전의 의도에 맞게 각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서로 밀접히 연계시켜 계획지표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획당국이 직접 말단 공장, 기업소를 포함한 모든 생산단위들이 수행해야 할 계획지표를 세밀하게 수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철저히 실현시킨다는 원칙이다. 북한은 계획의 세부화를 통해 모든 단위들에서 노동력, 설비, 자재, 자금의 낭비와 사장을 없애고 내부예비(재고)를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은 북한이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논리적 토대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 경제정책의 기초 확립: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및 중공업우선정책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6년부터 경제정책의 목표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두고 있었다. 이는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만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다⁴⁾는 막연한 당위론적 인식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전후복구 사업인 3개년계획(1954~56)이 진행되던 기간에 당시 북한의 내각수상이었던 김일성의 주장에 따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공업우선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중공업우선정책이란 ‘소비재’보다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그리고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보다 ‘생산수단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더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옷(소비재)보다 옷을 생산하는 기계(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를 더 많이 생산하고, 옷을 생산하는 기계(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보다 전력, 석탄, 금속, 기계, 화학제품(생산수단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중공업우선정책을 채택한 것은 생산수단의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면 경제 전반의 기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자립적 민족경제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주장한 ‘중공업우선정책’이 북한사회에서 처음부터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전후 복구사업인 3개년계획(1954~56)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기초의 선택 문제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4) 김일성 저작집 36권, p.247.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내각 수상이었던 김일성은 ‘중공업우선정책’을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반면 최창익, 박창옥 등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통해서만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김일성의 정책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1957.9.19일 제2기 대의원 대회에서 내각수상으로 재선되고 그 이듬해부터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 (1598.12~1959년말)을 실시하여 그간의 반대세력들을 ‘반혁명 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한 후 ‘중공업우선정책’을 공식적인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경제정책의 목표로 채택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상위의 개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중공업우선정책’이라는 하위의 개념이 사실상 대등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 ‘중공업우선정책’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명제로 규격화, 고착화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동조화 현상은 북한이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내용에 그 대로 드러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경제구조를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으로 확립한다. 이는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 가공에 이르는 생산순환이 자기나라의 범위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수요를 자체적으로 생산보장할 수 있는 생산부문들이 모두 갖추어진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나가면서 경공업과 농업도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의 모든 부문의 기술을 현대화한다.

5) 국립출판사(1958), 「우리나라 인민경제 발전:1945~1958」, p.54 참조

6) 유수복 편집(1996), pp.25~54 참조

셋째,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와 동력기지를 튼튼히 마련하여 연료, 연료에 대한 수요의 60~70%를 자체 생산으로 보장한다.

넷째, 자체의 민족기술 간부에 의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은 1977년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⁷⁾이라는 구호로 변형되는 과정을 거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 나라의 자원과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이용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새로운 도약을 일으킨다는 것을 뜻한다.⁸⁾

북한이 1977년에 이러한 '자력갱생'의 구호를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이전의 16년간에 걸쳐 진행된 제1차 7개년계획(1961~70)과 6개년계획(1971~76)을 통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2차 7개년계획(1978~84)의 추진을 앞두고 생산력을 추가적으로 증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북한의 경쟁 상대인 남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상반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중국도 폐쇄경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새로운 구호를 통해 기존의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할 절박감을 느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자력갱생')- '중공업우선정책' 노선은 수십년에 걸쳐 교조화, 성역화됨으로써 북한이 경제정책에서 창의성과 탄력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7) 자력갱생 원칙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1977)에서 김일성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구호를 채택하면서 공식화되었다.

8)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6권, pp.216~217 참조

III. 북한경제의 구조

북한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재생산체계에 기초한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해 왔다. 북한경제의 재생산체계의 작동원리는 ‘국가의 통제하에 노동력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생산, 분배, 소비, 축적을 계획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는 북한경제의 재생산체계의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경제 이론의 저변에 깔려 있는 ‘노동’의 개념과 재생산체계를 구성하는 생산, 분배, 소비, 축적체계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재생산체계가 화폐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운영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의 가격, 재정, 금융체계에 관하여 논의한다.

논의에 앞서 먼저 본 장에서 설명하게 될 북한의 전통적 경제구조는 2002.7월 단행한 ‘7.1조치’⁹⁾를 계기로 퇴조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언급해 둔다. 이처럼 북한에서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북한의 전통적 경제구조에 관한 논의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이유는 이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양상과 방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 ‘노동’ 중심의 재생산체계

북한은 생산, 분배, 소비, 축적의 순환고리를 이루는 재생산체계가 주체사상에 의해 개념화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9) 7.1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는 V장에서 다룬다.

북한은 ‘사람’을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 존재’로 정의하고 이를 경제관계에 적용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에 맞게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 부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활동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개념화된 ‘사람’이 재생산체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운영에서는 ‘사람’ 개념이 ‘노동자’ 개념과 동일시됨으로써 마르크시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생산, 분배, 소비, 축적 등 경제의 모든 재생산 과정을 ‘노동’과 연계시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북한이 설명하는 ‘노동’의 개념이 재생산체계의 각 단계(생산, 소비, 분배, 축적)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가. 노동의 개념

북한에서 노동은 기능별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목적에 따라 ‘자기를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해 살펴본다.

북한은 경제부문을 크게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부문은 공업 및 농수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부문을, 비생산부문은 서비스업, 교육, 문화, 국방 등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 부문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적 노동은 주로 생산부문에서, 비생산적 노동은 주로 비생산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생산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재화생산과 무관한 노동(예를 들면, 자재창고관리 업무 등)은 비생산적 노동으로, 비생산부문에서 이루어지지만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예를 들면, 저술·조각·회화 등 활동)은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된다. 또한 서비스중 수송과 포장 등의 업무는 비생산부문에 속하지만 예외적으로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차이를 엄밀히 구분하면 노동의 결과가 유형의 재화인가 또는 무형의 효용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를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에 관해 살펴본다.

북한의 개념에 의하면 재화는 생산부문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소비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비생산부문의 노동자를 포함한 다른 사회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산부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소비할 몫은 물론 사회 전체의 소비 몫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지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생산부문 노동자가 지출하는 노동에는 자기를 위한 부분과 사회를 위한 부분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개념적으로 전자를 ‘자기를 위한 노동’, 후자를 ‘사회를 위한 노동’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부문 노동자가 하루 24시간중 8시간의 노동을 한다고 할 때 ‘자기를 위한 노동’을 4시간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4시간은 ‘사회를 위한 노동’이 된다. 이 두 가지의 노동을 근로현장에서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에 대한 보상 방식에 개념적 차이를 부여하여 양자를 구분한다. 즉, ‘자기를 위한 노동’은 생산부문 근로자의 ‘생활비’(임금)의 형태로 직접 보상하고 ‘사회를 위한 노동’은 국가의 재정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혜택(배급제, 무상교육 및 치료, 저렴한 공공서비스 등)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상한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동안 노동하는 근로자는 8시간분의 가치를 갖는 생산물을 창조하게 되지만 노동자에게 직접 보상되는 생산물의 가치는 4시간분이고 나머지 4시간분은 일단 국가재정에 귀속시켜 사회적 혜택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표 1〉 북한의 ‘노동’ 개념 구분

	구분	내용
기능별	생산적 노동	· 생산부문(재화생산) 및 생산적 봉사부문(수송, 포장 등) 근로자가 물질적 생산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동 · 비생산부문(서비스, 교육, 과학, 예술, 보건, 체육 등) 근로자가 유형의 결과물(조각, 회화, 서적 등) 생산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동
	비생산적 노동	· 비생산부문 근로자가 무형의 업무수행에 지출하는 노동(유통부문 상업종사자의 상품판매 등) · 생산부문 근로자가 무형의 업무수행에 지출하는 노동(자재생산 공장의 창고관리 업무 등)
목적별	자기를 위한 노동	· 생산부문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유지와 재생산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동(‘생활비’(임금)로 직접 보상)
	사회를 위한 노동	· 생산부문 근로자가 사회공동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노동(직접 보상되지 않고 재분배의 형태로 보상)

나. 노동과 재생산체계의 연계성

북한은 생산, 분배, 소비, 축적 등 재생산체계의 각 단계를 노동의 개념과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

‘생산’은 ‘생산부문’과 ‘생산적 봉사(서비스)¹⁰⁾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에 의해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즉, ‘노동력’이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유형의 ‘생산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말한다. 북한은 노동력과 결합되는 ‘생산수단’을 다시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 노동대상, 노동수단을 ‘생산의 3요소’¹¹⁾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노동대상’은 원시림, 지하자원, 원자재

10) ‘생산적 봉사’는 수송, 체신, 포장 등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11) 북한은 노동, 자본, 토지를 ‘생산의 3요소’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르조아 속류 경제이론’이라고 폄하한다.

등 노동이 가해지는 대상, ‘노동수단’은 기계, 설비, 공구, 토지, 건물, 도로, 창고 등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 조건을 의미한다.

분배는 노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소비재를 분배하는 과정이다. 북한은 분배가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과 ‘국가적·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은 각 근로자가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생활비(임금)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배법칙은 각 노동자에 대해 생활비를 상이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된다. ‘국가적·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법칙’은 근로자들이 ‘사회를 위하여 지출한 노동’의 보수를 국가재정으로 흡수하여 이중 일부를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무료교육, 무상치료, 국영 유치원 및 탁아소 운영, 사회보장 및 보험 등의 형태로 보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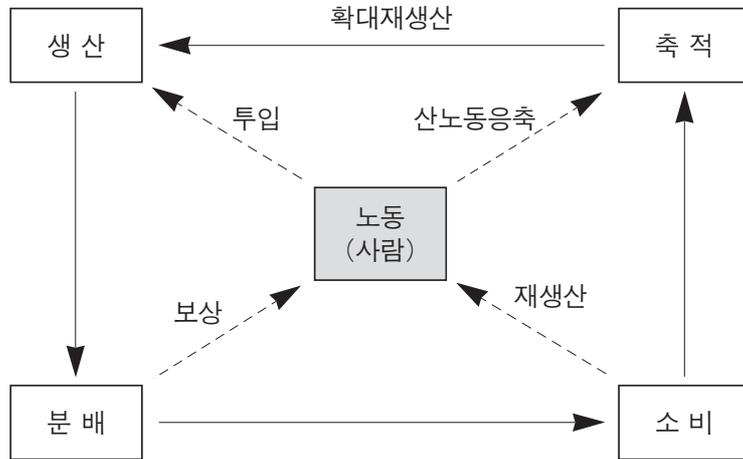
소비는 재생산체계의 완성단계로서 근로자들이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소비재 및 봉사(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이다.

축적은 노동가치설에 따라 당장 소비하지 않는 생산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현실의 실제 노동인 ‘산(살아있는) 노동’을 凝縮하여 기계, 건물 등 ‘과거노동’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는 투자와 같은 의미로서 북한은 축적을 확대재생산의 중요한 토대로 인식하고 있다.¹²⁾ 즉, ‘생산수단’을 확충하면 이전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북한의 노동중심 재생산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2) 축적이 확대재생산의 토대가 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북한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1〉 북한의 노동중심 재생산체계



2. 생산 · 분배 · 소비 · 축적체계

여기에서는 북한의 재생산체계를 구성하는 생산, 분배, 소비, 축적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전통적 경제구조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생산체계

1) 북한 생산체계의 특징

생산계획 중심의 인민경제계획 :

북한은 생산을 인간의 노동력(‘산 노동’)과 생산수단(‘과거노동’)이 결합하여 유형의 재화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생산은 생산-분배-소비-축적의 재생산 순환고리의 토대를 이룬다. 왜냐하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생산체계가 작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은 생산계획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또한 각 생산단위의 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도 생산계획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¹³⁾

생산유기체 개념과 생산체제:

북한은 스스로 자신의 경제를 생산유기체로 인식하고 있다. 생산유기체 개념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 재생산의 고리들이 서로 불가분의 연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생산유기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은 국가의 유일한 지휘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경제”를 의미한다.¹⁴⁾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경제내 모든 생산단위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하나의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자적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즉, 계획당국(국가계획위원회)은 유기체의 두뇌이고 각 생산단위는 두뇌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조직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탄광이 석탄을 생산하여 화력발전소에 원료로 공급하고, 화력발전소는 제철소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계제작소는 제철소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기계를 생산하여 각 부문에 공급하도록 모든 생산단위를 서로 긴밀하게 연계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획당국이 경제전체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계산하여 각 생산단위에 생산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도, 통제하면 경제가 계획당국의 의도대로 운영될 수 있다.

기술경제적 기준에 의한 생산계획 :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은 이른바 ‘기술경제적 기준’을 토대로 작성된다. 기술경제적 기준이란 ‘해당 계획기간에 공장, 기업소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저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기초하여 각 생산

13) 박영근, 김철제, 리해원, 김하광(1992), pp.236~265 참조

14) 조선로동당출판사(1999), 「주체정치경제학 독본」 p.239 참조

단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연료, 자재의 소비기준, 동력의 소비기준, 노동력의 지출 정도를 설정해 주고 각 생산단위가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를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다.¹⁵⁾ 기술경제적 기준은 경제의 기술수준과 생산현장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는 定型화된 지표로서 계획당국이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길잡이로서 역할을 한다.

2) 사회총생산물

북한경제에서 생산은 재생산 순환고리의 시작점이며 분배, 소비, 축적의 토대이다. 북한의 경제이론은 생산, 분배, 소비, 축적 사이의 연계성을 반영한 ‘사회총생산물’ 개념에 기초하여 생산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생산체계를 사회총생산물 개념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개념:

사회총생산물은 일정기간중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국영경리, 협동경리,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총량 또는 현물의 가치로 정의된다.

사회총생산물은 대부분 생산적 국영경리¹⁶⁾ 및 협동경리¹⁷⁾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해 창출되며, 부분적으로 비생산적 국영경리¹⁸⁾와 개인부업경리(텃밭)에서도 창출된다. 사회총생산물은 최종재뿐만 아니라 중간재도 포함한다. 그러나 수송, 체신, 포장 등 ‘생산적’ 서비스를 제외한

15)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4권, p.17 참조

16) 공업, 건설, 화물수송 부문 등의 공장, 기업소

17) 협동농장, 생산·수산·편의협동조합

18) 과학, 교육, 문화, 보건부문의 서적, 예술품, 약품 생산 활동

여타 서비스부문(비생산적부문)의 생산은 사회총생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총생산물의 구성:

사회총생산물의 구성은 생산 및 지출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생산측면에서 본 사회총생산물은 생산에 투입된 요소의 가치로 구성되며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W=C+V+M, C=Q+D \tag{1}$$

여기에서 W는 사회총생산물, C는 소모된 생산수단(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중간재) 보상, V는 생산부문 근로자가 자신을 위하여 지출한 노동가치인 ‘생활비’ (임금), M은 생산부문 근로자가 사회를 위하여 지출한 노동가치인 ‘사회순소득’, Q는 중간재, D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나타낸다.

식 (1)은 생산면에서 사회총생산물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i)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 (ii) 생산부문 근로자의 ‘생활비’ (임금), (iii) 생산부문 근로자가 창출한 ‘사회순소득’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식 (1)은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C)이 200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V)가 100원, 사회순소득(M)이 100원이라면 사회총생산은 400원이 된다.¹⁹⁾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순소득’은 마르크스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잉여가치’ (surplus)²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9) 이 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노동보수(100원)와 사회순소득(100원)이 같은데 이는 노동자가 ‘자신을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을 50:50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즉,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한다면 4시간을 자신을 위하여, 4시간은 사회를 위하여 지출함으로써 총 200원(V+M)의 가치를 새로 창출한다면 ‘자신을 위한 노동’으로 창출되는 100원은 생활비(V)로 노동자에게 직접 보상되지만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창출되는 100원은 직접 보상되지 않고 사회순소득(M)의 형태로 국가재정에 일단 흡수되어 그중 일부가 재분배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상된다.

20)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착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전인민적 소유’)하였기 때문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 보수’ (이윤)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식 (1)의 사회총생산물(W)중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상(C)을 제외한 V+M 부분을 ‘국민소득’ 이라고 한다. 즉, 북한의 ‘국민소득’ 은 사회총생산물중 당기에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이다.²¹⁾

사회총생산물 가치는 생산수단 및 소비재의 지출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W=(X+K)+(S+E)+(EX-IM) \quad (2)$$

여기에서 W는 사회총생산물, X는 중간재에 대한 지출(생산적 소비), K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및 중간재의 재고소진분 보상액, S는 축적액, E는 소비액, EX는 생산물 수출액, IM은 생산물 수입액을 나타낸다. 만일 대외거래가 없다면(EX=IM=0), 식 (2)의 중간재에 대한 지출(X)과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및 중간재의 재고소진분 보상액(K)의 합은 식 (1)의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C)과 같다.

$$C=X+K \quad (3)$$

또한 식 (3)이 성립하면 식 (2)의 축적액(S)과 소비액(E)의 합은 식 (1)의 생산부문 근로자의 생활비(V)와 사회순소득(M)의 합과 같아지게 된다.

$$V+M=S+E \quad (4)$$

식 (4)는 당기에 형성된 ‘국민소득’ (V+M)이 축적액(S)과 소비액(E)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 자본가가 착취할 수 있는 ‘잉여가치’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이를 ‘사회순소득’의 명목으로 국가재정에 전액 흡수하여 인민들에게 재분배한다고 주장한다.

21) ‘국민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식 (2)에 포함되어 있는 축적몫(S)은 생산적 축적, 비생산적 축적, 사회적 예비 등 세가지 형태의 축적몫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 = M^a + M^i + M^j \quad (5)$$

여기에서 M^a 는 생산적 축적, M^i 는 비생산적 축적, M^j 는 사회적 예비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적 축적은 생산부문의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형성을, 비생산적 축적은 비생산부문의 주택, 학교, 병원 등 문화후생용 고정자산 형성을, 사회적 예비는 식량, 자재 등의 비축을 의미한다.

식 (2)의 소비몫(E)은 생산부문 근로자의 생활비(V), 재분배에 의한 소비몫(즉, 비생산부문 근로자의 생활비 및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한 소비몫), 축적과정에서 노동력의 추가고용에 따른 근로자 생활비 등 세가지 소비몫의 합으로 구성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 = V + M^v + M^b \quad (6)$$

여기에서 M^v 는 재분배에 의한 소비몫이며 M^b 는 축적과정에서 노동력의 추가 고용에 따른 근로자 생활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순소득의 경제적 의미:

사회순소득은 생산부문 노동자의 '사회를 위한 노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가치이다. 사회순소득은 북한의 국가재정의 주요 재원이다. 이는 모든 공장, 기업소가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소의 이윤을 국가가 재정에 흡수하여 재정재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 북한은 재정에 흡수된 사회순소득의 상당부분을 재정활동을 통해 재생산을 위한 축적에 지출하고 나머지를 '사회적 소비'를 위해 지출한다. 북한경제에서 축적은 사회순소득으로 구성된 재정재원에 의해서만 가능

하다. 사회순소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앞에서 논의된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거래가 없다는 가정 ($EX=IM=0$) 하에 식 (3)~(6)를 식 (2)에 대입하고 이를 식 (1)과 일치(생산=지출)시키면 사회순소득(M)의 일부는 축적에, 일부는 소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 = M^S + M^E \quad (7)$$

$$\text{여기에서 } M^S = M^a + M^i + M^j, M^E = M^v + M^\beta$$

식 (7)에서 M^S 는 사회순소득중 축적몫, M^E 는 사회순소득중 소비몫을 나타내고 있다. 식 (7)은 식 (6)에서 논의된 재분배에 의한 소비몫(M^v)과 축적과정에서 노동력의 추가 고용에 따른 근로자 생활비(M^β)로 이루어지는 사회순소득중 소비몫(M^E)이 생산부문 근로자의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창출되는 사회순소득(M)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식 (7)의 사회순소득중 축적몫(M^S)은 식 (5)에서 언급한 경제 전체의 축적몫(S)과 같다.

$$S = M^S \quad (8)$$

식 (8)은 경제의 축적재원이 오로지 생산부문 근로자가 사회를 위하여 지출한 노동에 의해 얻어지는 사회순소득(M)에 의해서만 조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식 (7)에서 $M^E = M^v + M^\beta$ 인데 이를 식 (6)에 대입하면 경제 전체의 소비몫(E)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 = V + M^E \quad (9)$$

식 (9)는 경제 전체의 소비몫(E)은 생산부문 근로자의 생활비(V)와 사회순소득중 소비몫(M^E)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식 (9)

는 경제전체에 공급되는 소비재의 총량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V)와 사회순소득중 소비몫(M^E)의 합계만큼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7)~(9)에서 생산부문 근로자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순소득(M)은 북한경제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축적몫과 사회적 소비몫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후생수준과 경제성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북한경제의 축적과 사회적 소비규모는 사회순소득(M)이 클수록 증가하고 작을수록 감소하게 된다.

사회총생산물의 생산부문간 연계성 :

경제전체의 사회총생산물은 일정기간중 각 생산단위가 생산한 총생산물의 합계로 산출된다. 경제전체의 사회총생산물의 산출과정과 각 생산단위간 생산적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부문을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부문을 두개 부문(I부류 및 II부류)으로 분류한 경우와 각 업종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부문사이 연계균형표'로 본 경우를 각각 살펴본다.

i) I부류 및 II부류로 구분한 사회총생산물

북한은 전통적으로 생산부문을 크게 I부류와 II부류의 두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I부류는 중공업부문을, II부류는 농업 및 경공업부문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이론에서는 경제부문간 생산적 연계성, 경제부문사이의 균형, 확대재생산 등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는 항상 경제부문을 I부류와 II부류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²²⁾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회총생산

2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물을 I,II부류로 나누어 생각하기 위하여 앞에서 논의된 사회총생산물식의 구성을 토대로 각 부류의 총생산물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I부류 : } W_I = C_I + V_I + M_I \quad (10)$$

$$\text{II부류 : } W_{II} = C_{II} + V_{II} + M_{II}$$

여기에서

$$M_I = M_I^a + M_I^i + M_I^j + M_I^\beta + M_I^v,$$

$$M_{II} = M_{II}^a + M_{II}^i + M_{II}^j + M_{II}^\beta + M_{II}^v$$

식 (10)에서 W_I, W_{II} 는 각 부류의 총생산물, C_I, C_{II} 는 각 부류의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 V_I, V_{II} 는 각 부류 노동자가 자기를 위해 지출한 노동가치인 '생활비' (임금), M_I, M_{II} 는 각 부류 노동자의 사회를 위한 노동지출에 의해 창출된 사회순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 부류의 사회순소득 (M_I, M_{II})을 구성하는 부분인 M_I^a, M_{II}^a 는 각 부류의 생산적 축적몫, M_I^i, M_{II}^i 는 각 부류의 비생산적 축적몫, M_I^j, M_{II}^j 는 각 부류의 사회적 예비, M_I^β, M_{II}^β 는 각 부류의 축적과정에서 노동력 추가 고용에 따른 근로자 생활비, M_I^v, M_{II}^v 는 각 부류의 재분배에 의한 소비몫을 나타내고 있다. 식 (10)의 양 부류의 총생산물식의 각 항을 더하면 식 (1)의 경제전체 사회총생산물과 같아지게 된다.

$$W = C + V + M \quad (11)$$

여기에서

$$W = W_I + W_{II}, C = C_I + C_{II}, V = V_I + V_{II},$$

$$M = M_I + M_{II} = M^a + M^i + M^j + M^\beta + M^v,$$

$$M^a = M_I^a + M_{II}^a, M^i = M_I^i + M_{II}^i, M^j = M_I^j + M_{II}^j,$$

$$M^\beta = M_I^\beta + M_{II}^\beta, M^v = M_I^v + M_{II}^v$$

ii) 부문사이 연계균형표로 본 사회총생산물

‘부문사이 연계균형표’는 사회총생산물을 산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총괄한 표로서 남한의 ‘산업연관표’와 유사하다. ‘부문사이 연계균형표’는 ‘산업연관표’와 달리 생산적 서비스(수송, 체신, 포장 등)를 제외한 여타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 재분배 내역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부문사이 연계균형표는 다음 <표2>와 같이 I분면(생산), II분면(소비 및 축적), III분면(분배), IV분면(재분배) 등 4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I분면은 부문별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생산적 서비스 포함)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I분면의 행은 각 부문의 생산물이 다른 부문에 어떻게 배분·이용되는가를, 列은 각 부문이 생산을 위해 다른 부문의 생산물을 얼마나 소비하는가를 보여준다.

II분면의 행은 부문별 감가상각비 지출, 최종생산물 소비, 축적 내역 등을 나타낸다.

III분면의 列은 감가상각비(K)와 ‘국민소득’ (V+M)의 일차적 분배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IV분면은 ‘국민소득’의 재분배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즉, III분면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차적으로 생산부문 근로자들의 생활비(임금)와 사회순소득으로 분배되고, IV분면에서는 생산부문 근로자에 의해 창출된 사회순소득이 국가의 재정 및 경제정책에 의해 가격 및 요금체계 등을 통해 재분배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경제전체의 소비몫(주민의 개인소비몫 및 사회공동의 소비몫)과 축적몫의 규모는 IV분면의 재분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표2〉 '부문사이 연계균형표'의 구조

배분		사회총생산물											총계		
		중간생산물(생산적 소비)					최종생산물								
		1	2	...	n	합계	고정자산 마멸 보상 및 대보수	국민소득		수출 (+)	수입 (-)	합계			
야금	전력	...	기타	소비 фон드	축적 фон드										
생산	현행 물 자 지 출	1 야금	x_{11}	x_{12}	...	x_{1n}	$\sum_j x_{1j}$	k_1	e_1	s_1	-	-	Σ	w_1	
		2 전력	x_{21}	x_{22}	...	x_{2n}	$\sum_j x_{2j}$	k_2	e_2	s_2	-	-	Σ	w_2	
		-	-	
		n 기타	x_{n1}	x_{n2}	...	x_{nm}	$\sum_j x_{nj}$	k_n	e_n	...	-	-	Σ	w_n	
		합계 (X)	$\sum_i x_{i1}$	$\sum_i x_{i2}$...	$\sum_i x_{in}$	$\sum_i \sum_j x_{ij}$ (7,000)	$\sum_i k_i$ (1,000)	$\sum_i e_i$ (3,000)	$\sum_i s_i$ (1,000)	-	-	$\Sigma \Sigma$ (5,000)	$\sum_i w_i$ (12,000)	
	사회 총 생 산 물	최 종 생 산 물 의 가 치	감가상각비 (K)	k_1	k_2	...	k_n	$\sum_j k_j$ (1,000)	-	-	-	-	-	-	-
			생산부문 근로자 생활비 (V)	v_1	v_2	...	v_n	$\sum_j v_j$ (2,000)	-	(2,000)	-	-	-	(2,000)	-
			사회순소득 (M)	m_1	m_2	...	m_n	$\sum_j m_j$ (2,000)	-	(1,000)	(1,000)	-	-	(2,000)	-
			합계	Σ	Σ	...	Σ	$\Sigma \Sigma$ (5,000)	-	(3,000)	(1,000)	-	-	(4,000)	-
			총생산액 (W)	w_1	w_2	...	w_n	$\sum_j w_j$ (12,000)	-	-	-	-	-	-	-

부문사이 연계균형표에 표시된 수치를 이용하여 앞에서 논의된 사회총생산물식의 내용을 수치로 살펴볼 수 있다. 식 (1)의 생산측면에서 본 사회총생산물 식은

$$W=C+V+M, C=Q+D$$

이므로 위의 예에서 중간재(Q)는 7,000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D)는 1,000원이므로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C)은 8,000원이 되고, 생산부문 근로자의 생활비(V)는 2,000원, 사회순소득(M)은 2,000원이므로 사회총생산물 가치는 12,000원이 된다. 식 (2)의 지출측면에서 본 사회총

생산물은

$$W=(X+K)+(S+E)+(EX-IM)$$

인데 여기에서 수출과 수입이 없다면($EX=IM=0$) 중간재에 대한 지출(X)이 7,000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K)가 1,000원이고 축적몫은 1,000원, 소비몫은 3,000원이 되어 사회총생산물 가치는 12,000원이 되어 생산측면에서 본 사회총생산물 가치와 같아지게 된다. 또한 생산부문 근로자 생활비(V)가 2,000원이고 사회순소득(M)이 2,000원이므로 '국민소득' ($V+M$)은 4,000원이 되며 이중 사회순소득 2,000원은 축적몫($S = M^S$) 1,000원, 사회적 소비몫(M^E) 1,000원으로 각각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총생산물을 I, II부류로 구분하여 수치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참고1>에서 정리한다.

사회총생산물 개념과 시장경제의 국민계정체계와의 비교:

북한의 사회총생산물 개념과 시장경제의 국민계정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총생산물은 국민계정의 총산출과 마찬가지로 중간재(소모된 생산수단 가치)를 포함하나 일부 생산적 서비스(수송, 포장 등)를 제외한 여타 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째, 사회총생산물중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 지출한 노동에 대한 보상인 생활비(임금)는 국민계정의 피용자 보수와 비슷하나 비생산 부문(서비스 부문 등)의 피용자 보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셋째, 사회총생산물중 사회순소득은 국민계정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稅前 사용자 보수(기업이윤)와 유사하다.

3) 국민소득

개념:

북한에서 ‘국민소득’은 해당 기간에 생산된 사회총생산물중 축적 및 소비로 이용되는 몫을 의미한다. 앞에서 사회총생산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것처럼 생산측면에서 국민소득을 보면 사회총생산물중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및 중간재)를 보상하고 남은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G = V + M \quad (12)$$

여기에서 G는 국민소득, V는 생산부문 노동자의 생활비, M은 사회순소득을 나타낸다. 국민소득을 지출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축적몫(S)과 소비몫(E)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G = S + E \quad (13)$$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은 최종재 생산을 포함하나 서비스의 생산과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국민순소득(NNP)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서비스부문 생산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포괄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소득의 성장 개념:

국민소득은 북한경제에서 축적과 소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총량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경제성장 개념은 사회총생산물의 성장보다 국민소득의 성장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소득이 증가해야 소비와 축적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확대재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두가지 방법에 의해 국민소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고 본다.

첫째, 생산부문에서 노동생산 능률이 향상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즉, 기술수준 제고, 과학기술의 발전, 생산 및 노동조직 개선 등으로 노동생산능률이 향상되면 산(살아있는)노동에 의한 생산이 늘어나므로 국민소득이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개념은 시장경제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

둘째, 생산부문에 대한 노동투입량이 증가할 때 국민소득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노동생산능률과 노동강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생산부문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성장 개념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생산부문에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서비스 부문 등 비생산부문에 더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게 되어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서비스 부문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장경제의 성장개념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다.

〈참고1〉 북한의 사회총생산물, 국민소득, 소비, 축적의 상호관계 예시

① 기본가정

- 잉여가치율(MV)은 100% \Leftrightarrow 식 (1)에서 $V=M$
- 대외거래는 없음 \Leftrightarrow 식 (2)에서 $EX=IM=0$
- 축적중 비생산적 축적과 사회적 예비는 없음 \Leftrightarrow 식 (10)에서 $M^i_I = M^i_{II} = 0,$
 $M^j_I = M^j_{II} = 0$
- 식 (10)의 I,II부류의 총생산물식이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고 전제
I부류 : $6,000(C_I) + 1,500(V_I) + 800(M^f_I) + 200(M^b_I) + 500(M^v_I) = 9,000(W_I)$
II부류 : $2,000(C_{II}) + 500(V_{II}) + 200(M^f_{II}) + 50(M^b_{II}) + 250(M^v_{II}) = 3,000(W_{II})$
 C_I, C_{II} : 각 부류의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
 V_I, V_{II} : 각 부류의 노동자가 자기를 위해 지출한 노동가치인 '생활비'
 M^f_I, M^f_{II} : 각 부류의 생산적 축적물
 M^b_I, M^b_{II} : 각 부류의 축적과정에서 노동력의 추가 고용에 따른 근로자 생활비
 M^v_I, M^v_{II} : 각 부류의 재분배에 의한 소비물

② 사회총생산물: $9,000(W_I) + 3,000(W_{II}) = 12,000(W)$

- I부류 사회총생산물: 9,000
- II부류 사회총생산물: 3,000

③ 국민소득: $12,000(W) - 6,000(C_I) - 2,000(C_{II}) = 4,000$

- I부류 국민소득: $3,000(W_{II}) - 2,000(C_{II}) = 1,000$
- II부류 국민소득: $9,000(W_I) - 6,000(C_I) = 3,000$

④ 비생산적 소비(소비 총액): $1,500(V_I) + 200(M^b_I) + 500(M^v_I)$

- $+ 500(V_{II}) + 50(M^b_{II}) + 250(M^v_{II}) = 3,000$
- I부류 소비: $1,500(V_I) + 200(M^b_I) + 500(M^v_I) = 2,200$
- II부류 소비: $500(V_{II}) + 50(M^b_{II}) + 250(M^v_{II}) = 800$

⑤ 생산적 축적: $800(M^f_I) + 200(M^f_{II}) = 1,000$

- $800(M^f_I) + 200(M^f_{II}) = 1,000$

⑥ 축적률(축적총액/국민소득): $1,000/4,000 = 25.0\%$

나. 분배체제

분배는 재생산체제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노동 및 생산활동의 결과를 보상하는 과정이다. 분배는 근로자들이 소비재를 획득함으로써 실현된다. 북한의 분배체제는 크게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과 ‘국가적·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법칙’ 등 두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운용된다. ‘노동에 의한 분배’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개인별로 할당되는 소비몫을, ‘국가적·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는 사회순소득을 재원으로 국가가 재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의료, 사회보험 및 보장 등의 혜택을 말한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분배체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위 두가지의 분배법칙의 운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은 각 근로자가 수행한 노동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생활비(임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체는 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양과 질’을 계측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

한편, ‘노동의 양과 질’의 평가기준은 생산방식이 다른 경제부문, 이를테면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에 대해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을 실행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의 노동보수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국영기업소 노동보수제

국영기업소의 노동보수제는 각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노동의 양과 질’을 반영한 ‘기본생활비’를 책정한 후 이를 토대로 각 근로자의 ‘생활비’를 산정하여 노동보수를 지급한다.

‘노동의 양과 질’을 반영한 ‘기본생활비’ 책정체계:

‘기본생활비’는 국영기업소 근로자가 수행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반영한 일정한 규격의 노동에 대해 부여된 생활비(임금) 수준이다. 기본생활비는 노동자가 실제 수령하는 생활비를 산정하기 위한 준거이다. 즉, 근로자가 수행한 노동이 정해진 노동규격을 상회하면 국영기업소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생활비보다 더 큰 액수의 생활비를, 하회하면 기본생활비보다 더 적은 액수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기본생활비 책정체계는 국영기업소 노동보수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직종의 일자리에 책정된 기본생활비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의 양과 질’이란 ‘노동의 양’과 ‘노동의 질’이라는 두가지 측면의 노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결합시킨 개념이다. 각 일자리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노동의 양’과 ‘노동의 질’은 ‘노동정량’과 ‘노동부류 및 기능등급’을 통해 각각 규격화된다.

‘노동정량’은 근로자가 지출하는 ‘노동의 양’을 반영하는 척도로서 일정수준의 제품생산량 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노동기준량을 의미한다. 즉, 노동정량은 단위시간당 제품생산(또는 작업)량 또는 단위제품(또는 작업)당 노동투입시간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노동정량은 기본생활비의 지급기준이 된다. 반면, ‘노동부류 및 기능등급’은 ‘노동의 질’을 반영하는 척도로서 노동의 강도 및 조건 등을 반영하여 설정된 노동의 등급체계

이다. 노동등급이 높으면 ‘생활비등급’을 높게, 노동등급이 낮으면 ‘생활비등급’을 낮게 책정한다.

예를 들면 ‘번호붙이기공’을 A, ‘기관차수리공’을 B라고 하고 A의 노동정량을 한달동안 번호를 1만개 붙이는 것이고 B의 노동정량을 한달동안 기관차 1대를 수리하는 것이라고 할 때 노동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A와 B는 노동정량을 100% 수행하면 모두 같은 금액의 기본생활비를 받게 된다. 그런데 노동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A가 수행하는 작업은 강도가 낮아 노동부류를 1등급으로, B가 수행하는 작업은 강도가 높아 노동부류를 3등급으로 규정하여 B의 ‘생활비등급’을 A보다 높게 책정하면 두 사람이 모두 노동정량을 100% 수행하더라도 B에게 지급되는 기본생활비는 A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북한은 각 일자리에 대해 표준적인 기술수준과 숙련도하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노동의 양을 ‘노동정량’으로 규격화하고 노동정량을 100%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 노동부류 및 기능등급별로 규정된 ‘생활비등급’을 적용하여 기본생활비 수준을 책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기본생활비를 각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북한은 노동강도에 따라 노동부류를 1~4부류 및 특수 1~2부류로 구분하고, 노동기능은 1~8급으로 분류하고 있다(7~8급은 고급기능이다). 각 직종별 기본생활비는 ‘생활비표’에 명시된다. ‘생활비표’는 경제부문 별 직종 및 직제, 기능급수에 따라 지불하는 기본생활비를 규정한 법적 문건으로 노동자, 기술자 및 사무원 생활비표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표3〉

노동부류 구분

노동부류	노동강도/노동조건	직종 예
1	낮음	번호붙이기공 등
2	보통	전공, 정방공(精紡工) 등
3	다소 높음	단야공, 기관차수리공 등
4	높음	배소로공(焙燒爐工) 등
특수1	높음/열악	탄광, 광산부문 등
특수2	높음/열악	금속, 화학공업부문 등

국영기업소의 노동보수 지불제도:

북한에서 국영기업소의 노동자, 사무원에게 지급되는 노동보수는 ‘생활비’로 총칭되나 세부적으로는 ‘생활비’와 이외의 ‘추가적 노동보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에서는 국영기업소의 노동보수 지불제도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 생활비지불제도

국영기업소의 생활비지불제도는 크게 도급생활비지불제와 정액생활비지불제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도급생활비지불제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정량을 부여하고 노동수행 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계산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노동정량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생산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생활비지급방식이다. 도급생활비지불제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단일·누진·공수(工數)²³⁾·질(質)·기술지표·간접·개인·반(班)도급생활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된다.

단일도급생활비제는 도급단가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채 작업계획의 수행도와 관계없이 실제 수행한 실적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23) 어떤 일에 들인 노동력의 가치를 숫자로 나타낸 것(조선말대사전)

다. 생활비 계산방식은 ‘단일도급단가×생산실적’ 또는 ‘시간당 도급단가×번시간수(번시간수=시간 노동정량×생산실적)’로 비교적 단순하다.

누진도급생활비제는 노동정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누진도급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주어진 노동정량을 100% 수행할 때까지는 단일도급단가를 적용하지만 초과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단가를 높게 책정한다. 생활비 계산방식은 ‘단일도급단가×생산실적+누진초과도급생활비(=단일도급단가×누진비율×노동정량 초과생산량)’의 방식으로 노동정량 초과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공수도급생활비제는 작업대상을 맡겨주고 투하 노동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보수를 전액 지불하는 방식이다. 건설, 운수, 대보수(大補修) 등의 작업에 대해 적용한다. 질도급생활비제는 도급단가를 제품의 품질등급으로 책정하여 생활비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기술지표도급생활비제는 도급단가를 생산량과 기술지표기준의 수행정도로 책정하여 생활비를 산정한다. 간접도급생활비는 기증기운전공, 기대(機臺; 설비를 말함)수리공 등과 같이 노동결과를 직접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들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과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생활비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개인도급생활비는 개별노동자에게 노동정량을 주고 수행실적에 따라 생활비를 계산하여 지불하는 방식이다. 반(班)도급생활비는 작업반(조)의 노동정량 수행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계산하여 지불하는 형태이다.

한편, 정액생활비지불제는 노동정량 및 결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생활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예산제 기관(병원, 학교 등) 소속 근로자나 기업소 종업원중 작업량과 과제를 줄 수 없거나 계획실행 정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량과 관계없이 법정노동일수를 토대로 기본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기술자(과학자, 전문가 포함), 사무원 등 계획실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정액생활지불제를 적용하되 계획실행정도를 반영한다.

ii) 추가적 노동보수제도

북한은 국영기업소 노동보수제의 일환으로 ‘생활비’ 외에 ‘추가적 노동보수제도’를 운영한다. 추가적 노동보수는 상금, 장려금, 가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상금은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한 집단 또는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노동보수로서 국가재정을 원천으로 하는 상금제, 기업소 초과이윤을 원천으로 하는 상금제, 수출품 첨가금²⁴⁾을 원천으로 하는 상금제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재정을 원천으로 하는 상금제는 주로 기업소가 국가로부터 ‘3대혁명붉은기’, ‘근위 및 계관근위’, ‘26호 모범기대공장’ 등의 명예 칭호를 받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소 초과이윤을 원천으로 하는 상금제는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월간 현물지표에 의한 생산계획, 원가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 등을 수행한 후 초과이윤을 내면 이중 일부를 상금기금으로 조성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출품 첨가금을 원천으로 하는 상금제는 수출품을 생산하거나 원자재를 제공한 공장, 기업소에 대해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수출품 첨가금의 일부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은 국가계획과제 또는 기술·경제적 기준을 초과 수행하도록 장려할 목적으로 지불하는 노동보수이다. 장려금은 노동정량 제고, 생산계획 초과 수행, 제품의 품질 제고, 설비이용률 제고, 자재절약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가급금은 생활비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연한, 노동조건, 기술자격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불하는 노동보수이다. 연한가급금제는 해당 직종에

24) 수출품 생산기업소가 무역기관에 납품할 때 판매가격에 일정비율을 덧붙여 받는 돈(「조선말대사전」)

오랜 기간 근무하는 공장, 기업소의 노동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근무연한을 반영한 제도이다. 노동조건에 따른 가급급제는 작업대상과 노동조건의 특성으로부터 다른 부문에 비하여 힘들고 노동강도가 높은 근로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대가급급제는 특수한 기술기능과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부문 및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iii) 국영기업소 근로자의 노동보수 산정체계

국영기업소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노동보수 총액은 ‘생활비’와 ‘추가적 노동보수’의 합계로 산정되며 산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영기업소 근로자의 노동보수 총액

$$= \text{기본생활비(노동정량 100\% 수행기준)} \times (\text{생산계획수행률} \pm \text{원가계획수행정도에 따른 반영비율}) + \text{추가적 노동보수}$$

위 노동보수 식에서 원가계획수행정도에 따른 반영비율은 생산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원가가 계획과 같으면 0, 원가를 계획보다 낮추면 (+), 원가를 인상하면 (-)로 계산된다. 노동보수 산정식에 포함된 원가계획수행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은 생산과정에서 원가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iv) 국영기업소의 생활비자금 조성과 국가의 통제

생활비자금의 조성방법은 예산제 기관과 독립채산제 기업소 사이에 차이가 있다. 예산제 기관은 영업수입이 없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종사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반면, 독립채산제 기업소는 생활비자금을 생산물의 판매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는 생산물판매수입금에 반영된 원가(생활비+생산수단 구입비+관리경영비용)에 ‘생활비’가 이

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채산제 기업소의 생활비자금은 생산물판매수입금이 늘면 증가하고 줄면 감소한다.

국영기업소가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자금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북한은 국가계획(생산 및 원가계획)을 초과달성하는 경우 추가적 노동보수를 지급하고는 있으나 설령 기업소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을 늘리고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기업소들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생활비자금의 한계(‘생활비 뭉’)를 설정하여 통제한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북한이 설명하는 ‘생활비’, ‘생활비자금’, ‘생활비 뭉’의 개념을 비교해 본다.

‘생활비’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기업소가 개별적 종업원들에게 작업과제 수행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보수로서 기업소와 종업원 사이에 적용되고, ‘생활비자금’은 국가가 기업소의 국가계획 수행정도에 따라 분배하여 주는 노동보수자금으로 국가와 기업소 사이에 적용되고, ‘생활비 뭉’은 국가가 기업소에 지급할 수 있는 생활비자금의 최대치로서 역시 국가와 기업소 사이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국가의 기업소에 대한 생활비자금의 통제방식은 만일 ‘생활비 뭉’ > ‘생활비 합계’이면 국가는 생활비 합계만큼 기업소에 ‘생활비자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반대로 ‘생활비 뭉’ < ‘생활비 합계’이면 국가는 ‘생활비 합계’만큼 ‘생활비자금’을 지불하지 않고 ‘생활비 뭉’만큼만 지불하도록 통제한다.²⁵⁾

이러한 생활비자금 통제 방식은 기업소들이 획기적으로 국가계획을 초과달성할 때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국가가 한 기업소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생활비 뭉’이 기본생활비의 150%라고 가정하자. 만일 이 기업소가 계획의 90%를 수행한다고 하면 기업소가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야

25)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pp. 836~837 참조

하는 생활비 합계는 기본생활비의 90%가 되므로(‘생활비 몫’〈‘생활비 합계’〉) 국가는 기업소에 기본생활비의 90%를 ‘생활비자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 기업소가 국가계획을 훨씬 초과달성하는 경우이다. 만일 이 기업소가 국가계획의 300%를 달성한다면 생활비 합계는 기본생활비의 300%에 달하게 되는데(‘생활비 몫’〈‘생활비 합계’〉) 이 기업소가 지급할 수 있는 생활비는 ‘생활비 몫’인 기본생활비의 150%까지만 지불할 수 있고 나머지 150%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의 생활비 통제는 기업소가 국가계획을 조금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만 획기적으로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업소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이처럼 북한이 기업소의 ‘생활비자금’을 통제해야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즉, 생활비자금의 지불규모를 국가계획실행정도에 맞게 정할 때 실제로 창출된 국민소득의 범위안에서 근로자들에게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은 축적몫(S)과 소비몫(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식 (13) 참조) 기업소들이 국가계획 수행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할 경우 경제전체적으로 주민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축적몫이 줄어들어 당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경제의 확대재생산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화폐유통체계를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근로자의 생활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북한의 화폐금융체계하에서 주된 현금공급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 만일 소비재의 공급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비만 더 지급하면 시중의 현금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암시장의 활성화, 민간보유 현금확대 등 현금유통과 상품유통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화폐금융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나) 협동농장 노동보수제

협동농장에 대해서는 ‘노력일 평가제’를 통해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을 시행한다. 협동농장원들이 공동작업에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은 ‘노력일’로 환산되며 이는 농업부문 종사자의 분배몫²⁶⁾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먼저 노력일의 산정방식을 보면 모든 작업을 노동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에 대해 노력일을 달리 적용한다. 작업의 노동강도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게 책정되는데 최고 등급인 6등급에 해당하는 작업을 100% 수행하면 노력일은 1.6일이 주어지고 등급이 한단계씩 낮아질 때마다 노력일이 0.2일씩 감소하게 된다. 각 농장원이 기여한 노동의 양과 질은 최종적으로 연간 노력일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분배몫을 결정한다. 협동농장 보수제에서 ‘노동의 양’의 평가척도는 각 작업에 부과된 정해진 작업량, ‘노동의 질’의 평가 척도는 작업등급으로 볼 수 있다.

각 농장원의 노력일은 개별적으로 평가되기보다 분조단위로 평가되며 분배몫은 ‘기본분배몫’과 ‘작업반 우대몫’의 형태로 지급된다.

협동농장은 수 개의 작업반과 각 작업반 산하의 분조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운영방식은 분조관리제이다. 분조관리제는 각 분조에 일정한 면적의 토지, 농기구 등을 할당해 주고 정보당 수확고 계획과 노력일 투하계획을 부여한다. 그리고 계획수행정도에 따라 분조의 노력일을 평가하여 분배하

26) 협동농장원에 대한 노동보상은 생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분배몫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는 방식이다. 기본분배몫은 ‘해당 연도에 실현되는 농장의 총생산액-(생산비+공동기금²⁷⁾+작업반 우대몫)’으로 산출되며 ‘작업반 우대몫’은 각 작업반에 부여된 특정기준을 초과한 畝量²⁸⁾을 작업반 구성원들이 추가적으로 분배받도록 하는 특별상금의 성격이다.

농장원에 대한 분배몫의 지급방식은 월별전불제와 연불제로 운영된다. 월별전불제는 연말정산전 기본분배몫의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고 연불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지급된 기본분배몫을 차감한 잔여 분배몫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협동농장의 분배방식을 앞에서 논의한 기관, 기업소의 분배방식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4〉 북한의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방식

구 분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노동의 양 평가 척도	노동정량	정해진 작업량
노동의 질 평가 척도	노동부류 및 기능등급	작업등급
노동보수 산정 기준	기본생활비	노력일
노동보수체계의 적용 범위	협동농장을 제외한 전국가, 전사회	협동농장
노동보수의 총칭	생활비	분배몫
노동보수의 세부구성	생활비+추가적 노동보수	기본분배몫+작업반 우대몫

2) 국가적·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

국가적·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는 국가가 사회적 소비몫(식 (7)의 M^E)을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무료교육 및 무상치료, 국영 유치원 및

27) 공동기금은 순수입(총수입-지출)의 일부로서 기본건설자금, 사회문화기금, 탁아소, 유치원 운영기금, 사회보험기금, 유동기금 등으로 전환되는 몫이다.

28) 공업부문 국영기업소는 초과이윤의 일정비율만 상금으로 지급하는 점이 다르다.

탁아소 운영, 사회보장 및 보험, 저렴한 식량 및 아동의류 공급, 주택의 무상공급 등의 혜택을 말한다. 즉, 노동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국가예산 비목중 ‘인민적 시책비’²⁹⁾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분배되는 몫이다. 북한은 이러한 국가적·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를 ‘평등의 원리’가 반영된 ‘공산주의적 시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표5〉 분배형태의 성격 비교

성격 구분	노동에 의한 분배	국가적·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
이념적 측면	사회주의 원칙	공산주의 시책
제도적 측면	근로자 생활보장의 주된 원천	인민의 기본생활 권리 보장
정책수단적 측면	물질적 자극 공간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 과시

다. 소비체제

북한은 소비를 재생산의 완성단계로 보고 있다.

소비는 엄밀한 의미에서 생산적 소비와 비생산적 소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산적 소비는 생산영역에서 이용되는 노동도구 및 노동대상의 감가상각/마모, 노동력의 소진 등을 의미한다. 비생산적 소비는 생산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수요 충족을 위한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말하는데 북한은 이를 ‘고유한 소비’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소비체제에서 말하는 ‘소비’의 개념은 주민들의 소비재 및 서비스 소비를 의미하는 ‘고유한 소비’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29) 원래 ‘사회문화시책비’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2001년부터 인민경제비에 포함되어 있던 ‘추가적 시책비’를 사회문화시책비로 이관하면서 ‘인민적 시책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기에서 ‘추가적 시책비’는 국가식량 가격편차보상금, 상품가격인하보상금, 학생옷 및 어린이옷 가격편차보상금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식량 및 아동의류 등을 생산자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생산자 손실분을 보전해 준다.

북한경제에서 (고유한) 소비는 세가지 측면에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생산물의 생산방향을 결정한다. 즉, 소비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켜 물자의 생산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소비는 사회적 경리와 개인간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연결고리이다. 즉, 국가 및 협동 단위(사회적 경리)는 소비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의 자격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은 소비품 및 서비스 수요자의 자격으로 (국영)시장에서 거래관계를 맺게 된다.

셋째, 소비는 노동력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한다. 즉, 근로자는 소비를 통해 노동과정에서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민소비와 수요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민소비

주민소비 영역:

주민소비영역은 주민들이 물질문화적 부와 봉사를 직접 이용하는 영역을 말한다. 이러한 주민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국영상점’ (소매상업기업소 및 사회급양망), ‘개인부업경리’ (농민시장),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일상적으로 복무하는 서비스 기업소’³⁰⁾ 등이다.

개인적 소비와 사회적 소비:

주민소비는 소비자금의 지출주체에 따라 개인적 소비와 사회적 소비로 구분된다.

개인적 소비는 개인의 지불능력에 기초하여 소비재와 서비스를 구매하

30) 각종 수리 및 가공, 염색, 세탁, 휴양·관광 등 물질적 및 비물질적 봉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소와 단체

거나 가정 및 개인부업경리에서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전체 주민소비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적 소비는 국가 및 협동단체 상업(국영상점) 및 농민시장에서 확보된 생산물의 소비,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자체소비, 개인부업경리로부터 수확한 생산물 소비, 주택이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사회적 소비는 '사회적 소비몫을 재원으로 국가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문화시책,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주민소비이다. 예를 들면, 교육, 보건, 정·휴양 시설이용, 학령전 어린이들의 국가 양육, 정·휴양소의 물자소비, 보건시설의 급양 및 약품 소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장적 소비와 비시장적 소비:

주민소비는 물자획득 경로에 따라 시장적 소비와 비시장적 소비로 구분된다. 시장적 소비는 국영시장(국영상점) 및 농민시장을 통해 소비재 및 서비스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형태로 주민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시장적 소비는 가정 및 개인부업경리로부터 직접 생산하거나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소비의 혜택을 통한 소비를 말한다.

소비에 대한 계획적 관리:

소비의 상당부분이 개인적 소비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비를 직접 계획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소득, 소매가격, 소비재 생산 규모, 사회적 소비몫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계획화하여 관리한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축적몫+소비몫)중 축적몫 비중을 조정하여 소비몫의 규모를 변화시키거나 주민들에게 무상 또는 특전에 의해 제공되는 몫을 조정하여 사회적 소비몫(국민소득 재분배)의 규모를 결정하고, 나아가 소매상품의 공급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한다.

2) 수요

개념:

북한은 수요를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생산과 이용을 통해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속성을 일반화한 사회경제적 범주'로 정의한다. 북한은 수요를 크게 '담보된 수요', '절대적 수요', '현실적 수요'로 구분한다. 담보된 수요는 주어진 생산력 및 가격하에서 소비자(주민)의 화폐수입 총액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수요를 말한다. 절대적 수요는 생산력 및 구매력 수준과 관계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생기는 수요로서 시장경제이론의 '잠재수요'와 유사한 개념이다. 현실적 수요는 생산력 발전에 상응하는 소비생활의 실현이 가능한 현물적 수요로서 담보된 수요와 절대적 수요의 중간에 해당한다. 즉, 현실적 수요는 생산력 수준은 고려하나 가격, 주민의 화폐수입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수요이다.

지불능력 있는 수요:

북한은 여러 수요의 개념중 주민소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담보된 수요'의 한 형태인 '지불능력 있는 수요'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불능력 있는 수요는 '담보된 수요' 중 실제 구매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수요로서 시장경제 이론의 유효수요의 개념과 유사하다.

주민소비는 지불능력이 있는 수요 밖에서 실현될 여지³¹⁾는 있으나, 경제전체로 볼 때 이러한 소비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부분 지불능력이 있는

31) 예컨대 사회적 소비물에 의한 소비, 농업근로자들의 자체소비, 가정 및 개인 부업경리의 자체 생산에 의한 소비 등과 같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주민들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수요가 뒷받침되어 (국영, 농민)시장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진다. 북한은 '지불능력 있는 수요'는 개별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³²⁾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시장경제이론의 '수요곡선', '가격탄력성'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그 특성을 설명한다.

'지불능력 있는 수요'는 그 충족정도에 따라 '실제적 수요' (시장의 구매력으로 나타나는 수요), '실현된 수요' (상품 및 서비스 구매로 실현된 수요), '충족되지 못한 수요' (상품의 부족이나 낮은 품질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로 세분된다. 북한은 '실현된 수요'를 반영하여 '소매상품유통고'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표는 주민들이 국영시장으로부터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³³⁾ 한편, '충족되지 못한 수요'의 경우 자체생산, 주민상호간 교환 등의 형태로 실현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배급체계의 붕괴로 인해 농민시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현상을 북한의 수요이론으로 보면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급증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축적체제

축적은 미래의 생산적·비생산적 소비를 위하여 남겨놓은 국민소득의 일정 몫을 말한다. 축적의 재원은 국가재정에 집중된 사회순소득(생산부문 근로자들이 사회를 위해 지출한 노동가치)중 사회적 소비몫을 제외한 자금이다. 북한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사회순소득만을 재원으로 축적하는 것을 '내부축적'이라고 부르며 국민소득중 축적 몫(식(13)의 S)을 25%, 소비 몫(식(13)의 E)을 75%로 책정한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서는 주민의 은행저축은 재생산 과정에서 벗어나 유희상

32) 시장거래 참여, 개인 소득지출 및 저축계획, 상품의 질과 가격 등

33) 기관, 기업소의 상품소비, 가정에서 자체생산에 의한 소비, 농민시장을 통한 소비 등은 불포함

태에 있는 자금(유휴화폐자금)으로 간주하여 축적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의 은행은 주민저축을 공장, 기업소에 대한 대부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은행대부는 원칙적으로 공장, 기업소의 자금수급 시차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족을 단기적(1년 이내)으로 융통해 주는 형태로서 재정자금의 흐름을 보충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축적은 생산적 축적(식 (5)의 M^a), 비생산적 축적(식 (5)의 M^b), 사회적 예비(식 (5)의 M^j)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생산적 축적은 생산확대를 위해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을 확충하는 것으로 공장, 기업소의 생산용 건물 및 기계설비의 확충, 원료, 자재, 노동력 확대(교육, 연수 등) 등을 위한 축적이다. 비생산적 축적은 비생산적인 고정자산을 확충하는 것으로 주택, 교육·문화·보건·과학·비생산적 공공부문 등의 시설건설을 위한 축적이다. 사회적 예비는 식량 및 자재 등의 비축을 말한다.

북한은 축적률(축적몫/국민소득)이 일정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제고되거나 생산부문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축적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노동생산성 제고 또는 생산부문 근로자수 증가→국민소득 증가→사회순소득 증가→축적 증가가 이루어진다.

3. 경제부문간 균형발전 개념

북한의 경제부문간 균형개념에는 생산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부문간 균형, 공업부문 내부균형, 농업부문 내부균형,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균형, 생산부문과 수송부문간 균형, 지역간 균형 등이 있다.³⁴⁾ 다음에서는 각 균형발전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4) 각 균형의 개념은 후술하겠으나 이들 균형개념중 생산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부문간 균형과 지역간 균형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균형 개념은 내용면에서 '불균형'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견 용어와 내용상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북한의 의도를 중요한 분야에 정책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모순은 아니다.

가. 생산수단 생산부문(I부류)과 소비재 생산부문(II부류)간 균형

1) I, II 부류 균형조건

북한은 전통적으로 경제의 생산부문을 생산수단 생산(I부류)과 소비재 생산(II부류)의 2대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I부류는 석탄, 광석, 금속, 기계설비 등 중공업부문을 일컫는다. I부류는 '생산수단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 생산부문' (제철, 제강, 공작기계 등 생산)과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 생산부문' (방직기계 등 생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문자 그대로 다른 기계를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부문을, 후자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부문을 말한다. 한편, II부류는 농업 및 경공업 부문으로서 주민 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을 말한다.

북한은 생산부문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 생산부문(I부류)과 소비재 생산부문(II부류) 사이에 교환되는 생산물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균형개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된 식 (10)의 각 부류 총생산물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 (10)에 포함된 $M_I^i = M_{II}^i = M_I^j = M_{II}^j = 0$ ³⁵⁾이라는 가정하에 각 부류의 총생산물식을 생산 및 지출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생산측면:

$$\text{I부류} : W_I = C_I + V_I + M_I^\alpha + M_I^\beta + M_I^V \quad (14)$$

$$\text{II부류} : W_{II} = C_{II} + V_{II} + M_{II}^\alpha + M_{II}^\beta + M_{II}^V \quad (15)$$

35) 여기에서 M_I^i, M_{II}^i 는 각 부류의 비생산적 축적몫, M_I^j, M_{II}^j 는 각 부류의 사회적 예비를 나타내고 있다.

지출측면:

$$\text{I부류} : W_I = C_I + C_{II} + M_I^\alpha + M_{II}^\alpha \quad (16)$$

$$\text{II부류} : W_{II} = V_I + V_{II} + M_I^V + M_{II}^V + M_I^\beta + M_{II}^\beta \quad (17)$$

식 (14) 및 식 (15)는 생산측면에서, 식 (16) 및 식 (17)은 지출측면에서 각 부류의 총생산물을 표현한 것이다. 위의 식에서 W_I, W_{II} 는 각 부류의 총생산물, C_I, C_{II} 는 각 부류의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 V_I, V_{II} 는 각 부류의 노동자가 자기를 위해 지출한 노동가치인 '생활비' (임금), $M_I^\alpha, M_{II}^\alpha$ 는 각 부류의 생산적 축적몫, M_I^β, M_{II}^β 는 각 부류의 축적과정에서 노동력의 추가 고용에 따른 근로자 생활비, M_I^V, M_{II}^V 는 각 부류의 재분배에 의한 소비몫을 나타낸다.

I부류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으로서 I부류에서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생산수단(C_I)은 물론이고 II부류에서 소모되는 생산수단(C_{II})과 I, II부류에서 각각 축적되는 생산수단(M_I^α 및 M_{II}^α)까지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식 (16)은 I부류에서 생산된 총생산물(W_I)은 경제내에서 수요되는 모든 생산수단의 가치($C_I + C_{II} + M_I^\alpha + M_{II}^\alpha$)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원리로 II부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으로서 자체적으로 소비되는 소비재(V_{II})³⁶⁾는 물론이고 I부류에서 소비되는 소비재(V_I), I, II부류의 축적과정에서 노동력의 추가 이용에 따른 소비재의 소비분(M_I^β 및 M_{II}^β), 재분배 과정을 거쳐 소비되는 소비재(M_I^V 및 M_{II}^V)까지도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식 (17)은 II부류에서 생산된 총생산물(W_{II})이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되는 소비재의 가치($V_I + V_{II} + M_I^V + M_{II}^V + M_I^\beta + M_{II}^\beta$)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 II부류간 균형은 I부류가 생산한 생산수단의 총가치가 경제 전체적

36) 노동자의 생활비가 소비재 구입에 지출된다고 보면 V 를 소비재의 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으로 수요되는 생산수단의 총가치(I부류+II부류 수요)와 일치해야 하고, II부류가 생산한 소비재의 가치가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되는 소비재의 총가치(I부류+II부류 수요)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형의 조건은 식 (14)와 식 (16) 또는 식 (15)와 식 (17)의 등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V_I + M_I^\beta + M_I^V = C_{II} + M_{II}^\alpha \quad (18)$$

식 (18)은 I부류가 II부류로부터 받는 소비재의 총가치와 II부류가 I부류로부터 받는 생산재의 총가치가 일치할 때 I,II부류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I부류가 II부류에 제공하는 생산수단의 총가치와 II부류가 I부류에 제공하는 소비재의 총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2) I, II부류간 균형개념과 북한의 전통적 경제정책의 연관성

I,II부류간 균형개념은 북한의 전통적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에서는 I,II부류간 균형개념이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발전, 확대재생산, 중공업우선정책 등 북한의 전통적 경제정책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발전 논리의 이론적 토대

I,II부류간 균형개념은 사회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경제부문간 균형발전 원리에 따른 것으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려면 경공업부문과 중공업부문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경제의 생산부문을 중공업부문을 의미하는 생산수단 생산부문(I부류)과 경공업부문을 의미하는 소비재 생산부문(II부류)으로 구분하여 양 부문간 생산물의 교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 경제가 어느 한 부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I,II부류간 균형개념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온 중공업 및 경공업의 균형발전 논리의 토대를 이룬다.

② 확대재생산 실현의 수단

확대재생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체제가 사회주의체제든 시장경제체제든 관계없이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확대재생산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경제이론체계에서 I,II부류간 균형은 경제의 확대재생산을 실현토록 하는 이론적 토대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이론체계에 기초하여 I,II부류간 균형조건과 확대재생산 조건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성립하면 후자가 항상 성립함으로써 I,II부류간 균형은 확대재생산의 충분조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관계를 북한의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엄밀히 논증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의에 의하면 확대재생산조건은 I부류(생산수단 생산부문)의 사회총생산물 가치가 경제전체(I부류 및 II부류)에서 소비되는 생산수단을 보상하는 가치 총액보다 더 클 때 성립한다고 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_I + V_I + M_I > C_I + C_{II} \quad (19)$$

식 (19)는 I부류는 경제전체(I부류+II부류)의 생산에 이용되는 생산수단(원자재, 기계 등)을 생산하므로 당기에 I부류에서 생산되는 생산수단이 I부류와 II부류에서 이용되는 생산수단보다 더 많으면 생산수단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축적된 생산수단이 차기의 생산에 추가로 투입되면 I부류와 II부류에서 모두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확대재생산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식 (19)에서 좌변($C_I + V_I + M_I$)은 경제전체의 생산수단의 총생산을, 우변($C_I + C_{II}$)은 생산수단의 총수요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좌변에서 우변을 뺀 값은 소모된 생산수단의 단순 보상($C_I + C_{II}$) 이상의 생산수단 축적, 즉 신규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 (19)는 신규투자가 0보다 클 때 확대재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자명한 논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식 (19)의 좌변에 포함되어 있는 I부류의 사회순소득(M_I)은 식 (10)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M_I = M_I^\alpha + M_I^\beta + M_I^v + M_I^i + M_I^j$ ³⁷⁾로 구성되어 있는 데 논의의 편의상 $M_I^i = M_I^j = 0$ 이라고 가정하여 $M_I = M_I^\alpha + M_I^\beta + M_I^v$ 를 식 (19)에 대입하고 양변에 있는 C_I 을 소거하면 확대재생산 조건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V_I + M_I^\alpha + M_I^\beta + M_I^v > C_{II} \quad (20)$$

이제 식 (20)의 확대재생산 조건과 식 (18)의 I,II부류간 균형조건을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논리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식 (18)의 양변에 M_I^α 를 더하여 정돈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도출된다.

$$V_I + M_I^\alpha + M_I^\beta + M_I^v = C_{II} + M_{II}^\alpha + M_I^\alpha > C_{II} \quad (21)$$

37) M_I^α 은 생산적 축적몫, M_I^β 는 축적과정에서 노동력의 추가 고용에 따른 근로자 생활비 지출, M_I^v 는 재분배에 의한 소비몫, M_I^i 는 비생산적 축적몫, M_I^j 는 사회적 예비를 나타낸다.

식 (21)에서 등식관계($V_I + M_I^\alpha + M_I^\beta + M_I^\gamma = C_{II} + M_{II}^\alpha + M_I^\alpha$)는 식 (18)의 양변에 M_I^α 을 더하여 정돈한 I, II부류간 균형조건이고, 부등식 부분($C_{II} + M_{II}^\alpha + M_I^\alpha > C_{II}$)은 자명한 부등식 관계를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식 (21)은 I, II부류간 균형조건이 성립(등식관계)하면 부등식 부분이 항상 성립함으로써 식 (20)의 확대재생산 조건은 항상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 (20)의 확대재생산 조건이 성립하다고 하더라도 식 (18)의 I, II부류간 균형조건이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I, II부류간 균형조건은 확대재생산 조건의 충분조건이 된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이론 체계에서 볼 때 I, II부류간 균형이 이루어지면 확대재생산은 자동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I, II부류간 균형을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고 실제 경제정책의 관심사는 I, II부류간 균형을 실현하는 데 집중된다.

③ 중공업우선정책과의 연관성

중공업우선정책이란 소비재보다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그리고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보다 생산수단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더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공업우선정책의 개념도 I, II부류의 맥락에서 양 부류의 축적속도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공업우선정책 개념은 I, II부류 사이의 축적 속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I, II부류간 균형은 양 부류 사이의 수지균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공업우선정책은 확대재생산 개념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중공업우선정책은 I, II부류간 균형 및 확대재생산 개념과 구분되는 경제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공업우선정책은 양 부류 사이의 축적속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I,II부류간 균형을 정태적 관점에서 양 부류간 생산물의 교환에 따른 수지균형 조건으로 규정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중공업우선정책을 동태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식 (10)에서 $M_I^i = M_I^j = M_{II}^i = M_{II}^j = 0$ 으로 가정하여 각 부류의 총생산물 식에 前期(t-1)로부터 물려받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當期(t)의 생산활동에 투입하여 당기에 창출되는 총생산물의 각 항에 시차를 부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W_I^t &= C_I^{tt} + V_I^{tt} + M_I^{\alpha t} + M_I^{\beta t} + M_I^{\psi} \\ W_{II}^t &= C_{II}^{tt} + V_{II}^{tt} + M_{II}^{\alpha t} + M_{II}^{\beta t} + M_{II}^{\psi} \end{aligned} \quad (22)$$

여기에서 C_I^{tt} , C_{II}^{tt} 은 각 부류에서 전기로부터 물려받아 당기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수단의 가치, V_I^{tt} , V_{II}^{tt} 은 각 부류 근로자가 전기로부터 물려받아 당기의 생산에 투입하는 노동중 자기를 위해 지출한 노동가치인 생활비³⁸⁾, $M_I^{\alpha t}$, $M_{II}^{\alpha t}$ 는 각 부류에서 당기중 새로 형성되는 생산적 축적, $M_I^{\beta t}$, $M_{II}^{\beta t}$ 는 각 부류에서 당기의 축적과정에서 추가적인 노동 고용에 따른 근로자 생활비, M_I^{ψ} , M_{II}^{ψ} 는 각 부류에서 재분배에 의해 당기중 새로 형성되는 소비품을 나타낸다. 식 (22)는 북한이 인식하는 시차를 고려한 각 부류 총생산물의 형성과정을 나타낸 것이다.³⁹⁾

식 (22)는 전기로부터 물려받은 생산수단(C_I^{tt} , C_{II}^{tt})과 노동을 당기에 투입하면 당기(t)에는 각 부류에서 자기를 위해 지출한 노동가치(V_I^{tt} , V_{II}^{tt})와 사회순소득(I부류 : $M_I^{\alpha t} + M_I^{\beta t} + M_I^{\psi}$, II부류 : $M_{II}^{\alpha t} + M_{II}^{\beta t} +$

38) 예를 들어 노동자가 전기로부터 8시간의 노동을 물려받아 4시간을 자기를 위하여 지출하고 4시간을 사회를 위하여 지출한다면 V^{tt} 은 4시간의 노동가치가 될 것이다.

39) 이와 같이 시차를 고려한 총생산물의 구성과 동태적 변동 과정은 후술하는 <참고2>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M_{II}^v)이 창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식 (22)는 당기중에 새롭게 축적 및 소비가 이루어지면 당기(t)말에 실현되는 생산수단 소모분의 보상(C_I^t, C_{II}^t)과 노동자가 자기를 위해 지출한 노동가치(V_I^t, V_{II}^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을 시사한다.

$$\begin{aligned} C_I^t &= C_I^{tt} + M_I^{\alpha t}, & V_I^t &= V_I^{tt} + M_I^{\beta t} \\ C_{II}^t &= C_{II}^{tt} + M_{II}^{\alpha t}, & V_{II}^t &= V_{II}^{tt} + M_{II}^{\beta t} \end{aligned} \quad (23)$$

식 (23)을 식 (2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당기말 각 부류의 총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당기의 변수로만 표시된다.

$$\begin{aligned} W_I^t &= C_I^t + V_I^t + M_I^v \\ W_{II}^t &= C_{II}^t + V_{II}^t + M_{II}^v \end{aligned} \quad (24)$$

식 (24)에 포함된 당기의 재분배에 의한 소비몫(M_I^v, M_{II}^v)은 당기중 소비되어 소멸되고 당기말에 보상된 생산수단(C_I^t, C_{II}^t)과 노동력은 차기로 이월되어 다시 생산과정에 투입된다. 이러한 재생산과정은 $t+2$ 기, $t+3$ 기, ...에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북한은 중공업우선정책의 개념을 “소비재보다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그리고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보다 생산수단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더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식으로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리명서(1991)가 「사회주의 재생산의 합리적 조직」(pp.57~58)에서 제시한 예(〈참고2〉 참조)를 분석해 볼 때 북한이 말하는 중공업우선정책의 수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기술적 구성비와 축적 구성비 조건의 충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적 구성비 조건〉

$$\textcircled{1} \frac{C_I^t}{V_I^t} > \frac{C_{II}^t}{V_{II}^t}, \quad \textcircled{2} \frac{C_I^t}{V_I^t} > \frac{C_I^{tI}}{V_I^{tI}}, \quad \frac{C_{II}^t}{V_{II}^t} > \frac{C_{II}^{tI}}{V_{II}^{tI}}$$

〈축적 구성비 조건〉

$$\textcircled{1} \frac{M_I^{\alpha t}}{M_I^{\beta t}} > \frac{M_{II}^{\alpha t}}{M_{II}^{\beta t}}, \quad \textcircled{2} \frac{M_I^{\alpha t}}{M_I^{\beta t}} > \frac{M_I^{\alpha tI}}{M_I^{\beta tI}}, \quad \frac{M_{II}^{\alpha t}}{M_{II}^{\beta t}} > \frac{M_{II}^{\alpha tI}}{M_{II}^{\beta tI}}$$

기술적 구성비 조건은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지출한 노동가치(V)에 대한 생산수단 보상(C)의 비율면에서 볼 때 모든 시점에서 I부류가 II부류보다 높아야 하고, 각 부류내에서 이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적 구성비 조건은 축적과정에 투입되는 노동력(M^β)에 대한 생산수단 축적(M^α)의 비율면에서 볼 때 모든 시점에서 I부류가 II부류보다 높아야 하고, 각 부류내에서 이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23)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적 구성비와 축적 구성비 조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즉, 장기간 지속적으로 축적 구성비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의 축적과정이 진행된다면 I부류의 축적이 II부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부류 내부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축적이 심화되어 최종적으로 기술적 구성비 조건이 자연스럽게 충족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공업우선정책은 축적 구성비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의 축적을 진행시켜 궁극적으로 기술적 구성비 조건의 충족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구성비 조건을 ‘노동장비율’의 개념으로 본다면 중공업우선정책은 I부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I부류의 노동장비율이 II부류보다 더 높아지도록 하고 아울러 각 부류내에서도 투자를 늘려 노동장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I,II부류간 균형조건과 중공업우선정책은 논리적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I,II부류간 균형조건만 고려하여 생산요소를 각 경제부문에 배분하더라도 항상 중공업우선정책의 ‘기술적 구성비’와 ‘축적 구성비’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중공업우선정책의 ‘기술적 구성비’와 ‘축적 구성비’ 조건만 고려하여 생산요소를 각 경제부문에 배분하더라도 항상 I,II부류간 균형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 포함관계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I,II부류간 균형조건과 중공업우선정책의 ‘기술적 구성비’ 및 ‘축적 구성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생산요소의 부문간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계획적으로 각 조건이 모두 충족되도록 잘 계산하여 각 경제부문에 생산요소를 배분하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생산요소의 배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참고2>는 리명서(1991)가 「사회주의 재생산의 합리적 조직」(pp.57~58)에서 제시한 예를 토대로 I,II부류간 균형조건과 중공업우선정책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참고2〉 I,II부류간 균형과 중공업우선정책의 동시 실행체계 예시

○ 기본 전제

- 잉여가치율(M/V)은 100% ⇔ M=V
- 매 기간중 중공업우선정책의 축적 구성비 조건을 충족

제1기

- 0기로부터 이월된 생산수단(C)과 노동력을 1기의 생산에 투입하여 1기에 형성되는 I,II부류 총생산물의 가치구성과 0기의 기술적 구성비(C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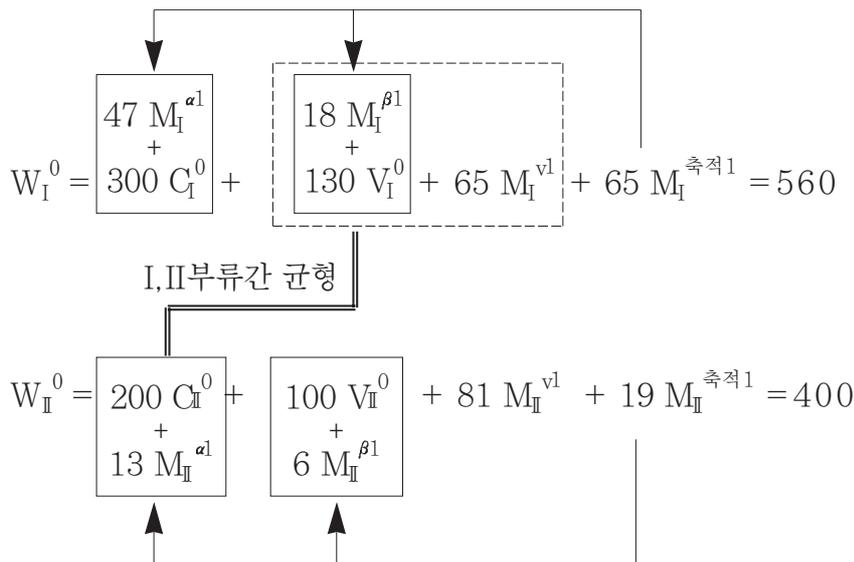
$$W_I^1 = 300 C_I^0 + 130 V_I^0 + 130 M_I^1 = 560 \dots\dots C_I^0 : V_I^0 = 69.8 : 30.2$$

$$W_{II}^1 = 200 C_{II}^0 + 100 V_{II}^0 + 100 M_{II}^1 = 400 \dots\dots C_{II}^0 : V_{II}^0 = 66.7 : 33.3$$

- 잉여가치율을 100%로 전제하였으므로 생산부문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지출한 노동가치(V)와 사회순소득(M)이 같은 크기를 가짐

- 중공업우선정책과 I,II부류간 균형

- 중공업우선정책에 의해 축적구성비가 I부류는 $M_I^{\alpha 1} : M_I^{\beta 1} = 72.3 : 27.7$, II부류는 $M_{II}^{\alpha 1} : M_{II}^{\beta 1} = 68.4 : 31.6$ 의 비율로 진행된다고 하면 I,II부류간 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축적, 소비, 분배의 재생산과정을 거친 후 1기말 I,II부류 총생산물의 가치구성 및 기술적 구성비

$$W_I^1 = 347 C_I^1 + 148 V_I^1 + 65 M_I^{v1} = 560 \dots\dots C_I^1 : V_I^1 = 70.1 : 29.9$$

$$W_{II}^1 = 213 C_{II}^1 + 106 V_{II}^1 + 81 M_{II}^{v1} = 400 \dots\dots C_{II}^1 : V_{II}^1 = 66.8 : 33.2$$

제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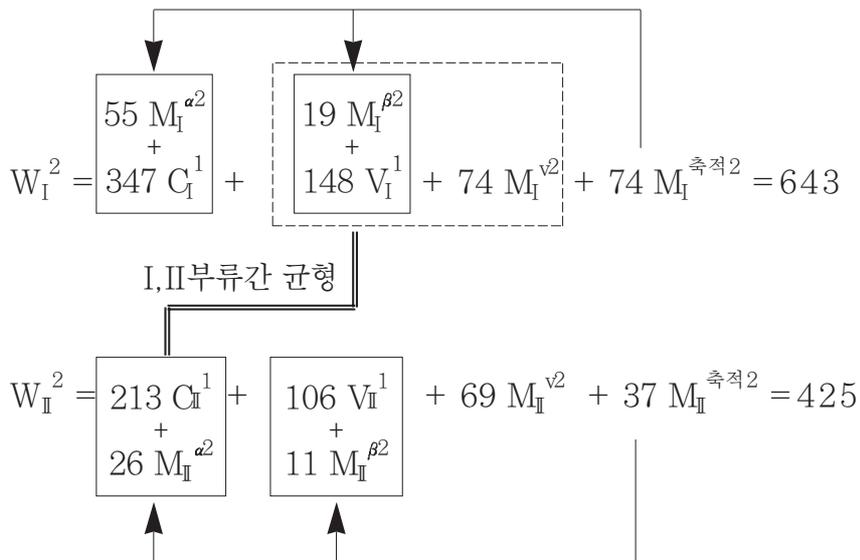
- 1기로부터 이월된 생산수단(C)과 노동력을 2기의 생산에 투입하여 2기에 형성되는 I,II부류 총생산물의 가치구성

$$W_I^2 = 347 C_I^1 + 148 V_I^1 + 148 M_I^2 = 643$$

$$W_{II}^2 = 213 C_{II}^1 + 106 V_{II}^1 + 106 M_{II}^2 = 425$$

- 중공업우선정책 및 I,II부류간 균형관계

— 중공업우선정책에 의해 축적구성비가 I부류는 $M_I^{\alpha 2} : M_I^{\beta 2} = 4.3 : 25.7$, II부류는 $M_{II}^{\alpha 2} : M_{II}^{\beta 2} = 0.3 : 29.7$ 의 비율로 이루어질 경우 I,II부류간 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축적, 소비, 분배의 재생산과정을 거친 후 2기말 I,II부류 총생산물의 가치 구성 및 기술적 구성비

$$W_I^2 = 402 C_I^1 + 167 V_I^1 + 74 M_I^{V1} = 643 \dots\dots C_I^2 : V_I^2 = 70.7 : 29.3$$

$$W_{II}^2 = 239 C_{II}^1 + 117 V_{II}^1 + 69 M_{II}^{V1} = 425 \dots\dots C_{II}^2 : V_{II}^2 = 67.1 : 32.9$$

제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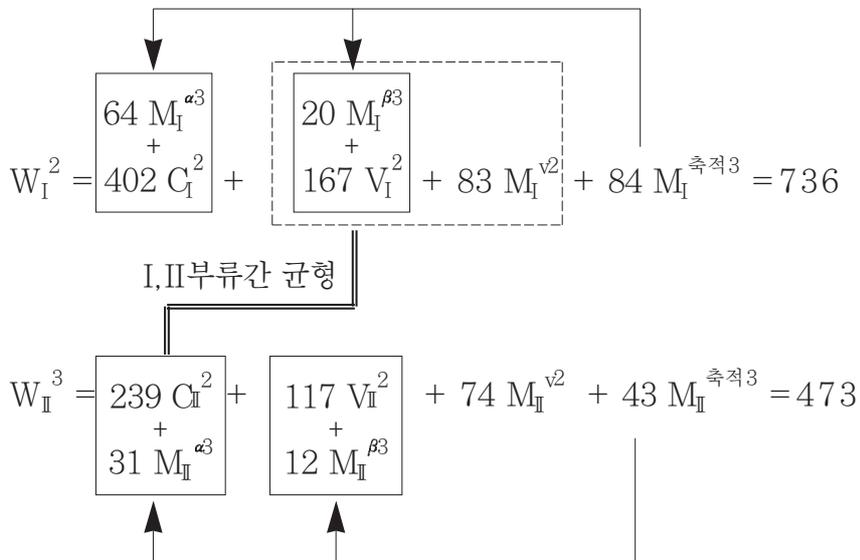
○ 2기로부터 이월된 생산수단(C)과 노동력을 3기의 생산에 투입하여 3기에 형성되는 I,II부류 총생산물의 가치구성

$$W_I^3 = 402 C_I^2 + 167 V_I^2 + 167 M_I^3 = 736$$

$$W_{II}^3 = 239 C_{II}^2 + 117 V_{II}^2 + 117 M_{II}^3 = 425$$

○ 중공업우선정책과 I,II부류간 균형

— 중공업우선정책에 의해 축적구성비가 I부류는 $M_I^{\alpha3} : M_I^{\beta3} = 6.2 : 23.8$, II부류는 $M_{II}^{\alpha3} : M_{II}^{\beta3} = 2.1 : 27.9$ 의 비율로 이루어질 경우 I,II부류간 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축적, 소비, 분배의 재생산과정을 거친 후 3기말 I,II부류 총생산물의 가치구성 및 기술적 구성비

$$W_I^3 = 466 C_I^3 + 187 V_I^3 + 83 M_I^3 = 736 \dots\dots C_I^3 : V_I^3 = 71.4 : 28.6$$

$$W_{II}^3 = 270 C_{II}^3 + 129 V_{II}^3 + 74 M_{II}^3 = 473 \dots\dots C_{II}^3 : V_{II}^3 = 67.7 : 32.3$$

중공업우선정책 조건 충족

- 위의 예시는 I,II부류간 균형조건과 중공업우선정책의 기술적 구성비 및 축적 구성비 조건을 모두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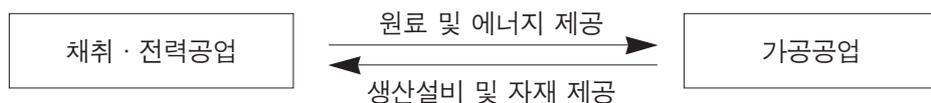
기간	기술적 구성비 (CV)			축적 구성비 (M ^a :M ^b)		
	I부류	비교	II부류	I부류	비교	II부류
제0기	69.8 : 30.2	>	66.7 : 33.3	
비교	^		^	—	—	—
제1기	70.1 : 29.9	>	66.8 : 33.2	72.3 : 27.7	>	68.4 : 31.6
비교	^		^	^		^
제2기	70.7 : 29.3	>	67.1 : 32.9	74.3 : 25.7	>	70.3 : 29.7
비교	^		^	^		^
제3기	71.4 : 28.6	>	67.7 : 32.3	76.2 : 23.8	>	72.1 : 27.9

나. 공업부문 내부균형발전

공업부문내 산업간 상호 연계성:

북한은 공업부문을 크게 채취, 전력, 가공공업으로 구분하고 이들 산업간 상호연계성을 통해 공업부문 내부균형의 개념을 설명한다. 채취공업은 석탄, 광업, 원유채굴 등 공업생산의 기초공정을 이루는 기초원료 및 연료 생산부문으로 가공공업 및 운수부문에 원료 및 연료를 공급한다. 전력공업은 발전 및 송배전계통으로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부문이다. 가공공업은 채취공업을 제외한 중공업분야(금속, 기계, 화학, 전자)와 경공업 분야를 포괄하는 부문으로 공정단계에 따라 1차가공공업(채취공업에서 생산된 기초원료를 이용하여 원부자재를 생산)과 재가공(2차)공업(1차가공제품을 다시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으로 분류된다.

채취 및 전력공업은 가공공업에 원료 및 에너지를 제공하고 가공공업은 채취 및 전력공업에 생산설비 및 자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생산적 연계성을 가진다.



내부균형:

공업부문 내부균형발전 개념은 공업부문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채취 및 전력공업을 가공공업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공업부문 내부균형 개념은 모든 공업부문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부문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기초가 되는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공공업 부문

보다 채취 및 전력공업 부문에 투자자금, 원자재(원료, 연료, 동력 등), 자원예비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부문간 지원의 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한다.

북한이 이러한 공업부문의 내부균형 개념을 채택한 것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폐쇄경제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북한도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공업부문의 최종목표는 가공공업 부문에서 완제품을 원활히 생산하는 데 있으나 이에 필요한 원료 및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채취공업 및 전력부문에서 원료 및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가공공업 부문의 생산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채취공업 및 전력산업의 생산확대를 위하여 채취공업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지질탐사사업 및 기술혁명 실현, 채취공업 관련 과학연구 개발 등을 도모하는 한편, 수력, 화력, 중유발전소의 적절한 배합과 대규모 발전소 및 중소규모 발전소의 건설을 병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 농업부문 내부균형발전

농업부문 내부균형발전 개념은 ‘곡물을 빠른 속도로 증산하면서 축산업, 과수업, 잠업, 야채 생산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主食에 대한 수요를 일차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여타 농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농업부문 내부균형도 농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곡물생산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 생산부문과 수송부문간 균형발전

생산부문과 수송부문간의 균형발전은 수송능력을 생산능력에 비해 우선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형발전 개념은 3대

수송(집중, 연대, 짐함(컨테이너)에 의한 수송⁴⁰⁾ 및 3화(化)수송(삭도(케이블), 컨베이어, 관(管)에 의한 수송)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주력 수송수단인 철도의 수송능력 제고를 위해 철도 전기화, 철로 보강, 차량생산 확충, 중량화, 고속도화, 하역의 자동화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균형발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균형발전 개념은 생산부문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늘리면서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서비스 부문 등)의 규모를 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북한은 생산부문의 우선적 성장을 위해 이 부문에 노동력을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비생산부문은 생산부문에서 창출된 물질적 부를 소비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노동력을 과다하게 배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 지역간 균형발전

북한의 지역간 균형발전 개념은 다음의 원칙하에서 공업기지를 지역간 안배하여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원료산지와 소비지를 근접 배치해야 한다. 공업기지를 원료, 연료산지와 제품의 소비지를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에 배치함으로써 수송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 집중수송은 화물열차를 통해 목적지까지 직수송하는 것을, 연대수송은 철도수송을 자동차, 선박 등 여타 수송수단과 연계시켜 수송하는 것을, 짐함수송은 화물을 컨테이너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도농간 생산력 격차 축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특성에 맞는 공업생산기지들을 배치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농간 생산력 격차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국방상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장, 기업소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분산배치하고 지방공장은 자체생산을 통해 전시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다.

넷째, 공해 억제를 고려하여 공장, 기업소를 분산배치 한다.

〈표6〉 북한의 경제부문간 균형발전 개념

구 분	개 념	주 요 내 용
생산수단 생산 부문 (I부류)과 소비재 생산 부문 (II부류)간 균형	I부류가 II부류에 공급하는 생산 수단 가치 = II부류가 I부류에 공급하는 소비재 가치	· I,II부류간 균형이 충족되면 확대재생산조건은 항상 충족됨
공업부문 내부균형	채취 및 전력공업을 가공공업보다 우선적으로 지원	· '자력갱생' 경제정책 반영 (원부자재 및 에너지의 자급능력 강화)
농업부문 내부균형	곡물을 빠른 속도로 증산하면서 축산업, 과수업, 잡업, 야채 생산도 증대	· 곡물생산 우선정책
생산부문과 수송부문 균형	수송능력을 생산능력에 비해 우선적으로 성장	· 집중, 연대, 집합(컨테이너)에 의한 3대수송방침 · 삭도(케이블), 컨베이어, 관(管)에 의한 3化수송방침 · 철도수송 능력 제고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균형	생산부문에 노동력을 더 많이 배치	·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생산부문 중심의 경제성장론 반영
지역간 균형	공업기지의 지역별 안배	· 수송비용 절감 ·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산시설 보호 등

4. 가격관리체계

가. 가격의 의의

북한은 가격이란 원래 주로 소비재(‘상품’)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생산수단(‘상품적 형태’)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는 모든 생산물을 ‘상품’이라고 하지 않고 소비재만을 상품이라고 한다. 반면 기계, 원부자재 등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 형태’라고 한다. ‘상품’과 ‘상품적 형태’는 편의상 소비재인가 또는 생산수단인가를 기준으로 구별하지만 보다 엄밀하게는 소유권의 변동 여부로 구별된다. 즉, 거래의 결과로 소유의 주체가 변경되는 물건은 ‘상품’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주민이 국영상점에서 구입한 신발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신발은 ‘상품’이며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반면 A라는 발전기 생산기업소가 B라는 시멘트 생산기업소에 발전기를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발전기의 소재지가 A기업소에서 B기업소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업소가 국유화되어 있고 발전기 역시 국가 소유이므로 소유 주체에는 변동이 없다. 이런 점에서 발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A기업소와 B기업소가 각기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B기업소는 A기업소에 발전기 값을 지불해야 하므로 ‘가격’을 부여해야 한다. 즉, 발전기는 ‘상품’은 아니지만 ‘가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상품’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품적 형태’라고 부른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북한에서는 모든 생산물(소비재, 생산수단)에 대해 가격을 부여한다.

북한은 가격체계를 운영하는 목적이 i)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 및 사회적 노동의 절약, ii) 기업소 수익 및 국가의 축적 증대, iii) 국민소득 분배 및 재분배를 통한 인민생활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가격체계는 국가가 가격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국정가격체계’라고 한다. 국정가격은 사회적 필요노동지출과 가격균형 보장 등의 원칙하에서 설정된다.

각 생산물의 국정가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을 토대로 산정된다. 여기에서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이란 생산물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말한다. 즉, 생산물의 가격은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치는 다시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의 크기로 규정되므로 결국 가격은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생산물의 가격을 정할 때 상품에 반영된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가격을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기초하여 정하지 않을 경우 각 생산물간 가격균형을 유지할 수 없고 사회주의적 분배를 옳게 할 수 없으며 생산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가격균형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반드시 사회적 필요노동지출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가격은 ‘가치법칙’ (사회주의 필요노동지출=상품가치=상품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⁴¹⁾에 근거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국가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소비품의 가격을 낮게, 사치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을 가격에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북한은 이러한 가격정책이 ‘상품의 가격을 가치로부터 능동적으로 유리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먹이고 입히며 다같이 잘살게 하려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1) 여기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이란 경제활동의 근본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는 경제법칙으로 ① 물질문화적 수요의 원만한 충족, ②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 ③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중공업 우선, 경공업 및 농업 병진, ④ 축적과 소비의 동시 성장, ⑤ 경제건설 및 국방건설의 병진 등을 말한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제10권, p.130

나. 가격의 종류와 구성체계

1) 가격의 종류

북한의 가격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 등으로 구분된다. 도매가격은 국영기업소들 사이에 생산수단을 거래하거나 소비품을 납품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소매가격은 원칙적으로 소비품에만 적용되며 여기에는 국정소매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국정소매가격은 국가가 국영상점 등에서 판매하는 각 소비품에 부과한 가격이고 농민시장가격은 농민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수매가격은 국가가 농업생산물 및 낚은 자재 등을 협동농장과 주민들로부터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 요금은 서비스 및 서비스성격의 설비 및 시설이용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으로 서비스요금과 사용료 등을 말한다. 운임은 수송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수송내용에 따라 여객수송운임 및 화물수송운임(보통화물운임, 화물요금, 특정운임 등)으로, 수송수단에 따라 철도운임, 자동차운임, 배운임, 비행기운임 등으로 구분된다.

2) 가격의 구성체계

앞에서 생산물의 가격은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을 토대로 산정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사회적 필요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의 보상적 측면에서 보면 가격은 원가, 사회순소득, 부가금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구성요소를 각 가격에 적용하면 도매가격은 원가와 사회순소득으로, 국정소매가격은 도매가격과 상업부가금으로, 운임 및 요금은 원가와 사회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가격의 각 구성요소의 의

미에 대해 살펴본다.

가격구성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원가이다. 생산물의 원가는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개별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물들과의 가격균형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원가는 생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료 및 기본자재비, 보조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생활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기타 화폐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가는 북한에서 공장, 기업소의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즉, 원가가 낮을수록 기업소의 경영효율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원가 절감 문제를 기업소의 중요한 과업중 하나로 부과하고 있으며 원가를 절감하여 사회순소득을 늘린 기업소에 대해서는 분배를 더 많이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격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사회순소득'은 생산부문 근로자들의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창출된 가치로서 이윤과 거래수입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총생산물식($WF + VM$)에 포함된 사회순소득(M)은 국가재정 재원을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러한 사회순소득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재정에 집중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순소득을 '이윤'과 '거래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가격에 반영한 후 '이윤'의 대부분을 '국가기업이익금'의 항목으로, '거래수입금'은 그대로 '거래수입금'의 항목으로 재정에 납부하도록 한다.⁴²⁾ 기업소 '이윤' 중 일부에

42) 국가기업이익금은 사회순소득의 분배형태라는 의미에서는 거래수입금과 공통성을 가지지만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조세성격 : 거래수입금은 생산물의 도매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간접세)의 성격으로 생산물이 실현되는 즉시 국가예산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기업이익금은 법인세(직접세)의 성격으로 기업소가 이윤의 일부를 자체수요에 충당되고 나머지 부분을 국가기업이익금과 지방유지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동원하기 때문에 기업소 이윤과 자체 충당규모에 따라 달라질

대해 기업소 내부유보를 인정하여 기업소기금, 상금기금, 공동축적기금, 문화후생기금 등으로 분배·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의 구성에는 또한 부가금이 포함된다. 부가금은 생산물의 유통에 지출되는 비용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가격의 구성요소로서 상업기업소에는 상업부가금이, 자재상사에는 자재공급부가금이 부가된다. 상업부가금은 상업기업소의 유통비와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기업소는 소비재를 생산기업소로부터 도매가격으로 인수하는데 여기에 도매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상업부가금을 첨가하여 주민들에게 소매가격으로 판매한다. 따라서 상업부가금은 상업기업소에 대해 유통비를 보상하고 이윤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독립채산제에 기초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격의 구성요소이다. 상업부가금은 상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더라도 '상업부가금 부과 1회성 원칙'에 의해 한번만 부과된다. 상업부가금은 유통단계에 따라 도매부가금과 소매부가금으로 구분된다. 상품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금은 모두 소매부가금이 된다. 반면 상품이 도매상을 거칠 때에는 상업부가금에 도매부가금과 소매부가금을 포함시켜 한번 부과하고 도매부가금 부분은 도매상업기업소 수입으로, 소매부가금 부분은 소매상업기업소 수입으로 배분된다. 상업부가금은 소비재 소매가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상업기업소 수입금의 원천이다. 자재공급부가금은 상업부가금과 내용상 동

수 있다.

부과대상 : 거래수입금은 국영기업소 및 생산협동조합 등 생산기업소에 부과되지만 국가기업이익금은 생산기업소는 물론 상업, 서비스기업소 등에 대해서도 부과하기 때문에 대상이 보다 넓다.

부과방식 : 거래수입금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100x(도매가격-기업소 가격)/도매가격'의 비율로, 국가기업이익금은 '국가기업이익금 계획+(초과이윤-(경영손실보상금+기업소기금+상금기금)-지방유지금납부액)'의 금액으로 부과된다.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pp.34~35, p.130 참조

일하지만 자재를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들이 생산기업소에 자재를 판매할 때 적용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도매가격=원가+이윤+거래수입금, 소매가격=원가+이윤+거래수입금+상업부가금, 운임 및 요금=원가+기업소 이윤+거래수입금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사회순소득=이윤+거래수입금, 기업소가격=원가+이윤, 상업부가금=상업기업소 유통비+상업기업소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표7〉 북한의 가격종류와 구성요소

가격종류	적용 대상	구성 요소
도매가격	국영기업소간 거래되는 생산수단 및 소비품	원가+사회순소득* * 이윤+거래수입금
소매가격	상업기업소가 주민에게 판매하는 소비품	도매가격+상업부가금* * 상업기업소의 유통비+이윤
수매가격	국가가 협동농장으로부터 매입하는 곡물 등	도매가격과 동일
요금	서비스 및 서비스성격의 설비 및 시설이용	''
운임	수송수단 이용	''

다. 가격정책

북한은 '가격의 일원화 원칙'을 가격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가격의 일원화 원칙은 동일제품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균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에 의한 가격결정 및 통제의 근거가 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은 중요 생산물의 가격을 직접 제정하고 하부단위에 가격제정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가격의 표준, 기준가격, 가격제정 방법 및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생산부문과 지역, 생산단위들이 마음대로 생산물의 가

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가격의 유일성’을 보장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에는 중앙가격제정기관(‘국가가격제정위원회’)과 지방가격제정기관(지방행정기관)이 있다. 중앙가격제정기관인 국가가격제정위원회는 가격제정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품의 소매가격 제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들 가격제정기관의 구체적인 가격제정 내용은 다음 <표8>에 정리된 바와 같다.

북한은 가격의 일원화원칙을 통해 대중소비품의 가격을 낮게, 사치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고루 먹이고 입히며 다같이 잘 살게 하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8> 북한 가격제정기관의 기능

구분	가격제정기관	가격제정 내용	가격통제
중앙	국가가격제정위원회	· 도매가격, 중요소비품의 소매가격, 농산물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 제정 · 일반 소비품 소매가격의 표준, 기준가격, 가격제정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기업소의 자의적인 가격설정 행위를 통제
지방	지방행정기관(인민위원회 등)	· 중앙가격제정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 및 지방공업공장의 소비품 소매가격 제정	

북한은 가격의 일원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격편차금보상금제도’를 운영한다. 가격편차금보상금제도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으로부터 ‘가격편차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편차보상금은 기업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경우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로 구분된다. 기업소 경영활동 관련 가격편차보상금은 도매가격(원

가+이윤+거래수입금)이 기업소가격(원가+이윤)보다 낮은 경우에 지급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가격편차보상금은 국가식량가격편차보상금, 주민용 석탄공급가격편차보상금, 상품가격편차보상금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양정기업소가 1kg당 80전에 수매한 양곡을 8전에 판매할 경우 국가식량가격편차보상금이 지급되고 주민연료용 석탄에 대해서는 석탄가격편차보상금이, 유치원 및 탁아소 등에 공급하는 기름, 어린이 식료품, 과일, 통조림, 학생옷, 어린이 상품 등에 대해서는 상품가격편차보상금이 지급된다.

북한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품가격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상품가격지수는 비교시점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파쎈(Paasche)

식을 이용하여
$$\frac{\sum_i P_{i1} Q_{i1}}{\sum_i P_{i0} Q_{i1}}$$
 로 계산되는데 이를 다시 품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정리하면 상품가격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⁴³⁾

$$I = \frac{\sum_i w_{i1}}{\sum_i \frac{P_{i0}}{P_{i1}} w_{i1}}, \quad w_{i1} = \frac{P_{i1} Q_{i1}}{\sum_k P_{k0} Q_{k1}}, \quad i, k = 1, \dots, n$$

여기에서 I는 상품가격지수, P_{i0} 는 i품목의 기준시점 가격, P_{i1} 는 i품목의 비교시점 가격, Q_{i1} 는 i품목의 비교시점 상품유통량, w_{i1} 는 i품목의 비교시점의 가중치($\sum_i w_{i1} = 1$)를 나타낸다. 이 상품가격지수는 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볼 때 비교시점의 가격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물가가 오른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물가가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품가격지수 자체에만 국한할 때 시장경제체제의 물가지수와 별다른 차이가

43) 남한은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산식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파쎈 산식은 비교시점의 품목별 가격변동을 평균할 때 비교시점의 가중치($p_i q_i / \sum p_i q_i$)를 적용하지만 라스파이레스 산식은 기준시점의 가중치($p_0 q_0 / \sum p_0 q_0$)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가가 가격을 제정하고 있어 가격조정이 단행되지 않으면 상품가격지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상품가격지수는 별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북한은 상품가격지수를 당국의 경제정책 성과를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데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면, 국가가 상품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상품가격지수의 하락을 들어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5. 재정체계

가. 북한재정의 특징

북한에서 재정은 경제의 재생산체계를 작동시키는 자금의 주된 원천이다. 즉, 경제의 재생산체계를 형성하는 생산, 분배, 소비, 축적과정이 국가의 재정활동에 의해 진행된다. 북한에서 재정의 역할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생산, 분배, 소비, 축적 등의 경제활동이 국가계획과 맞물려 작동되어야 하는데 모든 경제활동의 이면에는 자금수급이 수반되므로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가 재정에서 공급하고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국가계획을 실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재정중심의 자금공급체계를 ‘유일적 자금공급체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1976년) 이전의 복잡하고도 분산적인 자금공급제도 대신에 기본건설자금, 유동자금을 비롯한 모든 자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중앙은행을 통하여 유일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로서 계획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국가가 재정계획에 엄격히 의거하여 책임적으로, 유일적으로 전액 보장하는 것”이다.⁴⁴⁾

44) 리원경(1986), p.228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재생산체계에서 국가재정이 가지는 의의는 시장경제체제와 명확하게 대비된다. 즉,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제의 재생산체계를 작동시키는 주된 자금의 공급원은 금융이며 재정은 금융을 보완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또한 생산, 분배, 소비, 축적이 국가계획과 무관하게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수급도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국가가 경제내의 자금흐름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기관, 기업소에서 창출되는 사회순소득(이윤+거래수입금)으로부터 충당되며 주민에 대한 세금은 없다.⁴⁵⁾ 재정지출은 사회보장재원뿐만 아니라 건설자금 및 기업소 경영자금 지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편성은 내각에서 하고 최고인민회의가 심의·확정한다. 내각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먼저 재정성이 국가계획위원회와 가격제정위원회 등 연관기구의 협조를 받아 예산작성 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매년 3/4분기 초에 해당기관에 시달하면, 각 기관은 예산을 포함한 재정계획서를 재정성에 제출하고 재정성은 이에 기초하여 재정계획안을 작성한 후 이를 익년 3월말 또는 4월초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최고인민회의는 전년도 예산을 심의·승인하고 당해연도 예산지출 규모 및 내역, 중앙 예산 및 지방 예산⁴⁶⁾ 규모 등을 심의·확정한다. 내각은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연간 및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인민위원회의 예산집행을 지도한다.

45) 1975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1974년도 실적으로 세금제도의 완전폐지를 내세운 바 있으며, 1974년 이후 북한의 재정수입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6) 북한의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된다.

나. 재정수입 및 지출 항목

북한의 재정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고정자산 감가상각금’, ‘협동단체이익금’, ‘사회보험료 수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북한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앞에서 북한의 가격체계를 언급하면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사회총생산물식($W=C+V+M$)에서 생산부문 근로자가 사회를 위하여 지출한 노동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순소득(M)을 가격에 반영하여 국가재정에 집중시키기 위한 재정수입 항목이다. 즉, 거래수입금은 생산물의 도매가격에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으로 전통적으로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1년 기준 43.2%)이 가장 높고, 국가기업이익금은 기업소 이윤에 부과되는 직접세 성격으로 전통적으로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1년 기준 32.9%)이 거래수입금 다음으로 높다. 고정자산 감가상각금은 기업소에 부과하는 기계설비 등의 고정자산 사용료이다. 협동단체이익금은 협동단체(생산, 편의, 수산협동조합)의 판매수입에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납부금이다. 사회보험료 수입은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험료 수입이다.⁴⁷⁾

북한의 재정지출은 ‘인민경제비’, ‘인민적 시책비’, ‘군사비’, ‘국가관리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된다. 인민경제비는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비목으로서 경제전반의 생산·운영·투자를 위한 재정지출 항목이다. 인민경제비는 세부적으로 ‘기본건설자금’, ‘인민경제사업비’, ‘大보수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건설자금은 고정자산(건물 및 설비)의 확대를 위한 예산지출, 인민경제사업비는 공업, 농업,

47) 근로자들은 수입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

과학기술, 도시경영 사업비 등 예산지출, 大보수자금은 고정자산의 복구·개선을 위한 예산지출을 말한다. 인민적 시책비는 추가적 시책(배급제 등), 교육, 문화, 보건, 과학, 체육,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다. 인민적 시책비는 원래 ‘사회문화시책비’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2001년부터 인민경제비에 포함되어 있던 배급제 운영자금 등을 사회문화시책비에 포함시켜 ‘인민적 시책비’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비는 군사력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목, 국가관리비는 국가관리기구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의 비목이다.

〈표9〉 북한의 재정수입·지출항목 구성

재정지출		재정수입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인민경제비	경제전반의 생산·운영·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지출	거래수입금	생산물의 도매가격에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
인민적 시책비 ¹⁾	추가적 시책(배급 등), 교육, 문화, 보건, 과학, 체육,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자금지출	국가기업 이익금	기업소 이윤에 부과되는 직접세 성격
		고정자산 감가상각금	고정자산 사용료 성격
		협동단체 이익금	생산, 편의, 수산협동조합의 판매수입에 일정비율로 부과
군사비 국가	군사력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지출	사회보험료 수입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생활보장 보험료(근로자 수입의 1%)
관리비	국가관리기구 유지비 지출	국유재산 판매 및 기타수입	입장료, 봉사료 수입 등

주: 1) 2000년 이전까지 ‘사회문화시책비’로 표시

〈표10〉 인민경제비 구성 내역

구분	성 격	세부내역
기본건설 투자	생산적·비생산적 고정자산의 확대를 위한 자금	건설조립작업비, 생산준비비, 설비비
유동자금 공급	유동자금의 추가적 수요와 새로 조업하는 기관, 기업소들에서의 유동자금 수요	
인민경제 사업비	제품의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고 기본건설자금, 유동자금, 경비예산자금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인민경제 자금	공업사업비, 농업사업비,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국토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유지보수비
대보수자금 공급	기계설비, 건물, 구축물과 같은 고정자산을 복구 및 개선을 위한 자금	

다. 재정통제

북한은 재정통제를 통해 생산물의 계획적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절약 및 효과적 이용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통제는 ‘화폐적 공간을 통한 국가적 통제의 한 형태’로서 재정·은행기관과 기관, 기업소 재정관리부서의 정상적인 사업과정과 재정검열을 통하여 실현된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재정통제란 재정, 은행기관들과 재정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기업소의 재정부기 부서들이 자금의 공급과 지출, 국가예산수입의 수납, 이윤분배 등 재정관련 업무를 국가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재정검열은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검열을 통해 재정자금의 방만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북한의 재정규모

북한에서 재정자금이 기관, 기업소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들

의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결국 북한경제 전반의 생산에 심각한 애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남한에서 기업에 대해 금융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예산 규모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5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구조적인 변화를 보였다. 1995년 북한의 재정지출 총액은 242억(북한)원으로 1994년의 414억(북한)원에 비해 41.5%가 감소한 규모인데 그 때 줄어든 재정규모가 이후 2002년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1995년의 북한 재정규모 감소는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여 충분한 재정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1995년 재정규모 축소로 기관, 기업소에 대한 ‘인민경제비’ 지원 등이 대폭 감소하게 되어 북한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⁴⁸⁾

〈표11〉 북한의 재정지출 추이

	(10억북한원)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입	39.6	40.6	41.6	24.3	20.3	19.7	19.8	19.8	20.9	21.6	22.1
지출	39.3	40.2	41.4	24.2	20.6	..	20.0	20.0	20.9	21.7	22.1
인민경제비	26.7	27.4	12.4	8.4	9.2	9.2
(비중 ¹⁾ , %)	(67.9)	(68.2)	(..)	(..)	(60.2)	(..)	(..)	(..)	(40.1)	(42.4)	(41.6)
인민적시책비 ²⁾	6.7	6.9	5.0	8.0	8.3	8.6
국방비	4.3	4.5	3.0	3.0	3.1	3.2
일반행정비	0.6	0.5	0.2	1.1	1.2
기타	1.0	0.9	—

주 : 1) 세출총액 대비 인민경제비에 대한 지출의 비중

2) 2000년까지는 ‘사회문화시책비’로 표시

자료: 통일원(1996), IMF(1997), 노동신문(2001.4.6) 등

48)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V장에서 후술한다.

6. 금융체계

북한의 금융체계는 단일은행제도(Monobank System)로 요약할 수 있다.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고유업무와 국가자금 공급 및 수납업무, 그리고 대부, 저금, 보험 등 각종 상업금융기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북한의 단일은행제도는 두 차례의 은행제도 개편을 거쳐 정착된 것이다.

가. 북한은행제도의 변천

북한의 은행제도 변천 과정을 보면, 1946~1964년중에는 단일은행제도를, 1964~1976년중에는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를 채택하였다가 1976년부터 다시 단일은행제도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1946.10월 ‘북조선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발권, 통화조절, 대내외결제업무, 대부, 저금, 보험, 국고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단일은행제도를 구축하였다. 이후 1950년에 ‘건설자금은행’을 설립하여 기본건설자금 및 대보수자금의 공급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1959년에 ‘조선무역은행’을 설립하여 중앙은행이 담당하던 대외결제업무를 이관하는 등 은행제도를 부분적으로 변경하였다.

1964년 북한은 은행제도를 개편하였는데 ‘건설자금은행’을 중앙은행에 통합하여 국가자금 공급업무를 중앙은행이 전담하는 한편, 조선중앙은행의 업무중 대부, 저금, 보험 등과 같은 상업은행 업무를 새로 설립된 ‘산업은행’에 이관함으로써 중앙은행과 산업은행이 분리된 이른바 ‘이원적 은행제도’를 구축하였다. 1964년에 단행된 은행제도 개편 조치는 1963.11.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발표한 ‘은

행사업체계를 고칠데 대하여' 라는 논문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은행기관들이 국가자금을 방만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소에 대한 중앙은행 대출을 완전히 중지할 것과 기업소들로 하여금 부족한 자금은 '산업은행'의 대출로 충당하고 만일 제 때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일반 이자의 두배에 해당하는 벌칙성 이자를 부과할 것 등을 제기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은행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던 배경에는 당시 제1차 7개년계획이 진행중이었는데 기업소들의 자금사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단속하여 국가자금의 수요를 줄이고 이에 따른 여유자금을 건설 부문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76년 북한은 다시 은행제도를 개편하였는데 그 내용은 '산업은행'을 중앙은행에 통합하여 조선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 고유업무는 물론 상업은행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은행제도는 다시 단일은행제도로 환원되었으며 그 때 형성된 은행제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76년은 북한에서 6개년계획(1971~1976)⁴⁹⁾ 50)이 종료된 해로 사회주의 공업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다다른 시점으로

49) 6개년계획의 목표는 국방과 경제의 병진,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견고화, 산업설비의 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힘든 노동으로부터 노동자 해방 등이었다. 6개년계획도 제1차 7개년계획에 이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1971~75.8월중 공업총생산액 2.2배, 생산수단생산 2.3배, 소비재생산 2.1배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다.(통일부(1999), p. 300참조)

50) 이후에도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1978~84)과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을 추진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의 성장목표는 국민소득 1.9배, 공업총생산 2.2배, 생산수단생산 2.2배, 소비재생산 2.1배이었는데 국민소득을 제외한 다른 목표들은 모두 달성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경제 상황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국민소득 1.7배, 공업총생산 1.9배, 농업총생산 1.4배 등 성장목표를 이전보다 낮추어 책정하였지만 소련 및 동구권의 체제 붕괴 여파로 목표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1998년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1995~97년 기간은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북한경제 성장률(6.2% 성장)이 10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최근 들어 북한의 경제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 이후 북한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통일부(1999), p.300 참조)

평가되고 있다. 1976년 북한이 은행제도를 개편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그간의 경제력 발전에 힘입어 엄격한 단일은행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중앙은행을 경유하여 모든 자금이 공급되는 이른바 ‘유일적 자금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 북한 금융의 특징

북한의 금융제도 특징을 보면 남한의 금융제도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북한의 금융제도를 남한과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업자금의 성격이다. 남한에서는 기업자금이 주로 금융자금에 의해 공급되지만 북한에서는 재정자금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업부문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불문하고 자금수요가 가장 많은 부문인데 남한기업들은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직접, 간접)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하고 있지만 북한기업들은 국가재정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⁵¹⁾ 다만 북한 기업들도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기업자금의 성격 차이는 남북한 경제에서 금융의 역할을 달리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자금공급 측면에서 북한의 금융은 국가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남한에서처럼 국가경제를 가동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금융기관은 국가재정 자금을 수납하는 手足(organ)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소유개념이다. 남한은 중앙은행 및 국책은행을 제외

51) 남한기업들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원리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북한기업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한 대부분 상업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사적소유에 기초한 상업기업들이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국유화되어 있다.

셋째, 은행제도의 차이이다. 남한은 시장경제체제의 은행제도인 이원적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은행제도인 단일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원적은행제도란 중앙은행은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제도 운용 등 중앙은행 고유업무만을 담당하고 주민 및 기업들을 상대로 한 여수신업무, 보험업무 등은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제도이다. 반면, 단일은행제도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주민과 기업을 상대로 각종 상업금융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제도이다. 북한의 단일은행제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조선중앙은행')이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고유업무와 함께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저금, 보험을 수납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조선중앙은행의 규모는 매우 크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 지점은 전국에 16개가 설치되어 있어 인구 300만명당 1개이지만 조선중앙은행은 전국에 220여개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어 인구 10만명당 1개로 한국은행 지점수에 비해 30배정도 더 많다.

넷째, 가계대출 및 소비자금융의 존재여부이다. 남한에서는 가계자금대출, 가계당좌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가계대출 및 소비자금융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북한에서는 일반주민에 대한 은행대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의 금융제도는 남한과 유사한 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은행예금제도가 있고 예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고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기업자금 대출제도와 보험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다. 금융기관 종류와 기능

북한의 금융기관에는 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 부문별 전문은행, 황금의 삼각주은행, 협동조합신용부, 체신성(저금수취), 국제보험회사, 각종 합작은행, 각종 합작투자회사 등이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국가재정 사업 관련 업무와 함께 대내금융업무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조선무역은행 및 부문별 전문은행은 대외금융업무를, 황금의 삼각주은행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금융업무를, 협동농장신용부는 농촌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라. 은행업무

북한의 은행업무는 국가예산 관련 업무, 여수신업무, 보험업무, 대외금융업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대내금융업무는 조선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외금융업무는 조선무역은행이 담당하는데 다음에서 각 은행업무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국가예산 관련 업무:

조선중앙은행은 국가예산의 유일한 출납기구로서 국가예산 규정에 따라 예산수입금을 받아들이고 예산자금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계산과 결산을 한다. 국가예산 출납과정에서 조선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들로 하여금 국가예산납부의무⁵²⁾를 준수하고 예산을 계획에 의거하여 정확히 집행하도록 재정통제를 실시한다.

조선중앙은행은 국가예산체계에 의거하여 중앙, 도, 시, 군별 예산자금

52)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고정자산 감가상각금, 협동농장 납부금, 사회보험료, 국유재산 판매 및 기타수입 등

을 구분하고 각 예산자금에 대해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계정을 관리한다. 수입과 지출계정을 분리하는 이유는 수입, 지출예산의 집행형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 국가예산은 관, 항, 목으로 분류되어 편성되는데 은행도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예산수입 및 지출을 기장한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초부터 누계로 계상한다. 조선중앙은행의 국가예산수입지출에 대한 연간결산 결과는 국가전체의 예산집행을 결산하는 기초로 활용된다. 조선중앙은행은 결산 후 남은 수입초과액을 예산별로 적립금계정⁵³⁾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⁵⁴⁾

여수신업무:

조선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 예금계좌에 있는 유희자금과 주민저금을 대부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관, 기업소 예금제도 및 주민저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⁵⁵⁾

i) 기관, 기업소 예금제도

북한에서 각 기관, 기업소는 의무적으로 하나의 은행기관에 하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여유자금을 계좌로 집중시켜야 하며 모든 자금거래는

53) 예산별 적립금계정은 재정예비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54) 재정적자가 나타나는 경우인 '지출초과액'의 처리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재정적자는 자본주의하에서만 생겨나는 것일 뿐 사회주의 재정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금융사전에 따르면, "사회주의 재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과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공고한 재정으로서 언제나 재정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재정적자, 예산적자란 있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p.1090)

55)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은행예치금에 대해서는 '저금' 과 '예금' 이란 용어가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저금'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 기업의 은행예치금에 대해서는 '예금' 이란 용어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기관, 기업소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자금 거래 즉 생산물 판매수입, 원료 및 자재대금의 지불, 노동보수 및 요금의 지불, 국가예산 결제, 은행과의 대부금거래 등은 은행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관, 기업소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화폐자금은 은행의 대부자원으로 활용된다. 북한에서 기관, 기업소의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은행의 대부자원으로 이용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개별 기관, 기업소 예금계좌의 잔고는 생산물판매수입이나 자금공급(국가재정자금공급) 등으로 자금이 입금되면 증가하고 근로자의 생활비(월급) 지급, 물자대금지불, 국가예산납부, 대부금반환 등으로 자금이 인출되면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변동하지만 경제전체로 보면 자금 입출금의 시차로 인해 일정한 화폐자금이 예금계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은행의 대부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소유기업소의 예금계좌자금은 소유적 관점에서 보면 '전인민적 소유'로 협동적 소유(협동농장 등)나 주민들의 저금과 달리 불반환적 성격의 자금(상환하지 않는 자금)이지만 이러한 자금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은행대부는 반환적 성격(상환해야 하는 자금)을 띠게 되는데, 이는 국가소유기업소들이 경리운영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어 대부를 받는 기업소 입장에서 보면 다른 기업소의 생산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조선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 예금계좌의 여유자금을 대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기관, 기업소의 예금계좌의 자금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ii) 주민저금제도

북한주민들은 직장에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주민저금제도는 이러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저금으로 흡수하여 현금유통체계를 안정시키고 은행의 대부자원을 증대시켜 경제건설 및 인민생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북한은 설명한다.

북한에서 주민저금은 사회주의 화폐금융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민들이 은행저금을 기피할 경우 현금이 중앙은행으로 회수되지 않고 민간에 지속적으로 침전됨으로써 암시장의 확산, 현금유통체계의 이완, 대부자원의 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정상적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저금증대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저금종류는 보통저금, 추첨제저금, 준비저금, 저금권저금 등으로 구분된다. 보통저금은 수시로 입금하고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저금으로서 금액과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저금에는 이자가 3%정도 지급된다. 보통저금은 남한의 보통예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첨제저금도 수시로 입금하고 필요할 때 인출하는 것은 보통예금과 같지만 분기에 한번씩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지급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추첨제저금은 복권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에게 저금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저금에 복권의 특성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준비저금은 기한을 정하여 한번 또는 여러번 입금하고 기한이 되면 인출하는 저금이다. 준비저금은 남한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형태로서 보통저금보다 다소 높은 3.6%의 이자를 지급한다. 저금권저금은 저금액에 해당하는 저금권을 발급해주고 이것을 제시하면 지급하는 저금이다. 저금권저금은 보통예금과 같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통저금, 저금권저금, 추첨제저금 등은 단기성예금, 준비저금은 장기성예금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저금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해 자원성, 봉사성, 계획성, 비밀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원성 원칙은 모든 근로자들이 저금사업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 봉사성 원칙은 저금의 입출금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계획성 원칙은 주민의 월급 및 구매자금 등에 대한 저금사업을 계획화해야 한다는 것, 비밀성 원칙은 개인저금에 대한 비밀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⁵⁶⁾ 북한이 이러한 저금사업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민저금은 기관, 기업소의 은행예금과 달리 동원이 용이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즉, 기관, 기업소들은 화폐자금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집중시켜야 하므로 계좌에 남아있는 유희자금은 은행이 곧바로 대부자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저금은 주민들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는 한 대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민저금을 동원하기 위해 전국에 은행 및 체신기관 저금망을 갖추고 있다. 은행저금망인 중앙은행 시군 지점, 전국의 수천개 저금소 및 저금대리소와 체신저금망인 전국의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 등을 활용하여 주민저금을 유치하고 있다.

여신업무:

조선중앙은행은 기관·기업소 예금자금, 주민저금,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기관·기업소에 대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자금공급체계하에서 기관, 기업소⁵⁷⁾는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

56) 북한주민들 사이에 은행저금 기피성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금사업의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57) 북한에서 기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금보장 형태는 자금공급, 대부, 기업소자체보장 등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은행대부는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자금공급은 기관, 기업소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는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적 자금수요를 충당해주는 형태로서 반환과 이자지불이 필요하다. 북한은 은행대부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시기의 대부는...농민들과 영세수공업자들을 비롯하여 소상공경영에 대한 국가의 방조(지원)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지금은 사회주의 경리에 대한 자금보장과 재정통제의 수단의 하나로 활용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p.398, pp.848~849 참조)

금(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인민경제사업비 등)을 원칙적으로 국가예산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추가적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대부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 기업소 입장에서 볼 때 상환의무가 없는 국가자금이 원리금 상환의무가 부과된 은행대부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대부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대상은 기관, 기업소에 국한되어 있으며 일반주민들은 은행대부를 받을 수 없다.⁵⁸⁾ 또한 기관, 기업소에 대한 대부도 계획성, 목적지향성, 반환성, 보장성 등 4원칙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계획성원칙’이란 대부자원의 동원 및 분배방향, 대부한도 등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목적지향성원칙’은 대부금을 지정된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 ‘반환성원칙’은 반드시 기한내에 반환해야 하는 것, ‘보장성원칙’은 은행대부는 반드시 담보(물자, 생산적 비용, 화폐재산 등)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기간은 단기대부(대부분 3~4개월)를 원칙⁵⁹⁾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의 형태는 크게 국영기업소대부, 협동단체대부, 기타대부로 구분된다. 국영기업소 대부는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들의 일시적인 유동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으로 국가자금보장의 보충적 형태이다. 국영기업소 대부에는 계획대부, 조절대부, 보충대부 등이 있다. 계획대부는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유동자금 보유기준에 의한 대부, 조절대부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자금수요에 대한 대부, 보

58) 그러나 협동농장원의 경우 협동농장신용부로부터 부업자금과 소비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59) 장기대부는 인삼재배 등 성장기간이 긴 농업생산비용 대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북한은 ‘고정자산의 확대와 재생산과 관련된 자금수요(기본건설자금)에 대하여 장기대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국영기업소들의 기본건설자금은 국가예산자금에서 공급되며 농촌건설도 국가투자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본건설자금의 대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1995, p.398, 400, 401, 405 참조)

총대부는 기업소의 경영오류로 발생한 부족자금에 대한 대부이다. 협동단체대부는 협동적 소유에 기초한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에 필요한 추가적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대부이다.⁶⁰⁾ 이외에 기타대부로 외화별 이자금대부, 부업경리자금대부 등이 있다.

은행대부에는 이자를 부과한다. 대부이자란 대부자금의 이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대부금을 계획적으로 받아 지정된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영활동을 합리화하여 대부금을 제 때 반환하도록 자극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대부이자율은 국가납부 및 물자대금지불과 관련된 연체료보다는 낮게, 저금이자율보다는 높게 부과하고 있다. 연체료보다 낮게 부과하는 이유는 기업소로 하여금 은행대부를 통해 지불의무를 제 때 이행하도록 하여 기업소 사이 또는 기업소와 국가재정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기업소와 은행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전환시켜 자금의 순환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저금이자율보다 높게 부과하는 것은 역마진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부이자란 대부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영을 잘못하여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징수하고 상환기간을 넘기면 벌칙성 이자인 ‘기한경과대부이자’(과태료 성격)를 징수한다.

북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만 대부를 해주기 위하여 대부대상별로 국가가 승인한 대부계획에 의해 대부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일단 설정된 대부한도는 법적, 지령적 성격을 띠게 된다. 대부한도 설정 절차는 ‘기관, 기업소가 매 분기마다 대부한도신청 문건을 중앙은행 지점(다른 은행 포함)에 제출→ 모든 중앙은행 지점(다른 은행 포함)은 대부계획을 세워 중앙은행 본점에 제출→ 중앙은행 본점은 종합대부계획을 수립→ 국가 승인후 중앙은행 본점은 각 지점(다른 은행 포함)에 대부

60) 협동단체기업소들에 대한 대부는 국가의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 이자율을 낮게 정한다. 예를 들면, 간석지 농사 및 뽕밭조성에 대한 대부금은 무이자로 공급된다.

한도를 하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마. 화폐제도

화폐제도 개요:

북한에서는 화폐를 '일반적 등가물로 이용되는 특수한 상품'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등가물'이란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의는 화폐의 기능중 가치척도 및 유통수단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¹⁾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개념과 정의는 그 자체에만 국한하여 생각할 때 시장경제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화폐제도는 마르크스주의를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화폐제도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한 해석과 운용방식에서는 시장경제체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화폐에 대한 기본인식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가 '자본'⁶²⁾으로 轉化되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의 착취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도구라는 주장이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상품화폐관계'가 남아있어 화폐를 사용하고 있지만⁶³⁾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화폐관계'란 '자본'의 순환공식 $G-W \cdots P \cdots W - G'$ (화폐-상품...생산과정...상품-화폐)에 의한 세단계의 자본의 순환관계를 말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유통단계($G-W$)에서는 '화

61) 북한은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화폐가 저축수단, 지불수단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62) 북한에서는 '자본'을 '임금노동자를 착취하여 잉여가치를 얻는데 이용되는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63) 김정일(1990),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p.182.

폐자본'이 생산수단(기계, 원자재 등)과 노동력으로 轉化되고, 두 번째 단계(P)에서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자본주의적 재생산을 통해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세 번째 단계인 유통단계(W'-G')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창조된 잉여가치가 화폐형태로 실현되어 자본가가 생산단계에서 노동력에 의해 창출된 잉여가치를 착취한다는 일련의 자본순환과정을 의미한다.⁶⁴⁾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자본의 순환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나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가 노동자에게 환원되며 이에 따라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화폐에 대한 기본인식은 화폐유통체계에 반영되어 있다. 즉, 북한에서는 '현금'은 주민들의 소비품거래에만 국한되어 사용되고 기관, 기업소의 생산수단 거래에는 현금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은행을 통해 '무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수단의 '무현금' 거래원칙은 상품화폐관계가 엄존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화폐'가 이른바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채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폐유통체계:

북한의 화폐유통체계는 크게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구분되는데, 현금유통은 소매상품유통 및 서비스거래와 결부되어 있고 무현금유통은 주로 생산수단의 유통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화폐유통체계로 인해 현금(은행권)은 주민들이 소비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간 생산수단의 거래에 따른 대금수수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은행계좌를 통한 결제로만 가능하다. 생산수단에 대해 '무현금유통'을 견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은행으로 하여금 기관, 기업소의 화폐거래를 재

64)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pp.874~875 참조

정적으로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수단의 사적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당국의 화폐유통체계에 대한 통제력은 ‘무현금유통’에 관한 한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유통’을 완벽히 통제하는 데에는 북한당국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현금은 대부분 북한주민의 직장월급으로 공급되는데 만일 북한주민들이 국영상점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남은 유희화폐를 은행에 예치한다면 공급된 현금이 고스란히 중앙은행으로 회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국영상점 대신 농민시장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보관할 경우 민간에 화폐침전 현상(monetary overhang)이 나타남으로써 현금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화폐침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저금과 보험증대 사업을 전군중적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금과 보험만으로 현금의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화폐교환조치’라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화폐교환조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47.12월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일제의 ‘조선은행권’을 폐지하고 북한의 ‘북조선중앙은행권’을 발행하였다. 당시 교환비율은 구권과 신권간 1:1로 하였으며 신규 은행권(100원, 10원, 5원, 1원)을 발행하고 1949.5월 소액은행권(15전, 20전, 50전)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후 북한은 화폐교환조치를 세 차례 실시한 바 있다. 1차 화폐교환조치는 1959.2월에 단행되었다. 당시 ‘북조선 중앙은행’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으로 개칭하고 구권(북조선 중앙은행권)과 신권(조선중앙은행권)간 교환비율을 100:1로 조정하면서 생활비(월급), 상품가격, 서비스요금, 채권, 채무 등의 모든 액면가를 100:1로 재평가하였다. 이 때 은행권(100원, 50원, 10원, 5원, 1원, 50전)과 주화(10전, 5전, 1전)를 신규로 발행했다. 제1차 화폐교환조치시 화폐의 교환한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2차 화폐교환조치는 1979.4월에 단행되었다. 당시 화폐교환 비율은 1:1로 하고 교환한도는 없었다. 제2차 화폐교환조치시 은행권(100원, 50원, 10원, 5원, 1원)과 50전 주화는 신규 발행하였으나 주화(10전, 5전, 1전)는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3차 화폐교환조치는 1992.7월에 단행되었다. 교환비율은 1:1, 교환한도는 1,000원(기준이 1인당인지 가구당인지 불분명)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에 예치토록 조치하였다. 당시 북한은 신규 은행권(100원, 50원, 10원, 5원, 1원)을 발행한 바 있다.

통화조절:

북한에서 ‘통화’는 현금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예금’은 통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 기업소의 계좌에 남아있는 유휴화폐자금과 주민저금은 북한에서 통화가 아니다.⁶⁵⁾

북한에서는 통화조절의 목표가 화폐의 구매력을 유지하며 원활한 화폐유통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은행은 북한의 통화조절사업의 중심에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현금계획과 재정계획에 의거하여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에 따른 화폐의 수급을 조절하는데, 이중 무현금유통 부문은 인민경제계획에 따른 재정계획에 의해 무현금 형태로 자금의 출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완전한 통제관리가 가능하지만 현금유통 부문은 주민들의 소비와 저축 행태에 의존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업무는 ‘현금계획’에 의거하여 유통현금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서 ‘현금계획’은 북한 통화조절 메커니즘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65) 이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예금도 통화에 포함시키는 것과 크게 다른 부분이다.

재정금융사전(p.1265)에 따르면, '현금계획'은 중앙은행의 출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현금수입의 규모와 원천, 현금지출의 규모와 용도를 규정한 국가계획으로서 '유통현금'⁶⁶⁾의 회수 및 화폐의 추가발행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현금계획의 수입과 지출항목을 보면 수입항목에는 상품판매수입, 운수수입, 관람수입, 공공경리수입, 체신업무수입, 저금 및 보험수입, 편의봉사수입, 송금수입, 물품판매수입, 기타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항목에는 생활비자금지출, 상금자금지출, 장학금자금지출, 분배자금지출, 수매자금지출, 연금보조금지출, 여비지출, 소매상품구입자금지출, 저금 및 보험지출, 송금지출, 물품구입자금지출, 기타지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금계획의 수입과 지출항목은 중앙은행 출납에 직접 입금되거나 지출되는 현금만이 반영되며 농민시장에서 주민들 사이에 주고받는 현금은 반영되지 않는다. 현금계획은 분기별로 작성되어 집행되는데 그 작성과정을 보면, 매 분기 중앙은행 지점들이 기관, 기업소들의 현금계획 초안을 검토하여 시, 군의 현금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도총지점에 제출하면 도총지점은 도전체의 현금계획을 세워 중앙은행(본점)에 제출하고 중앙은행 본점은 인민경제계획과 재정계획의 각 지표들과 함께 분기현금계획을 세워 내각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 이를 각 지점에 다시 하달하여 집행한다.

조선중앙은행의 통화조절사업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현금계획을 토대로 '필요화폐유통량'⁶⁷⁾과 '유통화폐량'을 일치시키는데 있다. 만일 '필요화

66) 주민, 기관, 기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총량을 말한다. 기관, 기업소는 유후자금을 모두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의 생활비(임금) 지급 등을 위해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67) 필요화폐유통량은 '(상품가격총액-신용거래 및 상쇄하는 거래금액+지불기일이 된 금액)÷화폐유통속도'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 공식에 포함된 화폐유통속도(일정한 기간 액면이 같은 단위 화폐의 회전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화폐유통속도 대신 '화폐의 환류속도'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화폐의 환류속도는 일정기간 중앙은행 출납을 떠난 은행권이 은행에 얼마 만에 회수

폐유통량' 보다 '유통화폐량' 이 적을 경우 조선중앙은행은 추가적으로 은행권 발행대책을 세우며 반대로 '필요화폐유통량' 보다 '유통화폐량' 이 많을 경우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회수대책을 세운다. 조선중앙은행의 통화조절은 분기 현금계획을 토대로 일자별로 '현금 유통영역'⁶⁸⁾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화폐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市, 郡은행지점들의 현금지급 규모가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道 범위에서는 중앙은행 道총지점이, 전국 범위에서는 중앙은행 본점이 현금 지급 규모를 통제한다.⁶⁹⁾

되어 돌아오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일정 기간의 은행현금수입총액 ÷ 해당기간의 화폐평균발행고'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화폐의 환류속도는 전국적 범위의 화폐 회전속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화폐의 환류속도가 높아지면 늘어난 화폐수요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화폐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화폐의 환류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업 및 봉사 부문사업의 개선강화, 은행기관의 화폐유통에 대한 계획적 조절, 기관·기업소의 현금유통규율 엄수를 위한 통제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68) '현금의 유통영역'이란 주민, 기관, 기업소, 중앙은행 출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영역을 말한다.

69) 북한의 '통화조절'과 남한의 '통화정책'을 비교해 보면, 북한에서는 '통화조절'의 대상이 '현금'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예금통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통화조절' 대상은 남한의 '통화정책'에 비해 좁다. 또한 북한에서는 '현금계획'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금리, 물가 등 시장경제지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對금융기관 대출, 지급준비, 공개시장조작 등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본원통화량을 조절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IV.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해체

1.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내재적 모순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는 자체적인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순은 i)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중심의 계획경제체제, ii) 생산유기체 개념과 자력갱생 원칙의 충돌, iii) 금융의 왜소성에 기인한 자금배분의 비효율성, iv) 가격관리체계의 문제점, v) 독립채산제 운영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모순들이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내에서 생산력 발전에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생산중심의 계획경제체제의 문제

생산계획 중심의 계획경제의 자원낭비 현상:

북한은 인민경제계획을 생산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해 왔다. 생산계획은 생산물의 판매 가능성보다 국가의 정책적 의도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생산단위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계획 중심의 계획경제 운영방식은 북한의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은 모든 생산단위를 맞물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초과달성하면 그만큼 재고가 쌓이게 된다. 이러한 재고는 투자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팔리지 않는(쓸모없는) 물자를 생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자원의 낭

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의 낭비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해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계획당국이 한 공장에 대해 볼트와 너트를 각각 10개씩 생산하도록 생산계획을 부여하였다고 하자. 이 때 계획당국은 7쌍의 볼트와 너트를 당기에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부분의 보상에 충당하고 3쌍을 차기의 생산을 위해 축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 공장은 10개의 볼트와 15개의 너트를 생산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트 5개만큼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한 것이 된다.

이를 생산측면에서 사회총생산물식($W=C+V+M=X+K+S+E+EX-IM$)⁷⁰⁾과 국민소득식($G=V+M=E+S$)⁷¹⁾으로 설명하면, 너트 5개만큼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됨으로써 사회순소득(M)이 계획보다 더 늘어나게 되어 사회총생산물(W)과 국민소득(G)이 증가하게 된다. 지출측면에서 보면 볼트와 쌍을 이루지 않는 너트는 생산에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5개의 너트는 예비(재고)로 남게 되지만 수치상으로는 이것이 축적(S)으로 간주되어 역시 사회총생산물(W)과 국민소득(G)의 증가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문제는 생산계획을 초과하여 생산된 5개의 너트로 인해 증가한 축적분은 계획당국이 당초 의도했던 것과 다르다는 데 있다. 즉, 계획당국은 해당 공장에 생산계획을 부여할 때 3쌍의 볼트와 너트를 축적하려는 의도였지 볼트 3개와 너트 8개를 축적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공장은 5개의 너트를 더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낭비한 셈이 된다.⁷²⁾

70) $W=C+V+M$ 은 생산측면에서 본 사회총생산물, $W=X+K+S+E+EX-IM$ 은 지출측면에서 본 사회총생산물이다. 여기에서 C: 소모된 생산수단, V: 노동자가 자신을 위하여 지출한 노동가치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임금)(시장경제 개념으로는 피용자 보수), M: 노동자가 사회를 위하여 지출한 노동가치 또는 국가재정에 편입되는 사회순소득(시장경제 개념으로는 영업잉여), X: 중간재에 대한 지출, K: 감가상비, S: 축적몫, E: 소비몫, EX: 수출, IM: 수입을 나타낸다.

71) $G=V+M$ 은 생산측면에서 본 국민소득, $G=E+S$ 은 지출측면에서 본 국민소득이다.

72) 이 경우 차기에 볼트를 5개 더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자원을 낭비한 것은 아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면 외형상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원을 낭비하여 경제의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였다는 이유로 생활비(임금)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은 북한이 수요보다 생산을 중시하여 계획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수요를 중시했다면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것은 국민소득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예에서 만일 그 공장에 대해 볼트와 너트를 다른 공장에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만 비로소 생활비가 추가로 주어지는 체계였다면 그 공장은 팔릴 수 없는 5개의 너트를 더 생산하는 대신 팔릴 수 있는 2쌍의 볼트와 너트를 더 생산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⁷³⁾

생산수단의 가수요에 따른 자원낭비:

북한의 생산단위는 국가계획에 의해 부여받은 생산계획을 달성하는 것을 최대의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각 생산단위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원자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어진 생산계획을 달성하기가 더 용이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생산단위들은 주어진 생산계획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양보다 더 많은 원자재를 배정받으려는 경향을 보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이 공장이 볼트와 너트를 쌍으로 더 생산하지 않고 너트만 더 많이 생산한 행위가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면 동태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즉, 이 기업의 기술적 특성상 볼트보다 너트 생산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너트를 더 많이 생산한 것이라면 차기에도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할 욕심으로 볼트보다 너트를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 것이다.

73) 북한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7.1조치를 통해 이윤을 더 많이 내는 기업소에 더 많이 분배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한다.

이게 된다.⁷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배정받은 원자재중 일부가 생산에 이용되지 않고 각 공장의 창고에 폐기물로 방치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생산수단의 가수요에 의한 자원의 낭비는 사회총생산물(W)을 증가시키지만 국민소득(G)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이를 사회총생산물식($W=C+V+M$)에서 보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도 생산과정에 이용되는 것처럼 보여 생산수단 소모(C)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사회총생산물(W)을 증가시키지만 국민소득($V+M$)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의 낭비 현상을 반영하여 북한은 항상 “공장, 기업소들에서는설비, 자재를 극력 아껴쓰며 필요없는 설비와 자재를 사들이거나 체화(滯貨)⁷⁵⁾ 사장(死藏)시키는 것과 같은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⁷⁶⁾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는 생산계획 중심으로 계획경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내생적인 결함으로, 국가가 계도한다고 해도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경제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생산유기체’ 개념과 ‘자력갱생’ 원칙 사이의 충돌 문제

북한의 ‘생산유기체’ 개념과 ‘자력갱생’ 원칙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계획경제내에서 체계적 모순을 유발한다.

북한은 스스로 자신의 경제체제를 생산유기체로 인식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산유기체 개념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

74) 이러한 현상을 기업소의 자금수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즉, 각 기업소는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국가자금을 배정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금이용의 비효율 문제는 후술한다.

75) 체화: 상품같은 것이 팔리지 않아 그대로 묵어나는 것(조선말 대사전)

76) 김정일(1990), p.179.

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 재생산의 고리들이 서로 불가분의 연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생산유기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은 국가의 유일한 지휘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경제”라는 의미이다.

한편, ‘자력갱생’ 원칙은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⁷⁷⁾을 말한다. ‘자력갱생’ 원칙은 원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정책 목표가 변형된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었지 개별 생산단위들에 대해 ‘자력갱생’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생산단위 차원에서도 자력갱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유기체 개념은 자력갱생 원칙과 결부될 때 북한의 계획경제의 작동에 장애를 초래하면서 자원이용의 비효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에도 경제가 안정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내재적 모순을 유발한다.

먼저 생산유기체 개념이 개별 생산단위 차원의 ‘자력갱생’과 결합될 때 북한의 계획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생산유기체 개념에 의하면 각 생산단위는 계획당국의 계획에 의해 배분받은 기계, 원료,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계획된 산출물(중간재 또는 최종재)을 생산하여 다른 부문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획당국은 이러한 생산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생산계획을 작성한다. 그러나 만일 각 생산단위가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자기완결적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다른 부문과의 생산연계 없이 자체의 힘만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이는 자력갱생의 원칙에는 충실하지만 경제를 생산유기체로 인식하는 계

77) 김정일(1991), pp.55~56.

획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경제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기계제작소는 제철소로부터 철강을 조달받도록 되어 있는데 스스로 철강을 생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기업소는 기계제작에 사용되어야 할 생산요소를 철강생산에 투입함으로써 경제전체적으로 기계는 계획당국의 예상보다 더 적게 생산되고 철강은 더 많이 생산되어 당초 생산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계획경제의 정상적 가동을 어렵게 한다. 또한 철강 생산 분야에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기계제작소가 철강을 생산하는 것은 제철소에서 철강을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생산요소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질도 떨어지게 되어 자원이용의 비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각 생산단위의 자기완결적 생산체제 구축 행위는 생산유기체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계획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해악이지만 자력갱생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각 생산단위 입장에서는 미덕으로 간주됨으로써 생산부문의 비효율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도 그간 생산유기체 개념과 개별 생산단위 차원에서 적용되는 자력갱생 원칙 사이에 이러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00.2월 당시 재정성 김완수 부상(노동신문 2000.2.3)은 “각급 공장, 기업소들이 최근 수년간 자력갱생 기지를 많이 갖추어 놓았으나 그중에는 투자의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것들도 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으며, 2003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에 실린 논문에서는 개별 생산단위가 자력갱생 원칙을 앞세워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해 “공명주의에 사로잡힌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치는 행위”⁷⁸⁾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교시를 내걸고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이러한 비판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개

78) 신도현(2003), p.43.

별 생산단위의 무분별한 자력갱생 기지 건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생산유기체 개념이 국가차원의 '자력갱생' 과 결합될 때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생산단위간 생산적 연계성은 북한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도 존재하는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생산유기체의 개념에 입각하여 계획당국이 모든 생산단위에 대한 원자재의 배분과 완제품 생산, 생산물의 교환 과정을 세밀하게 지도,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생산단위들 사이의 상호연계성이 시장경제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강력한 생산단위간 상호연계성이 자력갱생 원칙과 결합하게 되면 북한경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상실하고 생산체계 전반의 균열을 초래하여 경제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탄광의 석탄 생산계획이 10만톤인데 일시적인 생산장애로 5만톤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탄광으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도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 전력을 공급받아 설비를 가동하는 기계제작소의 공장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쳐 계획의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부족한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제도적 융통성을 가지고 대외 통상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부족한 5만톤의 석탄을 외부로부터 긴급 수입할 수 있으므로 설령 석탄생산은 일시적으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문에서는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됨으로써 계획의 차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 자력갱생 원칙의 틀에 속박되어 부족한 물자를 시의적절하게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계획경제는 작은 충격에도 안정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띠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자력갱생 원칙은 계획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유기체 개념과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자원낭비를 부추기고 경제의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 금융왜소성에 따른 자금배분의 비효율

사회주의 금융제도의 자체적 한계는 ‘금융 왜소성’으로 인해 경제전반에 제기되는 자금이용의 비효율을 들 수 있다. ‘금융 왜소성’은 기업자금의 구성에서 재정자금의 비중이 금융자금의 비중을 압도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북한의 자금공급체계하에서는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자금의 성격이 재정자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금융자금은 재정자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금융 왜소성’은 북한경제에서 자금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기관, 기업소들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예산으로부터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자금 위주의 자금공급체계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 북한경제 전체적으로 자금이용의 비효율을 야기한다.

재정자금은 원리금 상환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각 독립채산제 기관, 기업소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재정자금을 확보하면 생산목표의 달성이 그만큼 용이해진다. 따라서 재정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기관, 기업소는 생산목표의 달성에 소요되는 실제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수요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각 기관, 기업소의 자금 확보 의욕은 자금수요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성향으로 표출된다.⁷⁹⁾ 이와 함께 국가자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통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관, 기업소들은 과다한 자금요구가

79) Kornai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기업들은 보다 많은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급기관들과 협상을 시도하려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태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Kornai(1992), pp.140~145 참조.

실제 자금수요인 것처럼 은폐하려는 성향도 갖게 된다. 이러한 자금 가수요와 이를 은폐하려는 성향은 결과적으로 북한경제 전체적으로 자금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일 기관, 기업소가 필요 이상으로 요구한 자금을 국가예산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을 경우에는 자금이 남을 수 있으나 당초에 필요이상의 금액을 요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자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기관, 기업소가 필요 이상으로 요구했으나 실제로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경우 기관, 기업소들은 자금부족을 이유로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요구했던 자금수요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⁸⁰⁾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이러한 자금의 가수요는 자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자금 위주의 자금공급 체계하에서는 아무리 엄격한 재정통제가 가해진다고 해도 자금의 가수요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미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이용의 비효율을 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정통제는 이러한 비효율을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금융자금의 경우 재정자금과 달리 국가의 통제가 없어도 자금이용의 효율이 제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관, 기업소가 은행대부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과다차입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과소차입하는 경우에는 경영에 차질이 야기되므로 결국 기관, 기업소는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자금의 낭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금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금융자금이 재정자금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북한의 자금공급 체계하에서는 금융자금 공급이 활성화되

80) 자금을 요구한 수준보다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는 경우 당초에 자금을 과다하게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경제 전체적으로 자금이용의 효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라. 가격관리체계의 문제

북한 가격관리의 문제점은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기초한 가격제정 방식, ‘가격과 가치의 목적의식적 배리’ (背離)⁸¹⁾,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격차 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가격제정 논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지출 크기 = 생산물 가치 = 생산물 가격’이라는 등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생산물의 수요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위의 등식은 국가가 기업소의 생산물에 대해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의 크기와 가격을 설정해 주면 기업소들은 계획된 수량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시장경제 이론의 기업이윤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pi = (p - w)Q \quad (25)$$

여기에서 π 는 기업소 이윤, p 는 생산물의 단위당 가격, w 는 생산물 단위당 사회적 필요노동지출, Q 는 기업소에 부과된 생산량이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적 필요노동지출과 생산물 가격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w = p$ 가 되어 기업의 이윤은 언제나 0이 된다.⁸²⁾ 따라서 기업소는 국가에 의해 주어진 생산목표(Q)를 달성하면 과업을 완수할 뿐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비

81) 배리(背離): (사물현상의 관계가) 반대되게 떨어져 나가거나 상반되게 변하는 것(「조선말대사전」).

82) 앞에서 가격의 구성요소에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은 기업의 이윤, 거래수입금 등을 가격에 부과하므로 실제로는 $p > w$ 이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가격설정의 기본원칙인 사회적필요노동지출과 상품가격을 일치시킨다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p = w$ 로 놓았다.

원배분의 비효율이 나타나지 않는다.⁸⁴⁾ 그러나 계획당국은 가격을 수요공급의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하지 않고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을 토대로 설정($p=w$)하므로 가격(p)이 우연한 경우가 아니면 p^* 보다 높든지 낮게 된다. 만일 가격을 \bar{p} 로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Q^* - \bar{Q}$ 만큼 소비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underline{p} 로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면 $\underline{Q} - Q^*$ 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어느 쪽이든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된다.

북한의 가격관리체계의 또 다른 문제는 '가격과 가치를 목적의식적으로 배리' 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데 있다. 즉, 수요공급을 무시하고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생산물 가치=생산물 가격'의 원칙에 의해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가격체계가 이미 왜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중소비품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사치품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하면 가격체계의 왜곡은 더 심해진다. 이는 식 (25)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사회적 필요노동지출보다 낮게 설정되어 $p < w$ 가 되고, 사치품 가격은 더 높게 설정되어 $p > w$ 가 되면 대중소비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는 손실($\pi < 0$)을⁸⁵⁾ 사치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는 이익($\pi > 0$)을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중소비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는 생산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사치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는 생산을 늘릴수록 더 많은 이익을 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설정 원리는 두가지 점에서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첫째, 계획당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의도적으로 사치품의 생산을 늘리고 대중소비품의 생산을 줄이면 국가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중소비품의 가격을 낮게, 사치품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가격정책은 당초 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84) 시장에서는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여 p^* 가 자동적으로 달성된다.

85) 기업소의 손실은 '가격편차보상금' 명목으로 국가재정에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소 손실을 재정 손실로 바꾸어 주는 '재분배' 일 뿐 손실 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가 상품공급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국자재정 수입을 확충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가격정책은 경제내에 물자부족 현상을 보편화시킨다. 즉, 대중소비품은 낮은 가격으로 인해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초래하고 사치품은 높은 가격 때문에 구입을 어렵게 하여 모든 재화의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의 가격관리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이원화이다. 농민시장가격은 국정가격에 비해 수십배~수백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격의 이원화는 북한당국이 의도하고 있는 '가격의 일원화 원칙'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가격관리체계의 실패를 의미한다. 한 경제내에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일 경우 경제내 부정부패 등 탈법적 경제활동의 만연, 빈부격차의 심화, 건전한 자본축적의 장애 등을 초래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마. 독립채산제 운영의 문제

북한의 정의에 따르면 '독립채산제는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밑에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이며, 독립채산제가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기적 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영활동의 상대적 독자성, 물질적 자극과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과 관련되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가장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이라고 설명한다.⁸⁶⁾ 이상의 정의에 근거할 때, 북한

86)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p.381

의 독립채산제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독립채산제의 본령인 '경영활동의 상대적 독자성, 물질적 자극과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 부분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라는 제약에 종속되어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의 독립채산제가 결코 체제적 한계를 벗어나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국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은 독립채산제가 '과도기적 성격', 즉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규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언젠가는 극복하여야 할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그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⁸⁷⁾ 이는 독립채산제가 비록 자본주의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손실과 낭비를 줄이고 부문별로 이윤배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⁸⁸⁾으로서 다른 어느 제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북한 당국의 사고 속에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북한은 자본주의적 요소인 독립채산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도입하여 경제의 손실과 낭비적 요소를 줄여보고자 하였으나, 독립채산제가 문자 그대로 '독립'되지 않고 국가계획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87) 북한의 독립채산제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에서 독립채산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2년으로 당시에는 중앙의 국영기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다가 1970년대 들어 지방공업부문, 농업부문, 유통부문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1984.11월 정무원 상무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독립채산제는 북한경제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1995년 들어서는 북한이 군(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 단위의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1998년까지 수 십개의 단위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독립채산제가 사실상 모든 단위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자료:「북한대사전」, pp.415~417; 전명식(1999))

88) 사회과학출판사(1995),「재정금융사전」, p.383 참조

2.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해체 과정

가. 사회주의권 붕괴와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해체 조짐

개요

북한 계획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소유제⁸⁹⁾를 토대로 국가가 노동력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생산, 분배, 축적(투자), 소비를 계획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내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자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이전인 1980년대말까지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원료와 연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⁹⁰⁾ 스스로 그 자립도의 최대치를 60~70% 정도로 보고 있다.⁹¹⁾ 이는 30~40%의 원자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지 않으면 북한경제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력갱생 원칙하에서 원료 생산에서의 자립을 추구해 온 북한이

89)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만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90) “원료와 연료를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나라의 자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공업을 처음부터 자기 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여 주체적인 공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정일(1991) p.58)

91)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22권, pp.62~63; 조선노동당출판사(1999), 「주체정치경제학 독본」, p.261.

30~40%에 달하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1990년대 불어 닥친 북한의 경제난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자력갱생 원칙으로 인해 북한은 설령 국내 생산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입대체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자체적으로 생산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석탄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싸게 먹힌다고 하더라도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입하기 보다는 직접 생산하는 쪽을 선택한다. 이러한 북한의 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원자재의 수입수요가 국내 원자재 총수요의 30~40%에 달하는 정도였다면 생산면에서 자력갱생을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어떤 외생적 요인에 의해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이들 원자재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 북한의 생산체계는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1990년 사회주의권의 붕괴이다.

1980년대까지 북한은 기계부품, 원유, 유연탄 등의 중요 원자재를 대부분 소련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었다. 소련은 붕괴 이전까지 북한 수입 총액의 50~60%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에 김책제철소, 승리화학, 북창화력발전소 등의 핵심 산업시설 건설과 기계설비, 부품, 원료, 연료 등을 지원하였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산업시설들로부터 전체 전력의 65%, 철광석의 40%, 석유화학의 50%, 화학비료의 13%, 섬유제품의 20%를 생산하고 있었다.⁹²⁾ 그러나 소련체제가 붕괴되고 러시아공화국이 출범(1991.6월)하면서 러시아는 대북 수

92) 알렉산더 티모린(1996), p1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pp.666~667에서 재인용

출품에 대해 종전의 국제시세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부과하던 ‘우호가격제’를 폐지하고 북한에 경화결제를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경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원자재를 더 이상 도입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1991년 북한의 대러 수입규모(1.8억달러)가 1990년(15.2억달러)의 1/1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이 급감하자 부족분을 중국의 지원을 받아 보충하려고 시도하나 중국도 1992년부터 북한에 대해 ‘우호가격제’를 폐지하고 경화결제를 요구한다. 이로 인해 이후 1990년대말까지 북한은 경제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들어 북한정권 수립후 사실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3.7%)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1998년까지 9년간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된다.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는 결국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사실상 해체되기에 이른다.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계획당국이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따라 생산계획을 세밀히 작성하고 각 생산단위에 대해 원자재와 노동력을 보장해 주면서 생산계획을 이행하도록 지도,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조달해 온 원자재(전체 원자재 수요의 30~40%)의 수입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생산단위에 공급할 수 있는 원자재의 총량이 갑자기 30~40% 축소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북한입장에서 볼 때 경제전체의 생산체계가 마비될 수 있는 명백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총생산물식($W=C+V+M$)과 국민소득식($G=V+M$)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할 수 없게 되어 당장 원자재 투입(C)이 30~40% 감소하게 된다. 한편, 생산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데 생산수단인 원자재 투입량이 줄어들므로써 이와 결합할 수 있는 노동력도 축소된다. 즉,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려고 해도 원자재 부족으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처럼 근로

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북한경제 이론으로 설명하면, 근로자들이 ‘자신을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을 이전처럼 지출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사회총생산물(W) 및 국민소득(G)의 구성항목인 생산부문 근로자 생활비(임금)(V)와 사회순소득(기업 이윤)(M)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text{중요 원자재 수입 중단} \Rightarrow C \downarrow \Rightarrow V \downarrow \text{ 및 } M \downarrow \Rightarrow W \downarrow \text{ 및 } G \downarrow$$

의 과정을 거쳐 북한경제가 급격히 후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은 북한의 재정규모의 축소 과정도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재정자금을 사회순소득(M)으로부터 조달하는데 사회순소득(M)이 대폭 감소하게 되면 재정수입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북한이 기존의 방식대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을 견지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경제적 기준의 변화에 따른 계획수립 불능: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은 이른바 ‘기술경제적 기준’에 기초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해 왔다.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갑작스런 원자재의 공급 감소로 생산부문 전반에 걸쳐 종전의 기술적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어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입각한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술경제적 기준’은 북한의 기술발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거의 일정하다. 예를 들어, 트랙터 한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엔진, 타이어를 비롯한 각종 부품, 소요 전력 및 노동력 등은 모델이 바뀌지 않는 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자재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 기존의 기술경제적 기준은 완전히 달라지

게 된다. 트랙터 생산의 예를 보면, 타이어를 공급하지 못하여 트랙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기술경제적 기준에 맞추어 엔진 및 여타 부품, 전력, 노동력을 각 트랙터 생산공장에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트랙터 생산공장의 예와 같은 기술경제적 기준의 왜곡현상이 모든 생산부문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생산유기체로 간주되는 북한의 계획경제는 치명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계획당국은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할 때 토대가 되었던 종전의 기술경제적 기준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경제적 기준은 수십년간에 걸쳐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생산현장의 지식이 응축되어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재구성될 수 있는 성격의 지표는 아니다.

따라서 생산유기체적 관점에서 계획경제체제를 지휘통제하는 두뇌의 역할을 담당하는 계획당국이 인민경제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술경제적 기준을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각 생산단위에 대해 생산요소를 배분하고 생산계획을 부여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의 가동이 중단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전통적 경제부문간 균형 붕괴:

중요 원자재의 공급 축소는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부문간 균형발전 개념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i) I,II부류간 균형 개념 붕괴

앞에서 논의된 북한의 부문간 균형발전 개념중 ‘생산수단 생산부문(I부류)과 소비재 생산부문(II부류)간 균형’은 생산수단 부문과 소비재 부문이 생산물을 상호 등가로 교환된다는 것이었다. I,II부류간 균형조건이 북한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중공업부

문과 농업 및 경공업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확대재생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갑작스런 원자재의 공급 축소는 생산수단 생산부문(I부류)과 소비재 생산부문(II부류) 사이의 균형조건을 파괴시키게 된다. 이러한 균형 파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논의된 <참고2>의 예를 이용하고자 한다.

소련으로부터 원자재가 정상적으로 공급된 마지막 연도인 1990년을 0기라고 하고,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한 첫 번째 연도인 1991년을 1기라고 하자. 계획당국은 소련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이 갑자기 중단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1기의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한다고 하자.

북한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생산부문 근로자가 '자신을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 즉 산(살아있는) 노동을 생산에 투입하면 생산수단('과거노동')과 결합하여 생산부문 근로자의 생활비(V)와 사회순소득(M)⁹³⁾이 새롭게 창출되는데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율(M/V)을 100%라고 가정한다.⁹⁴⁾ 이제 계획당국은 1기의 계획을 수립할 때 소련으로부터 원자재가 예전과 같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원자재까지 포함하여 1기의 생산계획을 작성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계획당국의 1기의 생산계획상 I, II부류의 사회총생산물 가치구성이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고 가정한다.

93) 마르크스 개념으로는 잉여가치(surplu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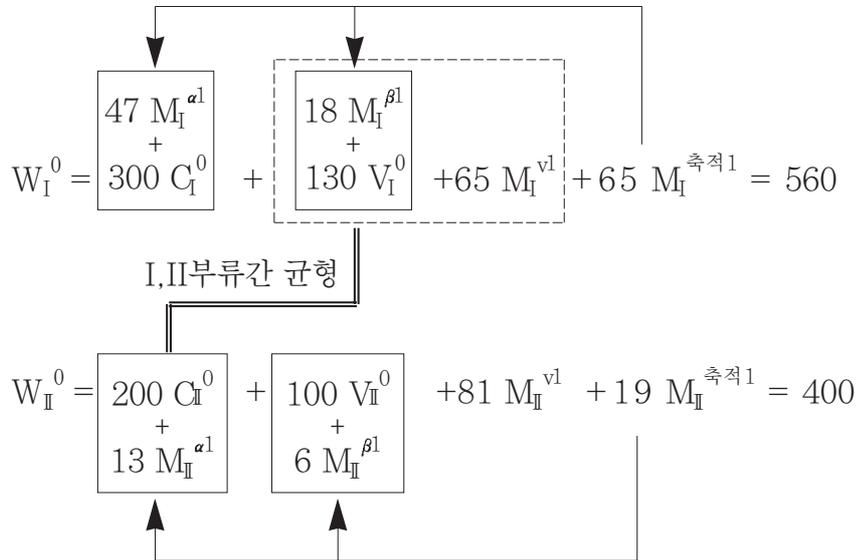
94) 잉여가치율(V/M)은 '자신을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는 생산부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한 노동'을 4시간, '사회를 위한 노동'을 4시간 지출한다면 이 근로자가 직접 보상받는 생활비(V)의 가치와 사회를 위해 창출하는 부가가치인 사회순소득(M)의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은 $M/V=1$ 이 되어 100%가 된다. 그러나 만일 '자기를 위한 노동'이 6시간, '사회를 위한 노동'이 2시간이 되면 잉여가치율은 $M/V=1/3$ 이 되어 33.3%가 되고, 반대로 '자기를 위한 노동'이 2시간 '사회를 위한 노동'이 6시간이 되면 $M/V=3$ 이 되어 300%가 된다. 통상 마르크스 경제이론에서는 잉여가치율을 100%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560 W_I^1 = 300 C_I^0 + 130 V_I^0 + 130 M_I^1$$

$$400 W_{II}^1 = 200 C_{II}^0 + 100 V_{II}^0 + 100 M_{II}^1$$

여기에서 W_I^1 , W_{II}^1 는 1기에 창출되는 I,II부류 사회총생산물, C_I^0, C_{II}^0 는 I, II부류에서 0기로부터 물려받아 1기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수단의 가치(외부 조달 원자재 포함), V_I^0, V_{II}^0 는 I,II부류에서 0기로부터 물려받아 1기의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노동중 자신을 위해 지출하는 노동 가치(생산부문 근로자의 생활비), M_I^1, M_{II}^1 는 I,II부류에서 0기로부터 물려받아 1기의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노동중 사회를 위해 지출한 노동 가치(사회순소득)이고 각 기호 앞의 수치는 각 항목의 가치를 나타낸다. 즉, I부류에서는 0기로부터 물려받은 생산수단 300과 노동자의 노동이 1기의 생산에 투입된 결과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 300과 노동자의 ‘자기를 위한 노동’ 보수인 생활비(임금) 130, 그리고 사회순소득 130이 창출되어 560의 총생산물이 창출된다. 또한 II부류에서는 0기로부터 물려받은 생산수단 200과 노동자의 노동이 1기의 생산에 투입된 결과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 200과 노동자의 ‘자기를 위한 노동’ 보수인 생활비(임금) 100, 그리고 사회순소득 100이 창출되어 400의 총생산물이 창출된다.

계획당국은 1기의 계획을 작성할 때 위의 사회총생산물의 총체적 가치 구성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1기에 새로 창출되는 사회순소득(I부류 130, II부류 100)을 소비와 축적에 재분배하여 I,II부류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고 가정한다.



위의 그림에서 계획당국이 1기에 수립한 계획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부류에 대해 사회순소득 130을 똑같이 나눈 65씩을 각각 사회적 소비몫(M_I^{v1})과 생산적 축적몫($M_I^{축적1}$)으로 돌리고, 65의 생산적 축적($M_I^{축적1}$)중 47은 생산수단 축적몫($M_I^{\alpha 1}$)으로, 18은 축적에 따른 노동력의 추가 이용($M_I^{\beta 1}$)에 배분한다. 또한 II부류에 대해서는 사회순소득 100에서 81은 사회적 소비몫(M_{II}^{v1})에, 19는 생산적 축적몫($M_{II}^{축적1}$)으로 돌리고 19의 생산적 축적몫($M_{II}^{축적1}$)중 13은 생산수단 축적($M_{II}^{\alpha 1}$)에, 6은 축적에 따른 노동력의 추가 이용($M_{II}^{\beta 1}$)에 배분하고자 한다. 이렇게 I, II부류의 사회순소득을 배분하면 1기말에 가면 다음과 같이 I부류가 II부류로부터 구입하는 소비재의 가치가 213이 되고 II부류가 I부류로부터 구입하는 생산수단의 가치가 213이 되어 I, II부류간 균형이 충족된다.

$$130 V_I^0 + 18 M_I^{\beta 1} + 65 M_I^{v1} = 200 C_{II}^0 + 13 M_{II}^{\alpha 1}$$

이 예와 같은 I, II부류간 균형은 항상 존재하거나 우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당국의 세밀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계획당국

이 이러한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I,II부류에 걸쳐 0기로부터 물려받은 생산수단과 노동력 등의 초기조건, 1기에 창출되는 각 부류의 사회순소득의 크기, 사회순소득의 소비몫과 축적몫의 배분, 축적몫의 생산수단 축적과 축적에 수반되는 노동력 이용 부분에 대한 배분 등을 조정해야 하고 아울러 생산물(중간재, 최종재)의 가격과 각 부류의 임금을 계획적으로 설정해 주어야 한다. 이들 조건이 잘못 설정되거나 바뀌게 되면 균형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I,II부류간 균형조건은 상황의 변화에 쉽게 파괴될 수 있어 균형의 견고성(robustness)이 취약하다.

북한의 계획당국이 1기에도 소련으로부터 원자재 조달이 예전과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위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소련이 북한에 대해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면 I,II부류간 균형을 지탱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건들이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균형이 파괴된다. 즉, 생산물 가격과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불변인 상태에서 각 부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수단(C_I^0, C_{II}^0)이 감소하고, 생산수단과 결합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감소하여 생산부문 근로자들의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해 창출되는 생활비(임금)(V_I^0, V_{II}^0)와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순소득(M_I^1, M_{II}^1)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그 감소 비율이 서로 다르게 진행된다면 기존의 I,II부류간 균형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I,II부류간 균형의 파괴는 결과적으로 생산재와 소비재 생산을 모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화학부문(생산수단 생산부문)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원유를 가공하여 화학비료(생산수단)를 생산하여 농업부문에 공급하고 농업부문(소비재 생산부문)은 화학비료를 투입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곡물을 생산(확대재생산)하여 경제전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유수입이 중단됨으로써 화학비료

(생산수단) 생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곡물(소비재) 생산이 줄어든다. 같은 예로 원유수입 감소로 인해 화학공장(생산수단 생산부문)의 화학섬유(생산수단)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방직공장(소비재 생산부문)에 공급되는 화학섬유가 감소하여 의류(소비재) 생산이 줄어든다.

ii) 공업부문 내부균형 붕괴

‘공업부문 내부균형’은 채취(석탄 등) 및 전력공업을 가공공업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소련의 북한 발전설비에 대한 부품 공급 중단조치가 북한의 전력생산 및 수송체계의 특성과 맞물려 공업내부 균형을 파괴하고 나아가 극심한 전력난을 촉발시켰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다시 설명하면, 북한의 중요한 발전소는 대부분 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되었으며 북한은 발전설비의 주요 부품을 소련에서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⁹⁵⁾ 그런데 소련으로부터 주요 부품의 신규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발전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일차적인 전력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인 전력생산 감소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북한의 화력발전체계와 전철화된 철도수송체계의 특성이 맞물려 북한이 극심한 전력난에 봉착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즉,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로 공급되는 석탄은 전철화된 철도⁹⁶⁾를 이용하여 수송된다. 그런데 각 발전소들이 부품부족으로 전력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철도수송에 차질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 화력발전소들은 석탄공급을 적기에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화력발전소는 처음에는

95) 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된 발전소는 수봉발전소(70만kw), 평양화력발전소(50만kw), 북창화력발전소(160만kw), 선봉화력발전소(20만kw), 동평양화력발전소(5만kw), 청진화력발전소(176만kw) 등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북한백서」, p.668)

96) 북한 철도는 80%가 전철화되어 있다.

부품이 부족하여 전력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나중에는 주원료인 석탄까지 확보되지 않게 되어 전력생산이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광 입장에서는 생산된 석탄이 팔려나가지 않고 재고로 남게 되면서 석탄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소련의 부품공급 중단은 북한의 '공업내부 균형'을 파괴하고 북한의 전력난을 심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모든 생산부문의 생산력이 급속히 위축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ii) 농업부문 내부균형 붕괴

원유도입 감소 및 농기계 부품공급의 감소로 인해 북한의 '농업부문 내부균형'도 파괴되어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 '농업부문 내부균형'이란 곡물을 빠른 속도로 증산하면서 축산, 과수, 잠업, 야채생산을 늘려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균형이 파괴된 이유는 북한 농업의 기계화가 심화되어 있었던 데 기인한다.

북한은 상당히 일찍부터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1969년에 이미 농촌전기화를 완료하였고 6개년계획(1971~76)기간중에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추진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75년 기준으로 농지 1정보당 화학비료 시비량이 1톤에 달하였고, 1977년 기준으로 100정보당 트랙터 수가 평야지대 6대와 산간지대 5대, 자동차는 1대, 이양기 등 농기계는 3만대 꼴로 배정되어 있었다고 한다.⁹⁷⁾ 이런 배경으로 인해 1980년까지 농가 1인당 식량작물 생산량은 북한(0.55톤)이 남한(0.49톤)보다 오히려 앞서 있었다.⁹⁸⁾ 북한의 이러한 농업의 기계화는 농업부문의 대외 원자재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

97)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제18권, pp. 352~353 참조

98) 통계청(2002.12), 「남북한경제사회상 비교」, p.51.

즉, 원유 도입량이 축소되면서 화학비료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트랙터 및 이앙기 등의 부품과 연료 공급이 중단되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곡물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농업부문의 내부균형 붕괴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동시에 북한은 1992년부터 이른바 ‘핵문제’가 첨예화되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의 유지를 위하여 부족한 원자재를 군수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부문에 대한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다.

나. 계획경제체제의 해체와 사경제부문의 확산

1) 계획경제체제의 해체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해체 징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이다. 북한의 그 해 재정규모를 전년대비 40% 줄여 발표하였다. 재정규모의 축소가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재정은 국가경제를 가동시키는 자금의 원천으로 계획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소비, 축적 등의 모든 실물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계획경제하에서 국가는 기업소들이 생산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비, 인건비, 투자자금 등 경영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국가재정의 비목인 ‘인민경제비’로 지원했다. 또한 배급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회적 소비자금도 ‘인민적 시책비’라는 비목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 규모의 감소는 생산, 소비, 축적 등 경제전반에 걸친 실물경제 활동이 그만큼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95년 북한의 재정규모가 40% 감소한 것은 종전에 북한이 외

부로부터 수입하던 중요 원자재의 대외의존도인 30~40%와 비슷한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련 등지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이 중단된 것은 1991년부터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충격이 국가재정에 반영되기까지 4년의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수년간 북한은 재정규모의 발표를 중단한다.

재정규모의 축소는 북한이 더 이상 기존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따라 경제를 운영할 만한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뜻하며 이는 북한이 수십년간에 걸쳐 구축해 온 계획경제체제의 해체를 의미한다. 생산부문에서는 국가재정 지원 감소로 공장·기업소가 생산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각 공장의 가동률은 20~30%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각 생산단위가 생산계획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계획경제체제가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소비부문에서는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어 북한 주민들은 식량 및 생활용품을 자력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농민시장'에서 장사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식량 및 소비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북한에는 전국적으로 사경제 부문이 확산된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는 기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부문'과 경공업,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경제부문'으로 이원화됨으로써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가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1995~98년은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명명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난이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은 석탄, 전력, 기계, 수송 등 일부 기간산업의 중요 기업소에 대해서만 국가재정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경공업 등 여타 부문의 기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이나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력갱생'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방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가가 기업소들의 생산활동을 방치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을 포기한 것과 같은 의미

를 가진다. 즉,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 하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국가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각 기업소에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재정자금의 형태로 보장해 주면서 생산계획을 지시대로 이행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그런데 1991년부터 중요 원자재를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생산부문의 기술경제적 기준이 바뀌어 계획당국이 계획경제 운영의 기초인 생산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데다 1995년부터는 국가재정의 고갈로 기업소에 생산자금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계획당국이 기업소를 통제하는 실질적인 수단인 '재정통제'⁹⁹⁾를 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2) 사경제부문의 확산

배급체계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다. 1995년 북한 재정규모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배급체제도 사실상 붕괴되면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 및 소비지출 양태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과거에는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아 소비했던 식량 및 생필품을 이제는 농민시장에서 조달해야만 했다. 농민시장 가격은 국정가격과 달리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된다. 북한주민들은 농민시장에서 국정가격보다 수십배~수백배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 물자를 구입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경제생활 환경은 크게 변했지만 북한주민들의 직장월급은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당시 북한 노동자의 월평균 생활비(임금)는 100원 정도였으므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 가구 전체의 임금소득은 200원 정도가 된다.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당시에는 식량 등 대중소비품의 국정가격이

99) 재정통제는 재정자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자금이 계획완수에 정확히 집행되도록 경제기관, 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재정적 통제를 말한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소득만으로도 북한주민들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남는 자금을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었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주택이 무상으로 지급되고 교육 및 치료에도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식량 및 생활용품 등은 국정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원의 가구소득은 가구의 한달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다.¹⁰⁰⁾

그러나 배급체제의 붕괴로 인해 국영상점을 통해 배급받을 수 있는 물자가 고갈되면서 주민들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식량과 생활용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수요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시장가격은 국정가격보다 수십배~수백배 높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한달 가구소득 200원으로 생계를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된다.¹⁰¹⁾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늘어난 가계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나 부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전역에 ‘사경제부문’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북한에서 사경제 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은 주로 중국국경에 인접하고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을 쉽게 수출할 수 있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이며 사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중국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황해남북도 및 강원도 지역이다. 수도인 평양에서도 주민들의 사경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⁰²⁾

이러한 사경제부문의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0) 다만, 사치품에 속하는 공산품(TV, 냉장고, 시계 등)의 가격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수년간 저축을 해야 했다. 예를 들어 1992년 기준으로 컬러TV 한대의 국정가격이 1,350원인데 이는 북한근로자의 1년간 월급보다 비쌌다.

101) 예를 들면, 1996년 기준으로 농민시장에서 쌀 1kg의 가격은 약 100원에 달하는데 이는 국정가격(0.08원, 8전)의 1,25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한달 가구소득 200원으로는 쌀 500g(성인 1명의 하루분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

102) 박석삼(2002), “북한의 사경제연구” 참조

① 북한주민의 시장경제 경험 축적

사경제부문의 확산은 북한주민들에게 시장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북한주민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배양한 셈이다.

② 북한당국의 노동력 통제 약화

사경제부문의 확산으로 계획당국의 노동력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다. 계획경제하에서는 주민들이 소속 직장에 출근하여 주어진 과업을 일정대로 수행해야만 생산계획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계획당국의 노동력에 대한 통제는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시장장사에 나서면서 노동력의 누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계획당국은 생산계획의 핵심인 노동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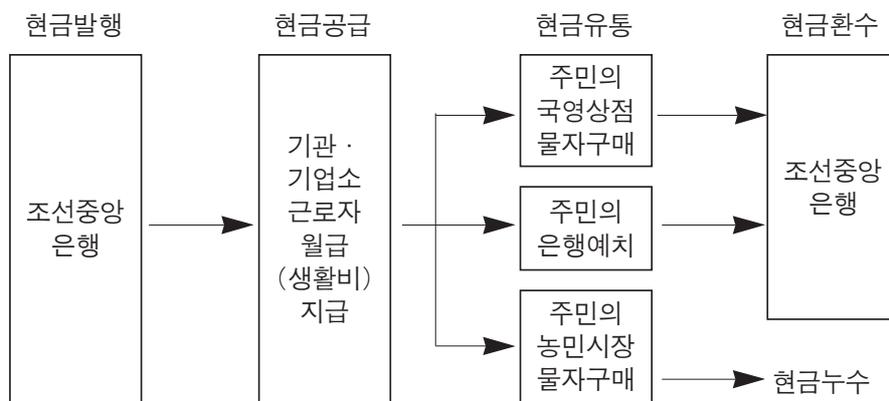
③ 현금유통체계의 붕괴

1995년부터 시작된 배급체계의 붕괴는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사경제부문의 확산을 촉진하였지만 화폐경제 측면에서는 현금흐름의 누수에 따른 현금유통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현금유통 경로는 기관, 기업소의 근로자 생활비(임금)의 형태로 현금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되고 주민들이 현금을 이용하여 국영상점에서 물자를 구매하거나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다시 중앙은행으로 환수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농민시장에서 물자를 구

매하게 되면 현금이 중앙은행으로 환수되지 않고 정상적인 현금유통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¹⁰³⁾ 다음의 <그림3>은 이러한 ‘현금유통’의 기본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3> 북한의 전통적 현금유통 경로



북한에서 사경제부문이 활성화되면서 ‘현금유통’ 체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북한주민들은 현금으로 받은 월급을 배급물자 구입에 지출하는데 배급체계의 붕괴로 국영상점에서 주민들에게 공급할 물자가 고갈되면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농민시장이나 장마당에서 물자를 구입

103) 현금 누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에서도 항상 존재했지만 1995년 이후 그러한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금의 누수로 인하여 민간에 침전되어 있는 현금을 나타내는 용어로 monetary overhang이라 말이 문헌에서 자주 사용된다. Lin(1993)과 Acharya and Spagat(1993) 등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가계저축과 화폐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화폐 침전 현상을 설명하였다. 침전되어 있는 화폐의 규모에 대한 연구는 Cottarelli and Blejer(1991), Chawlul and Cross(1997), Kim(1999) 등이 있다. Kim(1999)은 1991년 러시아에서 가계현금 잔고의 38%, Chawlul and Cross(1997)는 1965~93년중 폴란드의 가계현금 잔고의 40% 수준으로 추정할 바 있다. Calvo and Frenkel(1991)과 Sahay and Vegh(1996) 등은 민간 침전 현금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남으로써 체제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하는 데 지출함으로써 정상적인 현금유통체계를 벗어나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둘째, 북한주민들이 농민시장 및 장마당의 높은 물가 때문에 월급만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장사 밀천이나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려 들자 은행은 주민들의 예금 인출을 규제하고 이는 다시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을 유발하여 보유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기보다 개인적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팽배하게 된다.¹⁰⁴⁾

이와 같은 국영상점의 배급물자 고갈과 주민들의 은행예치 기피 성향이 대두됨으로써 북한의 전통적인 현금유통체계의 중요한 두개의 현금 환수 통로가 막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조선중앙은행은 현금 환수를 위한 기본통로가 거의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공급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이후 북한의 유통현금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⁵⁾ 수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선중앙은행은 통화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전통적인 현금유통체계는 사실상 마비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104) 탈북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 은행에 예금잔액을 가지고 있었던 가구는 조사대상의 18% 수준이다. 대부분의 탈북주민들은 1995년 배급이 줄어들자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인출을 못하기 때문에 현금을 주로 집안에 보관한다고 한다. 박석삼(2002), p.25 참조

105) 이러한 현금규모는 1990년말 기준으로 북한예산 총액(1999년 기준 200억원)의 3.7배에 달하는 730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박석삼(2002) p.29 참조

V.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모색

북한은 1995년 이후 ‘고장난 계획경제체제’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복원할 것인지 또는 이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전환할 것이지에 관해 고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2.7.1일 계획경제체제의 복원보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시장경제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1. ‘7.1조치’의 성격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이 계획경제를 복원하려고 하였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계획경제 복원의 필수조건을 분석하는 이유는 7.1조치가 이러한 조건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002.7월 당시 북한이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려 하였다면 반드시 단행했어야 하는 필수조건들로서 배급제도의 정상화,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원칙’ 강화, 강제적 화폐교환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경제 복원의 첫걸음은 배급제의 정상화이다. 그간 북한에서 사경제부문이 확산된 것은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북한주민들이 시장에서 생활용품을 조달하게 된 데 기인한다. 사경제부문의 확산이 북한 계획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계획당국이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노동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된 데 있다. 북한은 인간의 ‘노동’을 생산-분배-소비-축적의 재생산체계를 가동하는 원천으로 보고 있

다. 그러므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모든 노동력을 장악하고 노동계획에 따라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계획경제체제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속 직장을 이탈하면서 국가의 노동력 장악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이로 인해 노동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되어 계획경제체제의 정상적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려면 무엇보다 직장을 이탈한 주민들을 직장으로 복귀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이 직장월급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배급체계를 복원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배급체계의 정상화는 북한 계획경제체제 복원의 필수적인 조건을 이룬다. 그러나 7.1조치는 이와 반대로 배급제의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자유시장을 확대하는 등 계획경제체제의 복원과 상반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둘째,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단위의 자의적 생산활동을 중단시키고 종전의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원칙'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취해졌어야 한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은 '국가계획위원회'가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생산과제와 실현조건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각 부문 및 단위의 경제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경제난으로 북한은 일부 기간산업부문의 기업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단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원자재와 자금을 보장해주지 않고 '자체자금' 또는 '내부예비' (비축자재)를 동원하여 '자력갱생'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각 생산단위의 생산활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의 생산단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원칙'은 유명무실하였다. 만일 북한이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려 했다면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원칙'을 앞세우고 그간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자의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해 온 생산단위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7.1조치에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계획위원회’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 생산일정 수립 등 계획의 세부화 권한을 각 생산단위에 위임함으로써 오히려 완화하였다. 따라서 7.1조치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의 강화를 통한 계획경제체제의 복원과는 상반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셋째,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화폐교환조치를 통해 국정가격체제와 생활비체제를 정비하고 사경제부문을 일소하였어야 한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북한의 전통적인 금융체계에서 현금유통경로를 보면 현금은 근로자의 생활비(임금) 형태로 공급되고, 국영상점의 주민에 대한 소비재 및 서비스 판매 대금과 주민들의 은행예치를 통해 환수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현금유통 경로에서 벗어난 화폐퇴장 현상이 북한의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하에서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수중에 들어간 현금이 국영상점이나 은행을 통해 환수되지 않고 개인들이 보유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이렇게 퇴장된 현금이 계획경제의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는 ‘농민시장’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¹⁰⁶⁾ 이처럼 민간보유 현금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계획경제 부문이 축소되어 계획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시장이 확대되면 가격체제가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이원화될 뿐만 아니라 국정가격에 비해 높은 시장가격은 근로자들의 생활비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처럼 가격체제와 생활비체제가 왜곡되면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사회총생산물($W=C+V+M$)¹⁰⁷⁾ 과 국민소득($G=V+M$)¹⁰⁸⁾으로 평가되는 경제전체의 생산규모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106) 이러한 현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권에서 일반적이었다.

107) W: 사회총생산물, C: 생산수단 보상료, V: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료, M: 사회순소득

108) G: 국민소득

소비($E=V+M^E$)¹⁰⁹⁾ 및 축적($S=M-M^E$)이 모두 달라짐으로써 사회주의 재 생산체계의 작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보유 현금의 지나친 증가로 인한 국정가격체계와 생활비체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은 그간 3차례에 걸쳐 강제적인 화폐교환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러한 화폐교환조치는 유통현금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가격 및 생활비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매개수단으로 하는 ‘농민시장’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경제부문의 계획경제체제의 침윤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사경제부문이 확산되면서 북한주민들은 부업을 하거나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개별적으로 축적하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 주민의 수중에서 잠자고 있었다. 즉, 배급체계의 붕괴로 인해 국영상점에서는 물자를 조달할 수 없어 국정가격체계는 유명무실해졌고, 높은 시장가격으로 인해 북한가구가 한달 생활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자금이 약 2,000원¹¹⁰⁾에 달하게 되어 기존 생활비체계(근로자의 한달 월급 100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만일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려 했다면 국정가격체계와 생활비체계를 복원하고 주민의 시장경제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 강제적인 화폐교환조치를 단행하여 늘어난 민간보유 현금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7.1조치 당시 북한은 화폐교환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국정가격체계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생활비도 대폭 인상함으로써 주민의 시장활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7.1조치는 북한이 ‘고장난 계획경제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수용하여 경제를 회생시켜 보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109) M^E : 사회순소득(M)중 사회적 소비분

110) 박석삼(2002), p.21 참조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7.1조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제운영방식의 변화

북한은 2002.7.1일자로 국정가격체제 및 생활비체제 개편, 국정가격 및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국가계획 수립권한의 일부 하부위임, 공장·기업소에 대한 경영자율성 부여, 새로운 성과급 제도 도입, 배급제의 사실상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후속조치로 2002.8월 환율조정, 2003.3월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다음에서는 7.1조치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운영방식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정가격체제 개편

1) 주요 내용

북한은 기존의 국정가격 산정방식을 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종전에는 가격을 물, 전기, 비료 등의 투입요소에 응축된 ‘사회적 필요노동’, 즉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나 이제는 국제시장가격과 국내의 수요·공급요인도 감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가격의 일원화 원칙’에 입각하여 각 생산단위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가격설정의 권한을 중앙(‘국가가격제정위원회’) 및 지방행정단위에 집중시켰으나 7.1조치를 통해 지방공장¹¹¹⁾에 대

111) 지방공장은 주로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가가 가격제정원칙과 기준을 정해주면 해당공장은 상급기관의 감독하에 상품가격을 설정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도 가격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식량, 연료, 전력, 교통요금, 집세 등 모든 품목의 국정가격을 수십배~수백배 인상하였다. 이는 국정가격을 당시 농민시장 가격에 맞추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재 품목인 쌀과 옥수수의 가격 조정 내역을 보면 쌀 1kg의 소매가격을 8전에서 43원으로 538배 인상함으로써 농민시장 가격(49원)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옥수수 가격(7전→33원: 471배 인상)도 농민시장 가격(33.6원)에 근접시킨 것이다.

또한 농민시장에서 가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공서비스 요금도 대폭 인상하였다. 예를 들면 전력 요금은 60배, 전철요금은 10배 인상하였다. 또한 집세는 이전에는 거의 무료였으나 이제는 1㎡당 월 2원을 부과하였다. 예를 들면 방 2개짜리 23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 150원을 집세로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표12〉

북한의 국정가격 조정 내역

(북한원)

품목	단위	국정가격 조정			시장가격과의 격차		
		조정전 (A)	조정후 (B)	인상폭 (B/A,배)	농민시장가격 ¹⁾ (C)	조정전 (C/A,배)	조정후 (C/B,배)
쌀	1kg	0.08	43	538	49	612.5	1.1
옥수수알	1kg	0.07	33	471	33.6	480	1.0
디젤油	1kl	1	38	38			
전력	1kWh	0.035	2.1	60			
전차요금	1회	0.1	1	10			
지하철요금	1구간	0.1	2	20			
침대차요금	평양(평북)~ 남양(함북)구간	50	3,000	60			
유원지 입장료	송도 해수욕장	3	50	17			
집세	평양지역 기준	월급의 0.3%	1㎡당 월 2원	-			

주 : 1) 2001년말 전국평균 기준

2) 경제정책의 변화

북한의 국정가격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계획경제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국영상점에서 주민들에게 판매할 소비재가 고갈되고 당국의 기업소에 대한 원자재 공급이 급감하면서 이전에 모든 생산물(소비재 및 생산재)에 대해 설정되어 있었던 국정가격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이처럼 국정가격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국정가격의 결정 방식을 채택한다든지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가계소비 등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가격결정 방식 개편과 국정가격의 인상 조치는 북한의 경제이론과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는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정가격체제를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수십년간 사회주의 경제이론에서 주창해 온 가격결정체제와 가격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① 전통적 국정가격체제 유지 불능 인정

북한이 국정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북한정권 수립후 처음 있는 일로서 이는 국정가격체제의 붕괴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가격 관련 주장에 근거한다.

그간 북한은 ‘당의 훌륭한 경제정책에 힘입어 상품가격은 항상 낮아지고 있고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더욱 향상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가격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¹¹²⁾ 좀 더 구체적으로 살

112)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제1권, p.35

펴보면, 북한은 “계획가격(국정가격)의 특성은 가격수준이 끊임없이 낮아진다는데 있다. 가격수준이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현상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계획가격의 체계적인 인하는 생산물의 원가저하와 사회적 생산의 빠른 성장, 국가재정의 공고성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끊임없이 실현된다”¹¹³⁾라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7.1조치를 통해 국정가격을 인상한 것은 이러한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국정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성¹¹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온 북한이 국정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한 조치는 국정가격체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둘째, 북한 입장에서 국정가격의 인상조치가 사회주의 사회의 보편적 현상과 상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행한 것은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이전까지 생산물 원가저하, 경제성장, 국가재정의 공고화, 주민의 구매력 확충 등을 위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7.1조치’에서 가격을 인상한 것은 가격인하를 통해서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집착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② 사회주의 가격이론의 수정

북한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가격은 생산, 분배, 소비, 축적의 재생산체계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금액, 즉 가치로 환

113) 조선노동당출판사(1999), 「주체정치경제학 독본」, p.460.

114)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사회적 필요노동’도 줄어들게 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산하는 매개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재생산체계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론적 배경에 따라 북한은 모든 생산물(생산수단, 소비재)의 국정가격을 원칙적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국정가격 설정방식의 변화는 북한의 전통적 경제이론에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7.1조치에서 시장의 수요공급이나 국제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설정방식은 '사회적 필요노동'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가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생산물에 투입되는 '사회적 필요노동'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은 과학기술 수준이 일정하면 변하지 않는다.¹¹⁵⁾ 예를 들어 감자 1톤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필요노동'의 크기가 10년전과 현재가 동일하다면 '사회적 필요노동'을 기준으로 설정된 감자 1톤의 가격은 10년 전과 동일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국정가격은 그간 거의 변화가 없었거나 시간이 갈수록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감자 1톤의 가격이 시장의 수요공급이나 국제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 시장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시도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적 필요노동'에 따라 설정하던 가격을 시장수급이나 국제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북한이 수십년간 신봉해 온 사회주의 경제이론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전통적 가격차별정책의 사실상 폐지

북한은 이른바 '국가적, 사회적 시책'을 가격정책에 반영한다는 명분하에 그동안 대중소비품(쌀, 간장, 된장, 어린이용품, 학용품 등)에 대해

115)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절약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서는 국정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여타 공산품(사치품)에 대해서는 높게 책정하는 가격차별정책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7.1조치'를 통해 대중소비품에 속하는 쌀, 간장, 된장 등 대중소비품의 가격인상폭을 운동화, 소주, 세탁비누, 세숫비누 등 공산품으로 대별되는 사치품의 가격인상폭보다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기존의 가격차별정책을 폐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격차별정책의 변화는 7.1조치 전후로 각 품목의 가격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계산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7.1조치를 전후로 한 각 품목의 상대가격변화율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j 품목의 i 품목에 대한 상대가격을 j 품목의 명목가격 대비 i 품목의 명목가격으로 정의하고, 7.1조치 전후로 이러한 j 품목의 i 품목에 대한 상대가격변동률을 P_j 라고 할 때 이는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P_j = \frac{p_j^1}{p_{ji}^0}, p_j^0 = \frac{p_j^0}{p_i^0}, p_j^1 = \frac{p_j^1}{p_i^1} \quad (26)$$

여기에서 P_j 는 '7.1조치' 전후의 j 품목의 i 품목에 대한 상대가격 변동률, p_{ji}^0 은 '7.1조치' 이전 j 품목의 i 품목에 대한 상대가격, p_j^1 은 '7.1조치' 이후 j 품목의 i 품목에 대한 상대가격, p_i^0 및 p_i^1 은 '7.1조치' 이전과 이후의 i 품목의 국정가격, p_j^0 및 p_j^1 은 '7.1조치' 이전과 이후의 j 품목의 국정가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쌀(j)(수매가격 기준)의 운동화(i) 1켤레에 대한 상대가격 변동비율(P_j)을 계산해 보면, '7.1조치' 이전 운동화 1켤레는 8원(p_i^0), 쌀 1kg은 80전(p_j^0)으로 운동화에 대한 쌀의 상대가격(p_{ji}^0)은 0.1(0.8원/8원)이고 '7.1조치' 이후에는 운동화 1켤레가 180원(p_i^1), 쌀 1kg은

40원으로 운동화에 대한 쌀의 상대가격(p_j^1)은 0.22(40원/180원)가 되어 '7.1조치' 전후로 운동화에 대한 쌀의 상대가격이 122%(0.22/0.1-1) 상승¹¹⁶⁾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입수가 가능한 16개 품목의 가격자료를 토대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7.1조치' 전후의 각 품목별 단순평균 상대가격 변동비율(\bar{P}_j)¹¹⁷⁾을 산출할 수 있다.

$$\bar{P}_j = \sum_{i=1}^{16} P_{ji} / 16 \quad (27)$$

식 (27)의 평균 상대가격변동률(\bar{P}_j)을 토대로 '7.1조치' 이후 상대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한 품목들을 살펴보면, 상승한 품목은 조미료(501%), 콩기름(351%), 전력(141%), 침대차 요금(140%), 쌀 수매가(100%), 디젤유(52%), 무연탄(42%), 된장(24%), 간장(17%) 등이며, 상대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돼지고기(-3%), 운동화(-10%), 전차요금(-20%), 소주(-28%), 세탁비누(-33%), 세숫비누(-60%), 석탄(-60%)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가격변동률을 통해 볼 때 7.1조치에서 대중소비품의 가격을 공산품의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전통적인 대중소비품과 사치품간 가격차별정책의 폐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6) 운동화에 대한 쌀의 상대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였다는 것은 '7.1조치' 이전에는 운동화 1켤레(8원)가 쌀 10kg(80전x10kg=8원)과 교환될 수 있었으나 '7.1조치' 이후에는 운동화 1켤레(180원)가 쌀 4.5kg(40원x4.5kg=180원)만으로 교환될 수 있게 됨으로써 쌀의 실질수매가가 '7.1조치' 이후 2배 이상 인상되었음을 의미한다.

117) 16개 품목 각각에 대해 해당 품목의 상대가격 변동비율을 계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표13〉 '7.1조치' 이후의 품목별 상대가격 변화

(단위: 배)

i \ j	쌀 (수매가)	콩 기름	조미료	간장	된장	소주	돼지 고기	세숫 비누	세탁 비누	운동화	석탄	디젤유	전력	무연탄	전차 요금	침대차 요금
쌀 (수매가)	1	2.25	3.00	0.58	0.62	0.36	0.49	0.20	0.33	0.45	0.20	0.76	1.20	0.71	0.40	1.20
콩기름	0.44	1	1.33	0.26	0.27	0.16	0.22	0.09	0.15	0.20	0.09	0.34	0.53	0.32	0.18	0.53
조미료	0.33	0.75	1	0.19	0.21	0.12	0.16	0.07	0.11	0.15	0.07	0.25	0.40	0.24	0.13	0.40
간장	1.72	3.87	5.16	1	1.06	0.62	0.83	0.34	0.57	0.77	0.34	1.31	2.06	1.22	0.69	2.06
된장	1.62	3.64	4.85	0.94	1	0.58	0.79	0.32	0.54	0.73	0.32	1.23	1.94	1.15	0.65	1.94
소주	2.79	6.28	8.37	1.62	1.73	1	1.36	0.56	0.93	1.26	0.56	2.12	3.35	1.98	1.12	3.35
돼지고기	2.06	4.63	6.18	1.20	1.27	0.74	1	0.41	0.69	0.93	0.41	1.56	2.47	1.46	0.82	2.47
세숫비누	5.00	11.25	15.00	2.91	3.09	1.79	2.43	1	1.67	2.25	1.00	3.80	6.00	3.56	2.00	6.00
세탁비누	3.00	6.75	9.00	1.75	1.85	1.08	1.46	0.60	1	1.35	0.60	2.28	3.60	2.13	1.20	3.60
운동화	2.22	5.00	6.67	1.29	1.37	0.80	1.08	0.44	0.74	1	0.44	1.69	2.67	1.58	0.89	2.67
석탄	5.00	11.25	15.00	2.91	3.09	1.79	2.43	1.00	1.67	2.25	1	3.80	6.00	3.56	2.00	6.00
디젤유	1.32	2.96	3.95	0.77	0.81	0.47	0.64	0.26	0.44	0.59	0.26	1	1.58	0.94	0.53	1.58
전력	0.83	1.88	2.50	0.48	0.52	0.30	0.40	0.17	0.28	0.38	0.17	0.63	1	0.59	0.33	1.00
무연탄	1.41	3.16	4.22	0.82	0.87	0.50	0.68	0.28	0.47	0.63	0.28	1.07	1.69	1	0.56	1.69
전차요금	2.50	5.63	7.50	1.45	1.55	0.90	1.21	0.50	0.83	1.13	0.50	1.90	3.00	1.78	1	3.00
침대차	0.83	1.88	2.50	0.48	0.52	0.30	0.40	0.17	0.28	0.38	0.17	0.63	1.00	0.59	0.33	1
j품목의 평균 상대가격 변동률	2.00	4.51	6.01	1.17	1.24	0.72	0.97	0.40	0.67	0.90	0.40	1.52	2.41	1.43	0.80	2.4

범례 : 각 셀의 수치가 1보다 크면(작으면) '7.1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상승폭이 비교 대상 품목의 가격 상승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작다는) 것을 나타냄

나. 생활비지급 체계의 개편

1) 주요 내용

생활비의 대폭적인 인상:

북한은 7.1조치 통해 근로자의 생활비(임금)를 대폭 인상하였다. 생활비의 인상폭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노동자의 월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볼 때 종전의 1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20배 정도 상향조정되었다.

이러한 근로자의 생활비 인상은 국정가격을 대폭 인상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변 수입’에 따른 분배 제도 도입(성과급제도 강화):

북한은 생활비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기업소들의 성과급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활비지급체계를 변경하였다. 이전까지 국가는 기업소들이 국가계획을 획기적으로 초과달성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생활비 몫’의 범위에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통제하였으나 7.1 조치를 통해 ‘변수입’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변 수입’ 지표란 ‘국민소득’의 개념을 기업소 단위에 적용한 것으로 기업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말한다. 변 수입은 “판매수입에서 물질적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로써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출된 가치와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창출된 가치”로 정의된다.¹¹⁸⁾ 이를 III장에서 논의한 수식으로 설명하면, 국민소득(G)은 사회총생산물($W=C+V+M$)에서 생산수단 소모분(C)을 제외한 나머지($V+M$) 부분을 말하는데 이러한 국민소득 개념을 기업소 수준에 적용하면 n 기업소의 ‘변 수입’은 총생산물($W_n=C_n+V_n+M_n$)에서 생산수단 소모분(C_n)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V_n+M_n)¹¹⁹⁾이 된다.

7.1조치 이전의 생활비 지급체계와 이후의 ‘변 수입’ 지표를 적용하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7.1조치 이전에 한 기업소(n)가 국가계획을 100% 수행하여 총생산액

118) 오선희(2003), 리영근(2003)

119) V_n 은 북한개념으로는 근로자가 자기를 위해 지출한 노동에 대한 보상(임금)이며 시장경제 개념으로는 ‘비용자보수’이다. 또한 M_n 은 근로자가 사회를 위하여 지출한 노동으로 창출되는 ‘사회순소득’이며 시장경제 개념으로는 ‘사업자 잉여(이윤)’가 된다.

100원을 생산하고($W_n = 100$ 원), 생산액 100원은 소모된 생산수단 보상액 60원($G_n = 60$ 원), 근로자가 자신을 위하여 지출한 노동에 대한 보상인 생활비(임금) 20원($V_n = 20$ 원), 근로자가 사회를 위하여 지출한 노동으로 창출되는 사회순소득 20원($M_n = 20$ 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그리고 이 기업소의 사회순소득 20원은 국가재정에 편입된다고 하자.

그런데 이 기업소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동일한 노동과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계획을 300% 초과수행하여 60원의 사회순소득을 창출한다고 하자($M_n = 60$ 원). 이러한 경우 이 기업소 근로자들이 40원의 초과이윤을 창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윤이 모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면 총 60원의 생활비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예전에는 국가가 이 기업소의 생활비 지급한계인 '생활비 몫'의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이 기업소의 '생활비 몫'이 기본생활비의 150%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계획의 300%를 초과수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생활비 총액은 30원(20×1.5)으로 제한된다. 즉, 사회순소득 60원중 10원만 근로자의 추가적 노동보수로 지급되어 생활비 지급액은 총 30원($20 + 10$)이 되고 사회순소득(60원)중 50원($60 - 10$)은 국가재정에 납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이 기업소가 국가계획을 150%만 수행하더라도 생활비 지급액은 30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150%를 초과수행하면 사회순소득이 30원이 되는데 '생활비 몫'도 기본 생활비의 150%이므로 새로 창출된 사회순소득(30원)중 10원을 추가적 노동보수로 지급하면 생활비 지급총액은 30원, 국가재정에는 사회순소득(30원)중 20원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 수입' 지표($V_n + M_n$)를 적용하면 계획의 300%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n 기업소는 그렇게 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이는 북한의 재정체계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소의 국가재정에

대한 납부금은 사회순소득(Mh)(이윤¹²⁰+거래수입금¹²¹)이었다. 그런데 ‘변 수입’ 지표를 도입하면서 ‘변 수입’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국가기업이득금’¹²²의 명목으로 재정에 납부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국가기업이득금’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비율을 ‘변 수입’의 50%라고 가정하고 앞의 예에 적용한다. n기업소가 계획을 300% 초과달성하여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변 수입’으로 환산하면 총 80원(Vh 20원+Mh 60원)이 될 것이다. 이 중 ‘국가기업이득금’으로 40원을 재정에 납부하고 남은 40원을 모두 생활비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기업소가 계획을 300% 초과달성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초과달성하는 데 그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150%를 초과달성하는 데 그친다면 사회순소득이 30원 창출되어 ‘변 수입’은 50원(Vh 20원+Mh 30원)이 되어 ‘국가기업이득금’으로 이의 50%인 25원을 재정에 납부하면 생활비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은 25원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300%를 초과달성할 때 얻게 되는 생활비 총액인 40원보다 더 적기 때문에 300%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150%에서 그치게 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2) 경제정책의 변화

‘변 수입’ 지표의 도입은 북한의 경제이론에서 분배이론을 대폭 수정

120) 기업소의 이윤은 ‘국가기업이익금’의 명목(직접세 성격)으로 국가재정에 납부되었다.

121) 도매가격에 부과되는 재정납부금 항목으로 간접세 성격이다.

122) ‘국가기업이익금’은 종전의 기업소가 창출하는 사회소득 중 ‘이윤’ 부분에 부과되는 재정수입 항목인 ‘국가기업이익금’과 다른 개념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재정체계하에서 주된 재정수입 항목은 생산물의 도매가격에 부과되는 거래수입금(간접세 성격)과 국가기업이익금(직접세 성격)이 차지했었다. 그러나 2002.3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업이익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국가기업이익금은 종전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합한 개념이며 ‘변 수입’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재정수입의 항목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변 수입’에 대한 국가기업이익금 부과 비율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선희(2003), 김영수(2004) 참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정책의 운영측면에서 볼 때 ‘번 수입’ 지표의 도입과 생활비의 대폭적인 인상 조치는 화폐재정체계의 변화를 시사한다.

① 사회주의 분배이론의 수정

먼저 ‘번 수입’ 지표의 도입이 북한 경제이론의 어떤 부분을 수정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생산부문 근로자는 개념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의 두가지 성격의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 두가지 형태의 노동은 생산현장에서는 구분되지 않지만 분배형태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즉, ‘자기를 위한 노동’은 ‘노동의 양과 질’에 기초하여 생활비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직접 분배(사회총생산물식의 V 부분) 되는 부분이고, ‘사회를 위한 노동’은 사회순소득(사회총생산물식의 M 부분)의 형태로 재정재원으로 흡수되어 그 중 일부가 배급제,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의 형태로 간접 분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번 수입’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노동을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소(n)에서 ‘번 수입’의 개념은 종전의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한 보상 부분(V_h)과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순소득 부분(M_h)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번 수입’ 지표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를 위한 노동’에 대한 보상까지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번 수입’ 체계하에서는 근로자가 생산현장에서 지출하는 노동이 분배형태상으로는 사실상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

가 ‘사회를 위한 노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면 근로자는 자기가 지출한 ‘사회를 위한 노동’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없게 되고 국가도 근로자에게 배급제, 문화, 교육, 치료 등 각종 사회적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분배이론상의 변화가 현실 경제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배급제의 폐지라고 볼 수 있다.

② 근로소득세 부과 효과

북한은 7.1조치 이전까지는 기업소의 이윤 성격인 사회순소득(M_h)을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여 재정수입금으로 흡수하였을 뿐 근로자가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의 보상인 생활비(V_h)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7.1조치 이전에는 북한에서는 근로소득세 성격의 재정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 수입’ 지표를 채택하면서 북한은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통합하여 ‘국가기업이익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기업이익금’의 징수대상을 ‘변 수입’으로 변경하였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변 수입’은 기업소 근로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 보수(V_h)와 사회순소득(M_h)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변 수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이 과세대상에 편입된 셈이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사회를 위한 노동’을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에 편입시켜 주는 대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여 재정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현금공급의 확대와 인플레이 가능성

근로자의 생활비는 북한의 통화금융체제에서 현금의 주된 공급경로이

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7.1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비를 20배 인상한 조치는 현금의 공급량이 20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전통적 화폐금융체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마비되어 있었다. 즉, 경제난 심화→배급체계 붕괴→주민들의 ‘농민시장’ 참여 확산(부업 및 물자구입)→주민들의 현금보유 선호 성향, 은행예금 기피, 외화 선호 성향, 사금융거래 대두→중앙은행의 통화조절 기능 무력화, 대출자원의 고갈→북한 통화금융체계의 마비로 이어졌다.

7.1조치로 근로자 임금이 이전에 비해 20배정도 인상되었는데 이는 현금통화량의 급속한 팽창을 의미한다. 이렇게 팽창한 현금통화량은 시장에 유입되어 시장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한편, 조선중앙은행은 이미 통화조절 능력을 상실해 있어 늘어나는 현금을 흡수하는 데 역부족인 상태이다. 만일 북한이 금융개혁을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능력 회복, 시장공급 확대 등의 조치 등 인플레이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시장물가 폭등을 방치하게 되면 경제개혁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다. 배급제의 사실상 폐지

배급제하에서 국가는 식량, 소비재, 주택 등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이번에 가격, 집세 등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배급제를 사실상 無用化하였다. 다만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등 이른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회보장제도는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배급체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붕괴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북한이 배급제를 폐지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배급제의 사실상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경제정책의 변화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배급제 폐지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제주체중 하나인 가계의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배급제 폐지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중 하나이다.

둘째, 북한이 강조해 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상징적 제도'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간 북한은 배급제를 '공산주의적 시책'이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제도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를 해체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셋째, 북한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북한은 재정지출 비목중 '인민적 시책비'를 통해 배급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인민적 시책비'는 국가가 주민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국가재정에 반영한 비목이다. 배급제의 폐지는 이러한 '인민적 시책비'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라. 자유시장의 확대에 따른 변화

북한은 자원배분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시장의 성격을 띠는 '종합시장' 및 '물자교류시장'을 새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종합시장은 2003.3월 종전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북한 전역에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¹²³⁾ 종전

123) 조선중앙통신, 2003.6.10

의 농민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농산물 및 토산품만 거래할 수 있었으나 종합시장으로 개편하면서 소비재 성격의 공업제품¹²⁴⁾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물자교류시장은 공장·기업소간 생산재 거래를 위한 시장이다. 이 시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10월 당과 내각의 경제관리 일꾼들에게 지시한 문건¹²⁵⁾에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설립운영토록 지시한 데 따라 새로 도입되는 시장이다. 북한은 이러한 시장의 운영상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소비재 부문에서 종합시장을 개설한 것으로 볼 때 생산재 부문에서도 물자교류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자원배분 경로의 변화

북한은 종합시장 및 물자교류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소비재와 생산재를 포함한 모든 생산물을 자유시장을 통해 모두 배분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주민소비 영역이 ‘국영상점’으로부터 ‘종합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기업소의 생산재 조달 영역도 ‘물자교류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② 생산수단 거래에 대한 국가통제 완화

종전에는 생산수단(원자재, 기계 등)은 국가계획 범위 내에서 유통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업소 사이의 생산수단 거래는 ‘계약’에 의해서만

124) 조선신보, 2003.6.17

125) 중앙일보, 2002.8.2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는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해 '무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북한이 생산수단의 거래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했던 이유는 생산수단이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하고 현금결제까지 허용하게 되면 계획당국이 생산수단의 유통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인민경제계획을 의도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생산수단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면 이른바 '자본'의 사유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주의 소유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물자교류시장을 도입하여 생산재도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도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⁶⁾ 이처럼 국가의 통제 밖에서 이른바 '자본'이 거래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물자교류시장을 개설한 것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생산수단의 유통을 국가가 장악할 수 없게 되면 계획당국이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 하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된다.

③ 개인 상업의 부분적 허용

1990년대 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종합시장은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한 종래의 농민시장(또는 장마당)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즉,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대체됨으로써 그간 농민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장소를 바꿔 종합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북한이 주민들로 하여금 종합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26) 조선신보(2003.12.22)

조치는 ‘개인상업’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이는 지난 수십년간 개인상공업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던 북한의 사회주의 소유제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소유제는 1950년대말에 완성되었다. 즉,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였다.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를 구축하면서 종전의 개인 소유 상가를 전부 국유화하였으며 이후 개인상업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 소유제 구축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종합시장에서 북한주민이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간 농민시장 이외에는 일절 인정하지 않았던 개인상업을 허용하는 조치로서 북한 사회주의 소유제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④ 가격자유화의 범위 확대

가격자유화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단행해야 하는 조치이다.

7.1조치 이후 북한의 가격체계는 종합시장과 물자교류시장의 자유가격과 국정가격이 공존하는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격체계간 경쟁구도하에서 북한이 종합시장과 물자교류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면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의 적용 범위는 더 넓어지고 국정가격의 적용 범위는 더 좁아지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시장의 확대를 암묵적인 가격자유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격자유화의 적용범위를 조금씩 넓혀나가면 국정가격체계는 자연히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마.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의 사실상 폐기

북한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은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맞물리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연결 시킴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7.1조치를 계기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 수입' ($Vn+Mn$)¹²⁷⁾ 지표는 기업소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로써 종전의 계획당국이 기업소에 대해 생산계획을 하달하여 사전에 계획된 성과를 낼도록 통제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기업소 입장에서 '변 수입'을 극대화하면 더 많은 분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순소득 (Mn)을 극대화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극대화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어떤 제품을 얼마나 생산하고 '변 수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당기말에 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지 계획당국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²⁸⁾

둘째, 기업소의 생산목표를 종전의 70%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생산목표는 기업소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2.8직 동탄광'의 경우 정량계획의 70%만 달성하면 기본생활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을 하면 누진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¹²⁹⁾ 즉, 종전에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따라 기업소에 대해 생산목

127) Vn : 기업소(n)의 근로자 생활비, Mn : 기업소의 사회순소득

128)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의해 만약 계획당국이 기업소에 대해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필요한 원자재와 노동력을 보장해 주는 경우에는 계획당국은 기업소의 생산 활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129) 조선신보(2002.10.16)

표의 100%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기업소가 경영의 자율성을 갖기 어려웠으나, 7.1조치 이후 기업소의 생산목표가 종전의 70%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소는 최소한 30%의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가격 및 임금체계의 변화로 인해 계획당국이 원천적으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은 모든 생산단위들의 생산계획이 수량과 금액면에서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 작성되는데 7.1조치로 가격과 임금이 모두 변경되어 수량과 금액면에서 서로 맞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인민경제계획의 수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북한은 예년과 달리 2003년 및 2004년의 재정규모를 금액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가격과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무의미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바. 재정규모와 수입·지출 구조 변화

‘7.1조치’는 북한재정의 규모와 수입지출 구조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재정 규모의 변화는 7.1조치에서 가격 및 임금 등 모든 명목변수가 이전에 비해 대폭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즉, 북한의 2002년 예산이 7.1조치 이전 가격 및 임금 기준으로 221억원이지만 7.1조치 이후의 가격과 임금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훨씬 큰 수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및 2004년의 경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정규모를 금액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7.1조치 이후의 가격과 임금을 적용한 재정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7.1조치에서 가격과 임금이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몇 배 인상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임금인상폭에 해당하는 20배 정도 인상되었다고 가정하면 2002년 예산은 4,420억원

(221억원x20)으로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7.1조치 이전과 이후의 북한의 재정규모를 양 시점 사이에 서로 다른 가격과 임금을 적용하여 비교한다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7.1조치 이전의 가격과 임금 즉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7.1조치'가 북한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과정에서 7.1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재정 수입 또는 지출이 증가, 감소한다는 표현 속에는 불변가격을 적용할 때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미리 언급해 둔다.

먼저 7.1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재정수입 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관해 설명한다. 재정수입의 구조 변화는 '변 수입'에 따른 분배제도 시행, 종합시장 도입, 협동농장에 대한 토지사용료 징수, 집세 및 공과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에 기인한다.

'변 수입'에 따른 분배제도의 도입은 북한의 재정수입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기업소(n)에서 창출되는 사회순소득($M_n = \text{국가기업이익금(이윤)} + \text{거래수입금}$)의 전액이 국가재정에 흡수되었으나 '변 수입'에 따른 분배 제도의 도입으로 '변 수입'($V_n + M_n$)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국가기업이익금'을 국가재정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즉, '변 수입'($V_n + M_n$)에 대한 국가기업이익금의 부과비율을 $t(0 < t < 1)$ 라고 하면 해당 기업소는 $t(V_n + M_n)$ 를 국가기업이익금으로 국가재정에 납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 납부방식을 예전과 비교해 보면 전에는 근로자의 생활비(V_n)에 대해서는 재정납부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근로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도 tV_n 만큼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사회순소득(M_n)의 거의 전부를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 명목으로 재정에 흡수하였으나 이제는 그 중 일부인 tM_n 만큼만 납부하도록 한 셈이다. 이러한 재정 수입의 변화를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법인세를 인하($M_n \rightarrow tM_n$)하고 근로소득

세를 새로 부과($0 \rightarrow tV_h$)하면서 두가지 세금(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동일한 세율(t)을 적용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북한은 종합시장을 도입하고 협동농장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갖게 된다. 종합시장은 과거 암시장의 성격을 가졌던 농민시장과 달리 합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주민들에 대해 자릿세와 함께 거래세 또는 사업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부과되었던 토지사용료가 7.1조치를 계기로 협동농장에도 부과됨으로써 재정수입의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울러 거의 무상에 가까웠던 집세와 전력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이 7.1조치를 통해 대폭 인상됨으로써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재정수입원을 확충하게 되었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북한 재정수입의 증가 여부는 '변 수입'에 따른 분배 제도하에서 각 기업소에 새로 징수하는 '국가기업이득금'이 과거에 징수하던 '사회순소득'보다 더 클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북한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사회순소득 징수액보다 국가기업이득금의 징수액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면 설령 토지사용료, 집세, 각종 공과금 징수를 통해 재정수입을 추가적으로 더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수입 총액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변 수입'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공장, 기업소의 '변 수입' ($V_h + M_h$) 규모가 예전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새로운 성과금제도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 도입한 국가재정 납부금인 '국가기업이득금' ('변 수입'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예전의 국가재정 납부금인 사회순소득($M_h = \text{국가기업이익금(이윤)} + \text{거래수입금}$)보다 더 적게 부과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사내유보를 확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업이득금'은 '사회순소득'보다 더 적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소들이 새로운 성과급제도하에서 더 많은 분배를 받기 위해 생산성 향상, 판로 개척,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이윤인 사회순소득(Mh)을 더 많이 창출하게 되면 기업소의 '변 수입' 규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가기업이득금'이 '사회순소득'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에서 감세정책이 세수를 단기적으로는 감소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가시킨다는 원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7.1조치 이후 북한의 재정수입은 이전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감소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7.1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재정지출 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관해 설명한다. 재정지출 구조 변화는 배급제 폐지, 기업소 독립채산제 강화, 기간산업(전력, 석탄, 수송, 농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영향을 받는다. 배급제 폐지는 재정지출 비목인 '인민적 시책비'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강화는 기업소에 대한 재정지원을 감소시켜 재정지출 비목인 '인민경제비'의 지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해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는 '인민경제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7.1조치 이후 북한의 재정지출 규모는 감소할 수 있는 요인과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7.1조치로 인해 북한의 재정수입은 단기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이 혼재하기 때문에 다소 불명확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해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대폭 늘린다면 재정지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이 발표한 예산증가율을 토대로 7.1조치 이전 가격기준으로 2003년 재정규모를 산정해 보면 수입 및 지출이 각각 253.1억원으로 2002년(221.7억원)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으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예

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수입에 ‘인민생활공채’ 발행분(변경된 가격기준으로 400~500억원 규모)까지 포함시킨 것을 볼 때 실제 재정수입 규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재정지출은 오히려 전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14〉 최근 북한의 재정 수입 및 지출 내역

(억북한원, %)

	2000			2001			2002			2003	
	예산 편성 (’00.4)	예산결산 (’01.4)		예산 편성 (’01.4)	예산결산 (’02.3)		예산 편성 (’02.3)	예산결산 (’03.3)		예산편성 (’03.3)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¹⁾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¹⁾	전년 대비 증감률
수입(A)	204.1 (100.0)	209.0 (100.0)	5.6	215.7 (100.0)	216.4 (100.0)	3.4	221.7 (100.0)	222.8 (100.0)	3.0	253.1 (100.0)	13.6
거래 수입금	93.2 (43.2)
국가기업 이익금	71.0 (32.9)	5.0
협동단체 이익금	3.3
사회보험료 수입	6.7
토지사용료 수입	3.7
지출(B)	204.1 (100.0)	209.6 (100.0)	4.7	215.7 (100.0)	216.8 (100.0)	3.5	221.7 (100.0)	221.3 (100.0)	2.1	253.1 (100.0)	14.4
인민 경제비	..	84.0 (40.1)	91.7 (42.3)
인민적 시책비	..	80.1 (38.2)	82.6 (38.1)
군사비	..	30.0 (14.3)	..	31.3 (14.5)	31.2 (14.4)	..	31.9 (14.4)	32.4 (14.9)	..	39.0 (15.4)	..
국가 관리비	..	15.5 (7.4)	11.3 (5.2)
재정수지 (A-B)	0.0	-0.6	-	0.0	-0.4	-	0.0	1.5	-	0.0	-

주: 1) 북한이 발표한 증가율을 이용하여 계산

2) ()내는 구성비(%)

VI. 향후 과제

‘7.1조치’는 북한이 수십년간 채택해 온 사회주의 재생산체계(생산-분배-소비-축적)를 공식적으로 해체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새로 도입한 ‘변 수입’에 따른 분배 제도는 북한의 전통적인 재생산체계를 구성하는 생산-분배-소비-축적체계 전반의 균열을 초래한다. 또한 배급제도의 사실상 폐지 조치는 기존의 분배 및 소비체계의 근간을, ‘종합시장’과 ‘물자교류시장’의 도입은 기존의 유통체계의 근간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변 수입’에 따른 분배 제도하에서는 기업소(n)들이 생산성 제고, 원가 절감, 판매량 확대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실현되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전적으로 기업소에 부여하는 생산계획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임금)도 이른바 ‘변 수입’($V_n + M_n$)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분배와 소비 규모를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사전적으로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를 계획화할 수 없게 되면 ‘국민소득’($V + M$)에서 축적으로 이용되는 몫도 계획화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 수입’ 제도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북한이 전통적으로 운영했던 생산-분배-소비-축적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배급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합시장’을 도입한 것은 주된 주민소비 영역이 국영시장(국영상점)으로부터 자유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종전의 국영시장에서는 국가가 상품의 공급량, 품질, 가격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으나 ‘종합시장’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처럼 국가계획에 입각하여 생산, 분배, 소비, 축적체계의 지탱이 불가능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그간 북한경제를 지탱해 온 계획경제체제의 기본틀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있음을 뜻한다. 더욱이 북한이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7.1조치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7.1조치는 북한이 기존의 고장난 사회주의적 재생산체계의 구성요소를 들어내고 그 부분을 시장경제적 요소로 대체함으로써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출발점이다. 이런 점에서 7.1조치는 북한이 추진해 나갈 개혁개방의 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다음에서는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거나 반드시 단행해야 할 개혁개방의 과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적인 경제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개인상공업의 활성화, 금융 및 재정부문 개혁, 시장환경 조성, 노동시장 도입 등을 중심으로, 개방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북한의 경제개혁 확대

가. 개인상공업의 활성화

북한은 전통적으로 개인상공업을 小상품경제 형태(공업부문 자영업), 私자본주의 경제형태(공업부문 기업), 개인상업(상업부문 자영업 또는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 소유제의 완성 시기인 1958~59년에 일소하였으며 이후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북한은 종합시장에서 장사하는 주민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인상업을 허용하고 이발소, 미장원 등 개인 서비스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소유제를 완화하여 개인상공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인상공업의 확대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다양화와 물자의 원활한 유통을 제고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인상공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북한 헌법에서 불허(제20조)하는 사항으로 만일 이를 허용하려면 헌법까지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개인상공업을 확대한다면 개인에게는 생산수단의 사용권만을 인정하고 상공업 협동조합(단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북한이 개인상공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기존의 사회주의 소유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시장경제 개혁 의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분기점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나. 금융 및 재정개혁

‘7.1조치’의 전체 맥락을 보면 금융개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북한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 ‘7.1조치’에서 금융개혁을 누락하였거나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은밀히 진행하고 있을 개연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2002.9.2일 북한 무역성 김용술 부상이 동경 국제포럼의 ‘북한경제 세미나’에서 2002.7월 이후 ‘신탁은행’이란 새로운 분야의 은행이 설립되었다고 언급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은행제도 개편을 단행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7.1조치’가 금융개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7.1조치'를 계기로 북한은 심각한 통화건인 인플레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근로자 월급을 이전에 비해 약 20배 정도 인상한 조치는 북한의 전통적 화폐금융체계하에서 현금공급량(유량)이 매월 20배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통화조절 능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어 확대 공급된 현금이 중앙은행으로 환수되지 않고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북한이 이러한 통화건인 인플레이를 억제하지 못하여 시장물가가 폭등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더욱 악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둘째, '7.1조치'에서 새로 도입한 성과급제도('번 수입'에 따른 분배)는 이전까지 국가재정에 흡수하던 자금중 일부를 기업소 내부유보로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기업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자금의 재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소에 대한 국가자금의 지원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7.1조치 이후 북한 기업소들의 자금압박은 7.1조치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소들은 이전까지 국가재정으로부터 지원받아온 생산자금은 은행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단일은행제도하에서 이러한 기업소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재원은 북한주민들의 예금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거의 고갈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기업소 대출수요에 대응하려고 나선다고 하더라도 통화관리 업무와 상업금융 업무가 급증하여 양쪽의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7.1조치와 함께 상업은행의 신설을 통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금융개혁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90년대초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북한의 '7.1조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북한이 취하게 될 금융개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1) 단일은행제도 해체

기존의 단일은행제도를 해체하기 위하여 상업은행을 새로 설립하고 중앙은행의 상업은행 기능을 상업은행으로 이관하여 민간보유 현금을 예금수신의 형태로 환수하고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통화조절기능을 회복함으로써 통화 건인 인플레이에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임금 인상에 따른 현금통화량 증가로 통화건인 인플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중앙은행이 주민예금을 유치하여 민간보유 현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환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대안으로 상업은행을 새로 설립하여 이 은행이 수신이자율 인상, 자유로운 예금입출금 보장, 예금자 비밀보호, 여수신 금융상품의 개발 등 대주민 금융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이를 통해 주민보유 현금을 예금형태로 제도금융권으로 환수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능력이 회복되어 임금 인상에 따른 통화 건인 인플레이 압력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재정자금의 금융자금 전환

기업자금을 금융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적자 압력을 완화해 나가려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기업소를 지원해 온 기본건설자금 등을 상업은행의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할 경우 재정적자를 완화할 수 있다. 북한의 국영기업소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규모는 기존의 북한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은행과 합영 및 합작은행에 대한 대부규정¹³⁰⁾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자금의 금융자금 전환은 북한의 축적체계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전통적 축적체계하에서 경제내 모든 축적(투자) 재원은 국가재정을 원천으로 하였으며 주민예금은 축적의 원천이 되지 않았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경제의 소비와 축적은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V+M)을 재원으로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의 구성항목인 사회순소득(M)을 국가의 재정수입으로 집중시키고 이중 일부를 인민경제사업비 및 기본건설자금 등의 비목으로 지출하여 축적(국민소득의 25%)을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가재정에 의해서만 축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북한은 ‘내부축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축적체계하에서는 주민예금이 축적재원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자금을 금융자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은행은 주민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소에 대출하게 되고 기업소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게 되므로 결국 주민예금이 경제의 중요한 축적(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3) 은행 담보제도 및 기업소 파산제도 도입

상업은행이 기업소에 대해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 담보제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기존 담보제도는 기업소가 은행 대출을 얻기 위해서는 대부조직의 통제원칙(계획성, 반환성, 목적지향성, 보장성)중 ‘보장성 원칙’에 의해 물자, 생산적 비용, 화폐재산 등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담보 없이 대출금 연체시 벌

130) 현재 북한의 대출관련법규는 외국투자은행의 합작 및 합영기업에 대한 대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자본금의 25%까지, 은행의 총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배까지이고, 기업소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한 은행으로부터 자기자본의 25%까지이고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은 자기자본의 2배까지로 되어 있다.(사회안전출판사(1997), 「민사법 사전」, p.178)

칙성 이자율을 부과하는 정도에서 운영해 왔다. 이러한 느슨한 담보제도를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은행의 기업소 대출을 확대하면 반환의무에 대한 기업소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북한이 담보제도를 어떤 형태로 마련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북한의 소유권제도하에서 기업소가 점유하고 있는 설비, 토지, 채권 등은 모두 '전인민적 소유'로 되어 있어 이것을 은행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소의 설비 및 토지 등에 대해 '사용권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은행 대출에 따른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¹³¹⁾

은행담보 제도는 기업소 파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소를 실제로 파산시킬 수 있을 때 은행담보 제도가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제도의 도입은 기업소들로 하여금 경영 및 생산효율을 제고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4) 채권시장 구축

금융개혁 과정에서 채권시장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금융개혁을 통해 상업은행이 금융자금 공급에 나서게 되면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물로 적격증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금융개혁 과정에서 국공채 시장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131) 북한의 법개념에서는 '점유권'은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사회안전출판사, 「민사법 사전」, p.473). 이러한 맥락에서 박홍엽(2001)은 "국영기업소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유처분과 기업소득 전반에 대한 '점유권'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생산수단에 대한 '이용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기업소득의 일정부분을 가질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선진 금융기법 도입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일은행제도를 해체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자본시장의 확충 및 개방, 상업금융 기법의 습득과 개발,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기법 습득, 금융인력의 양성, 외국의 금융개혁 사례연구 등으로 금융개혁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북한의 금융개혁은 단순히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중앙은행의 상업은행 기능을 이관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조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매우 복잡한 개혁조치들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소에 대한 설비 및 토지 사용권의 가치 부여, 기업소 파산제도 도입, 채권시장 도입 등의 조치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금융개혁 방향은 경제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다. 시장환경 조성

북한은 '종합시장' (소비재) 및 '물자교류시장' (생산재)을 통해 점진적으로 가격자유화를 도모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플레이 압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인플레이는 앞으로 북한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는 물자공급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보유 현금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이 지속되는 데다 주민소비의 주된 영역이 국영시장으로부터 자유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물자 수급차질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플

레 압력이 새롭게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재정, 산업정책을 통한 물자 수급조절, 통화정책을 통한 통화량 조절 등 인플레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당국은 시장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그동안 暗市場에 대해 가격, 품목, 시장참여자 등을 단속하던 습성으로 인해 북한당국이 종합시장 및 물자교류시장에 개입하여 단속하거나 통제하려고 할 경우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울 것이다.

셋째,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의 자의적인 시장개입 방지, 시장활동 보호, 시장질서 유지, 불법행위 규제 등을 위한 경제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 노동시장 도입

노동력을 각 경제부문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마르크시즘의 영향으로 '노동력'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데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북한에서는 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가 노동계획에 의거하여 경제 전체의 노동력을 배치해왔으나 이는 노동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북한은 앞으로 노동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 허용, 기업소의 직원 고용 및 해고의 자율성 부여, 임금교섭의 자율성 부여, 시장경제적 노동관련 법규 정비 등 사회, 문화, 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남북경협의 확대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북한이 7.1조치를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현존하는 생산력과 자원의 잠재적 효율을 표출시켜 경제상황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장, 기업소들이 ‘번 수입’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예전과 동일한 노동력과 생산수단으로 더 많이 생산하거나 물자교류시장이 개설되어 창고에 묵혀두고 있던 자재예비(재고)를 시장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기존의 생산력과 자원만을 활용하더라도 경제전체의 생산은 늘어날 수 있다. 즉, 7.1조치를 계기로 경제내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지만 표출되지 않고 숨어있는 생산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경제 상황을 보면 그간의 경제난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생산설비는 노후화되었고 기업소의 재고는 고갈된 상태에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7.1조치는 북한경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7.1조치라는 새로운 경제운영방식을 통해 북한경제는 생산력과 자원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빈약한 생산력과 자원의 토대 위에서 효율성만 제고한다고 해서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외부세계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만일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 등 외부세계로부터 확보한 생산 자금과 물자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 북한의 새로운 경제운영체계 내에 공급해 줄 수 있다면 북한경제의 생산력은 급속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7.1조치를 통해 경제상황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북한의 개방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개방정책의 방향을 남북

경협 활성화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으로 압축시켜 각 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남북경협의 활성화:

남북경협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일반적인 효과는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하게 되어 남북한이 모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북경협은 경제개혁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얻고 있는 경제적 이득은 경화收入과 현물收入으로 구분된다. 논의의 구체성과 편의를 위해 남북경협으로부터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k = h + z \quad (28)$$

식 (28)에서 k 는 북한이 남북경협으로부터 얻는 연간 경제적 이득의 총액을, h 는 북한이 남북경협으로부터 얻는 연간 경화수입을, z 는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얻는 연간 현물수입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식 (28)에서 경화수입(h)의 발생원천은 상업적거래, 위탁가공교역, 대북투자 등이고 현물수입(z)의 발생원천은 남한의 대북 물자지원이다. 식 (28)의 연간 경화수입 규모(h)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h = (xm) + \rho c + i + \epsilon \quad (29)$$

식 (29)에서 x 는 상업적 거래에 기초한 북한의 연간 대남 반출액(위탁가공 교역 제외), m 은 상업적 거래에 기초한 북한의 연간 대남 반입액, c 는 위탁가공교역에 기초한 북한의 연간 대남 반출액(완제품), ρ 는 위탁가공업체가 북한으로부터 남한에 반입하는 완제품의 반입단가(개당 반입원

가)중 북한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임가공비의 비중, i 는 대북투자기업(KEDO사업 포함)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연간 현금 총액(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 착수금 등 제외)이다. ϵ 은 북한의 기타 경화 수입으로 예를 들면 현대가 금강산 사업을 시작할 때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대가(총 9억 4,200만달러)중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금액,¹³²⁾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지역에서 지출하는 현금 등이다.

식 (28)과 (29)에 적정한 수치를 대입하면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획득하는 경화수입과 현물조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2003년 수치를 적용하여 북한이 남북경협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을 계산해 보면 경화수입(h)은 약 1.7억달러¹³³⁾이고 현물수입(z)은 2.7억달러에 달한다.¹³⁴⁾ 따라서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얻는 연간 경제적 이득(k)은 총 4.4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제사회(남한 제외)의 대북지원 총액(2003년 1.6억달러¹³⁵⁾)의 2.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32) 한국토지공사가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토지 임차료중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한국토지공사는 토지 임차료조로 1단계 100만평에 대한 순수한 토지 임차료 성격인 330만달러(1㎡당 1달러)와 지상장애물 철거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1,6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으며 1,600만달러중 상당액은 현물로 지급할 예정이다.

133) $x=1.77$ 억달러, $m=0.46$ 억달러, $\rho=0.15$, $c=1.11$ 억달러, $i=0.18$ 억달러, $\epsilon=0$ 을 대입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x , m , c 는 통일부의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2003.12월)에서 추출하였고 ρ 는 대북 위탁가공업체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 추정된 수치이며 i 는 현대아산(금강산사업), 한전(KEDO사업), 평화자동차 등의 대북 현금지급규모를 합산한 수치이다. 한편, 2003년의 경우 $\epsilon=0$ 으로 가정한 것은 현대의 금강산 사업 대가는 북측과 새롭게 체결한 합의(2001.6.8)에 따라 현재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한국토지공사가 지급할 개성공단 임차료는 2004년 이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이 북한내에서 지출하는 현금 규모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4) 이 수치는 통일부의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2003.12월)으로부터 추출한 수치로 남한의 대북반출 총액 가운데 이른바 비거래성 반출 총액에서 대북투자(금강산사업, KEDO사업, 기타 협력사업)와 관련된 대북반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순수한 대북물자지원 금액을 말한다.

135)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2003.12월), p.42.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지원받은 쌀, 비료 등 물자는 소비와 생산에 직접 이용할 것이다. 반면, 남북경협을 통해 확보한 경화는 주로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수입에 따른 결제자금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¹³⁶⁾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7.1조치 이후 북한은 급증하는 원자재 및 소비재 수요를 국내 생산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 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물자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경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7.1조치 이후 더 많은 경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보다 많은 경화수입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남한을 겨냥한 개방정책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2002년 하반기 들어 북한은 신의주, 개성, 금강산을 동시에 경제특구로 공식 지정함으로써 기존의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함께 북한은 전방위적인 개방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런데 이중 두개 거점인 개성과 금강산 특구의 설치에 남북경협의 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즉, 개성과 금강산을 남한에 개방한 것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경화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총 850만평 규모)이 완공되면 여기에 진출한 남한기업으로부터 임금 및 기업소득세 등의 형태로 거액의 경화자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이 확보할 수 있는 경화는 1단계사업(100만평)이 가동되는 4년차에는 연간 6천만달러, 2단계사업(230만평)이 가동되는 7년차에는 연간

136)

북한의 대외교역(남한 제외) 추이

(단위: 억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9.1	5.6	5.1	5.6	6.5	7.4	7.8
수입	12.7	8.8	9.6	14.1	16.2	15.2	16.1
무역수지	-3.6	-3.2	-4.5	-8.5	-9.7	-7.8	-8.3

1.3억달러, 3단계사업(620만평)이 가동되는 9년차에는 연간 6억달러를 얻게 되고 이후 기업소득세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최종적으로 17년차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간 22.8억달러를 얻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¹³⁷⁾

또한 북한은 현재 금강산 특구로부터 관광객 1인당 10~50달러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2003년 기준으로 북한은 순수한 입장료로 약 750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다. 현재까지 북한이 금강산 특구로부터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화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앞으로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종합관광단지를 건설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경화수입의 규모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경화수입의 증가를 식 (29)에서 보면 i (대북투자기업이 북한에 지불하는 현금)의 증가로 h (북한의 경화수입)가 증가하게 되는 원리이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개성 및 금강산 특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경화획득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당장 필요한 경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적당치 않다는 점이다. 즉,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수년을 기다려야 하고 금강산 관광객 수도 단기간에 급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단기적으로 경화수입을 늘리기 위한 남북경협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확대 방향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남북간 직교역 체제를 조기에 가동시키는 데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경협 4대 협정(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이 발효된 상태이고 개성공단내에 직교역사무소의 설치를 준비중에 있다. 또한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도 거의 완공된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간 직교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토대는 거의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교역체제가 가동되면 북한의 대남

137) 박석삼(2004), p.41 참조

반출과 위탁가공교역이 크게 활성화되어 북한이 남북경협으로부터 얻는 경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식 (29)으로 설명하면 x (상업적 거래에 기초한 북한의 대남 반출액)와 c (북한의 위탁가공교역에 기초한 대남 반출액)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h (북한의 경화수입)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평양, 백두산 등 북한 내륙지역에 남한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남한사람의 내륙지역 관광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화 획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화수입은 식 (29)에서 ϵ 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 기업이 남한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법이다. 북한기업의 대남투자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으나 음식점, 여행사, IT관련 기업 등 정치색을 배제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북한기업이 남한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북한기업의 대남투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남북한 쌍방지역에 무역대표부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나아가 상대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변 안전보장 및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처리 문제 등과 관련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이 얻는 경화수입은 식 (29)에서 ϵ 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넷째, 남한 기업의 북한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 남한 유통업체의 진출을 허용한다든지 북한의 국영 유통망을 남한 기업에 매각한다든지 북한 기업을 남한 기업에 매각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이 평양 제1백화점을 중국기업에 매각하였다는 보도¹³⁸⁾ 등을 보면 이러한 유통업체를 남한기업에게 매각할 가능

138) 중국의 관영 경제주간지「재경시보」(2004.8.16)에 따르면, 중국의 중취그룹(中旭集團)이 평양 제1백화점에 5천만위안을 투자하였으며 그룹의 쩡창바오(曾昌飈) 회장은 온저우(溫州) 상인 300여명과 함께 제1백화점 경영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KOTRA, 2004.8.21)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의 경화수입은 식 (29)에서 ϵ 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한 경화수입을 늘려나가는 대신 현물수입은 줄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즉, 식 (28)에서 h (경화수입)를 늘리는 대신 z (현물수입)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경협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남북경협에서 얻는 이득중 경화와 현물의 비율은 40:60(2003년 기준)으로 현물이 더 많으나 북한이 경화수입을 늘려나간다면 동 비율이 역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최근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북한의 예전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북한은 그간 남측에서 남북경협을 확대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려는 의도로 보려는 성향이 있었다. 그러나 7.1조치 이후에는 남북경협을 확대하여 더 많은 경화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체제안전을 위해서도 더 유리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이러한 자세 변화는 남한 입장에서 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은 북한경제뿐만 아니라 남한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한은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사업 등 대규모 경협사업을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의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대남접근 의지를 고양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한은 북한이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하거나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지원과 시장경제 경험의 전수를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확대:

북한은 7.1조치 이후 급증하는 원자재와 소비재의 수입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제개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남한 제외)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러시아와 및 중국과의 관계조차 소원해지는 등 10여년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북한의 대외관계에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다. 즉, 북한은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나아가 유럽, 동남아, 미주지역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새로 수립하는 등 대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중관계는 1961.7월에 체결된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입각하여 경제, 군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중수교(1992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화결제 요구(1992년)와 개혁개방 촉구(1994년 등소평) 등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러나 2000~2001년중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2000.5.29~31. 2001.1.15~20)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의 장쩌민 주석의 북한 답방(2001.9.3~5)을 거치면서 양국은 기존의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재확인하고 관계를 복원하기에 이르렀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소련 해체(1991년)를 계기로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북한은 원래 소련과 1961.7월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에 입각하여 양국간 경제, 군사적 협력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 해체 후 이 조약을 러시아와 새로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러관계는 표류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후 10년 가까이 지난 2000.2월 북한과 러시아는 비로소 '조러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고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2000.7월),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답방(2001.7.26~8.18) 등을 거치면서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였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면서 2000~2001년

중 9개 유럽국가(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터키)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기존 유럽연합 15개국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한 상태이다. 또한 2001년에는 캐나다, 브라질, 쿠웨이트, 바레인,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시아, 중동, 미주지역의 국가들과도 수교하였다.

최근 수년간 북한이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으로서 대외경제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당장 필요한 원자재 및 소비재를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조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중 북한에 실질적으로 경제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로 압축된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7.1조치 이후에는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및 소비재 수입수요가 예전보다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자본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예를 들면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과 최근 평양 제1백화점을 중국 기업에 매각한 사례 등은 중국자본을 유치하려는 북한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북러간 경제협력은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러관계의 정상화를 계기로 앞으로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러간 경제협력은 북한의 중요 산업시설이 구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의 산업시설에 대한 설비, 부품과 원자재를 제공하게 된다면 북한의 산업생산량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방국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서방자본을 유치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최근에

북한이 다수의 서방국가들과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이들 국가들이 당장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외교관계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과 관련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국가들과의 접촉 빈도를 늘려나가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독일문화원의 평양 진출(2004.6월), 북한-EU 합동 워크숍 개최(2004.8.31~9.4), 영국계 법률회사의 평양 진출(2004.9)¹³⁹⁾ 등을 허용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당장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로부터 현물수혜의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대외경협을 통한 경화를 조달하여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려는 의도이다. 그간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은 세계식량기구, 유엔개발계획 등 다자간 국제기구를 통한 현물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각 국과의 쌍무적인 경제 협력을 통한 차관 도입, 자본 유치, 교역 확대 등을 통해 경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이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에게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간 북한과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1990년 당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체제전환에

139) 영국 변호사 마이클 헤이가 북한정부와 함께 '헤이 켈브&어소시에이츠' 라는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고 보도(Financial Times, 2004.9.4)

나섰지만 유독 북한만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개혁개방의 흐름을 거부하였던 데 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을 거추장스러운 ‘옛 친구’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제 북한은 7.1 조치를 통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경험했던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암묵적으로 이들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어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중인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이들 국가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제외적 관심사, 예를 들면 인권문제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방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서방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서방국가에 대해 원하는 것(경제지원)만 얻어내고 서방국가들이 북한에 원하는 것(인권문제 등)을 묵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기존의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 외자를 도입하려면 먼저 대외신용도부터 회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의 외채 규모는 1998년 기준으로 121억달러에 달한다. 북한이 당장 이러한 거액의 외채를 상환하기에는 벅찰 것이다. 그러나 외채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를

방치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은 외채문제를 방치하거나 외면하기보다 이해 당사국들을 상대로 외채 탕감 및 상환 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개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개발자금의 규모는 회원 가입 후 5~7년간에 걸쳐 36~5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¹⁴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추진 경위를 보면, 1997년에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2월)하고 이례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mission)의 입국(1997.9월)을 수용하는 등 회원 가입을 준비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지지가 절대적이다.¹⁴¹⁾ 한편, 이들 국가들은 북한 핵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의 회원국 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핵문제의 해결은 북미, 북일관계의 개선 및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섯째, 핵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금융계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의 가입문제와 별개로 북한의 개방정책 의지를 서방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

140) 박석삼(2003.11), p.393 참조

141) IMF 회원국의 투표권 비중(2003.4월말 기준)을 보면, 미국이 17.11%로 가장 높고, 일본이 6.14%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투표권 비중은 독일(6.0%), 프랑스(4.95%), 영국(4.95%)의 투표권을 모두 합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ADB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투표권 비중(2002년말 기준)이 각각 12.9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계의 일원으로 참여해 보려는 자세는 개방정책에 대한 서방자본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북한은 ADB, IMF에 대한 회원 가입 의사 표명, 세계은행의 금융경제 개혁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청, IMF의 경제조사단(mission) 수용 등의 방식으로 국제금융계와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출판사, 「우리나라 인민경제 발전:1945~1958」, 평양, 1958.
- 김영수, “국가기업리득금과 그 합리적 동원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4,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김정일,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제10권, pp.161~196, 조선노동당출판사, 1990.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노동당출판사, 평양, 199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인민경제계획작성에서 부문사이연계모형의 이용」, 평양, 198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경제백서」, 200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0-2000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년호.
-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92.
- 리명서, 「사회주의 재생산의 합리적 조직」,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91.
-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변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3,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리원경, 「사회주의 화폐제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86.
- 림현숙, “사회주의 사회에서 등가성원칙에 기초한 교환거래의 중요특징”, 「경제연구」 2001,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각권, 평양.
-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외화 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 2002-7, 한국은행, 2002.4

- 박석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공여 가능규모 추정”,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3-15, 통일연구원, 2003.
- 박석삼,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183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 박영근, 김철제, 리해원, 김하광, 「주체의 경제관리리론」,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92.
- 박홍엽, “국영기업소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과 그 표현”, 「경제연구」 2001,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1999.
-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평양, 1995.
- 사회안전출판사, 「민사법 사전」, 평양, 1997.
- 신도현, “경제적 효과성을 잘 타산하는 것은 실리보장의 중요담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3년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2003.
-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이용”, 「경제연구」 2003,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유수복 편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 경제학2~3」,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66.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평양, 각권.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평양, 각권.
- 조선노동당출판사, 「주체의 정치경제학 독본」, 평양, 1999.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46~196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 통계집」, 국립출판사, 평양, 196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각년호.
- 전명식, “군협동농장위원회 단위 독립채산제의 본질적 특성”, 「경제연구」 1999,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 최중극, 「사회주의 경제와 균형」,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1990.
- 최중극, 「인민경제 부문 구조와 경제발전 속도」, 사회과학원출판사, 평양, 1965.
-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상),(하)」, 비봉출판사, 2001.
-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 비교」, 2002.12.
- 통일부, 「2000북한개요」, 1999.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각권.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 한국은행(<http://www.bok.or.kr>),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보도자료), 2002.8.
- 한규수, “축적과 소비에 나서는 균형 형성 모형화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47권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1.
- 한득보,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2)」,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92.
- Acharya, A. and Spagat, M., “Individual Savings and Monetary Overhang: A Model with Empty Shelves and Parallel Markets” . *Economic Systems*, Vol.17, Issue 3, pp.213~232. 1993.
- Calvo, G. A. and Frenkel, J. A., “Obstacles to Transforming Centrally-Planned Economies: The Role of Capital Market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WP/91/66*, July 1991.
- Chawluk, A. and Cross, R., “Measuring of Shortage and Monetary Overhang in the Polish Econom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9, Issue 1, February, pp. 105~115, 1997.

- Cottarelli, Carlo and Blejer, Mario I, "Forced Savings and Repressed Inflation in the Soviet Union: Some Empirical Result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WP/95/55, June 1991.
-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Fact Finding Report", December 1997.
- Kim, Byung-Yeon, "The Income, Savings, and Monetary Overhang of Soviet Household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27, Issue 4, December, pp.644~668, 1999.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Lin, Shoukang, "A Monetary Model of a Shortage Econom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Papers, Vol.40, Issue 2, June, pp.369~394, 1993.
- Sahay, R. and Vegh, C. A., "Inflation and Stabiliz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An Analytical Interpretation of the Evidence", Journal of Policy Reform, Vol.1, Issue 1, pp.75~108, 1996.

금융경제총서 발간목록

- | | |
|--------------------------------------------------------|-----------------------|
| 제1호 IMF/IBRD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2000. 2) | 이종규 |
| 제2호 경제위기 : 원인과 발생과정(2000. 11) | 이종규 |
| 제3호 경제정보의 공개와 경제조정(2001. 1) | 박형근 |
| 제4호 경제정책의 유효성(2001. 1) | 오정근 · 김준태 · 배병호 |
| 제5호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2001. 3) | 정익준 · 차진섭 |
| 제6호 정책일관성에 대한 연구(2001. 4) | 김병화 · 김창호 · 문소상 · 임현준 |
| 제7호 통화정책관련 주요 논의사항과 시사점(2002. 2) | 서병한 |
| 제8호 외환위기 이후 적정환율제도 선택논의와
우리나라의 변동환율제도 운용평가(2002. 8) | 장동구 · 최영준 |
| 제9호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2004. 9) | 박석삼 |

집필자 약력

박 석 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오스틴)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a.b.d.)

현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팀 차장

〈주요 연구실적〉

-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183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7
-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 공여 가능규모 추정”,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연구총서 03-15, 통일연구원, 2003.12
-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북한경제백서』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3.
- “북한의 금융현황과 전망”, 『경제정책연구』 제4권 제3호, 2002.
-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2002-6, 2002.
-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한은조사 연구 2002-3, 2002.
- “Measuring and Assessing Economic Activity in North Korea”, Korea's Economy 2002 Vol. 18, Korean Economic Institute(KEI), 2002.

- “Directions in the Financial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XVI, Fall/Winter 2002(Ralf Mueller 공저)
-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한은조사 연구 2002-3, 2002.
- “북한의 경제개혁 가능성에 관한 게임이론적 분석”, 한은조사연구 2001-9, 2001.
-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경제적 측면”, 『교통』5월호, 교통개발연구원, 2001.
- “통일이후의 독일경제”, 한은조사자료 2000-4, 2000.
- “대북 SOC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한은조사연구 2000-11, 2000.
- “전환기의 북한경제-김정일 경제개혁 1년의 평가와 과제”, 한은조사연구 2000-7, 2000.
- “기계설비 이전에 의한 대북투자의 제조업종별 유효성 분석”, 한은조사연구자료 99-13, 1999.
- “최근 북한을 둘러싼 주요 현안의 전개와 전망”, 한은업무참고자료 99-5, 1999.

금융경제총서 제9호

2004년 9월 24일 인쇄

2004년 9월 30일 발행

發行人 朴 昇

編輯人 咸 貞 鎬

發行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번지

印刷處 서원기업(주)

◆ 문의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전화 : 759-5406, 팩스 : 759-5410,
E-mail : eso@bok.or.kr)

◆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한국은행 정보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ok.or.kr>)